



目 次

●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연구	이호행 1
● 행정학에서의 은유 연구: 성과와 한계	강성남 23
● 사회적 기업의 연원과 정치경제학적 의미 탐색: 근대시장 메커니즘의 이해를 중심으로	문병기 43
● 정치가의 지대 추구 활동과 대의민주주의의 효율성	노형규 65
● 조명변화에 강인한 근적외선 영상을 이용한 얼굴인식	김형근 · 박철하 77
● 예비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시민성 연구	김영인 95
●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청소년지도자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 비교를 중심으로	주경필 117

CONTENTS

☞ A study on marital property agreement	Ho-Haeng Lee 1
☞ A Study on The Metaphor in the Administrative Research : Outcomes and Limits	Seong Nam Kang 23
☞ A Study on the Origin and Political-economic Implication of Social Enterprise: Focused on the Modern Market Mechanism	MOON, BYUNG-GI 43
☞ Rent-Seeking Activities of Politicians and the Efficienc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Noh, Hyung Gyoo 65
☞ Robust Face Recognition of Near Infrared Images against Lighting Variations	Kim Hyoung Geun · Park Chul Ha 77
☞ A Study on Digital Citizenship of Prospective Youth Leaders	Kim, Young-In 95
☞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Youth Workers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Focusing on Comparing Research on between Youth Leaders and Youth Counselors	Kyoung-phil Joo 117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연구

이호행

A study on marital property agreement

Ho-Haeng Lee

◁ 목차 ▷

- | | |
|------------|-------------|
| I. 연구의 배경 | IV. 맺음말 |
| II. 부부재산계약 | V. 결론 - 개정안 |
| III. 법정재산제 | 참고문헌 |

I. 연구의 배경

혼인은 남녀의 사랑에 기반한 신분계약이지만, 부부공동체의 형성, 유지, 그리고 소멸의 과정에서 상당한 재산이 관계된다. 즉, 부부 사이에 형성된 재산은 혼인 중은 물론이고, 이리저리한 사정으로 부부가 이혼하거나 부부의 일방이 사망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누구에게 얼마큼 귀속시킬 것인지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곤 한다. 정상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중에는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드물지만, 이혼 시 재산분할과 상속의 과정에서는 수많은 분쟁이 생겨난다. 어떠한 경우든, 부부 간 재산분쟁의 출발점은 부부관계가 형성되는 시점에서의 부부재산을 규율하는 부부재산제(약정부부재산제와 법정재산제)이다. 따라서 부부공동체가 유지되는 동안, 그리고 부부공동체가 이혼이나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해소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부부재산제를 합리적이고 완결된 내용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부부재산제는 현행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래로 별다른 변화 없이 과거의 모습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합리적이고 완결된 모습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는, 부부재산제가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규정이 미비하다는 점에 기인한다.

먼저, 부부재산제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양성평등의 확산, 여성의 사회적 활동으로 인한 재산형성에의 기여도 증가 등의 사회적 변화는 전통적 관념, 즉 ‘여성은 가사노동을 전

담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회적 약자'라는 관념에 변화를 가져왔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이 여성을 억압하던 가정 내 역학구조는 약화되거나 붕괴되었고, 이에 따라 부부재산계약에서 여성도 자유로이 자신의 의사를 피력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로 이혼이 자유로워졌고, 이는 실제 통계로도 확인된다. 즉, 이혼 건수는 1997년 9만 건에서 2020년 11만 건으로 증가하였다는 점에서 이혼율은 증가추세에 있고,¹⁾ 황혼이혼(혼인기간 20년 이상 후 이혼) 건수 역시 전체 이혼 건수 내에서 2010년 23.8%에서 2020년 37.2%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³⁾ 이와 같이 혼인관이 혼인의 자유와 개인의 자율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므로, 부부재산제도 이에 발맞추어 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크다.

또한, 현대사회는 의료기술의 발달에 기인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가족구성이 변화(자녀 세대와 분리되는 상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년기에 접어든 당사자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이는 노년기에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 더욱 문제된다. 예컨대, 이혼으로 인한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통해 일정 재산을 확보하여 최소한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 재산의 규모가 천차만별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자립 기반의 마련 역시 천차만별이다. 반면, 일방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부부재산 중 상당 부분이 직계비속에게 상속되고, 직계비속에 의한 비동거부양은 동거부양에 비해 질적으로 현저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경제적 자립 기반이 불안정하다. 따라서 노년기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생존배우자에 대한 상속법상 보호가 수반되어야 한다. 더욱이, 황혼 재혼 후 일방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재혼 전 자녀나 전 배우자의 상속권(내지 대습상속)과 현 배우자의 상속권을 둘러싼 분쟁도 중요한 문제로 부각된다.

다음으로, 규정의 미비이다. 우리 민법은 혼인의 재산적 효력에 대해서 부부재산제의 틀 안에 부부재산약정(제829조. 부부재산계약 내지 약정부부재산제라고도 함)과 법정(부부)재산제(제830조 및 제831조. 부부별산제라고도 함)를 규정하고 있으며, 일상가사에 대한 연대책임(제832조) 및 생활비용의 공동부담(제833조)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한편, 일상가사대리권에 관한 제827조도 재산적 효력에 포함될 수 있다). 이 중 부부재산에 대한 규정은 단지 3개에 불과하고, 이 3개의 조문으로 부부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재산문제를 해결하기란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우리 민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근거해서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계약체결의 시기를 혼인성립 전으로 제한하고, 계약의 대상을 혼인 중의 부부재산에 제한하며, 계약 내용의 변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있다는 점에서, 계약자유 원칙이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다.⁴⁾ 또한, 현재로서는 국민 일반의 인식 부족, 부부재산약정에 관한 규정의 간략함과 계약체결 시기의 제한 등으로 인하여 부부재산약정을 이용하는 사례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⁵⁾ 이로 인해 부부재산에 대한 규율

- 1) 통계청, 2020년 혼인이혼 통계, 2021. 3. 18. 보도자료. 단순하게는 20여년 간 2만 건 정도 증가한 것으로 보이지만, 혼인 건수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혼의 증가 폭은 상당하다(혼인건수는 1996년 43만 건에서 2020년 21만 건으로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다).
- 2) 2019년 전체 혼인건수(약 24만 건) 대비 이혼건수는 46.3%이고, 재혼(이혼 후 재혼 + 배우자 일방 사망 후 재혼) 건수는 22.5%였으며, 2020년 전체 혼인건수(약 21만 4천 건) 대비 이혼건수는 약 50%이고, 재혼 건수는 21.8%이다. (통계청, 2020년 혼인이혼 통계, 2021. 3. 18. 보도자료)
- 3) 통계청, 2020년 혼인이혼 통계, 2021. 3. 18. 보도자료.
- 4) 계약의 내용은 완전히 자유롭다는 견해(박현정(2016), “부부재산계약상의 계약자유원칙”, 『재산법연구 32(4)』, 한국재산법학회, 180면)도 있지만, 내용결정의 자유는 대상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야 하고 변경도 자유로워야 한다고 본다면 부부재산계약에서는 계약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 5) 민법이 시행된 1960년 이후 2001년까지 부부재산약정에 따른 등기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2001년 이후부터 부부재산 등기사례가 간혹 발견된다. 즉,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약 12건, 2011년 11건, 2012년 16건, 2013년 26건, 2014년 28건 인 것으로 확인된다(김선화(2017), “부부재산제도의 효과와 그 개선방향”, 『젠더법학 9(1)』, 한국젠더법학회, 104면).

은 대체적으로 제830조 이하의 법정재산제에 의해 규율되고 있다. 법정재산제는 부부의 혼인 중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이혼 시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며, 나아가 배우자 일방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지만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재산제와 이혼 시의 재산분할은 혼인 중의 재산관계와 이혼 시의 재산관계를 달리 취급함으로써 부부의 혼인 중 재산에 관한 법률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혼 시의 재산분할에 대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재산제는 사적 자치에 기반한 계약의 자유와 부부공동체의 유지 및 배우자의 보호라는 공익의 관점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한 관점에서 재구성되어야 하고, 이를 명확히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도 함께 보호하는 방향으로 진화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시대상의 변화에 발맞추어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부부재산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⁶⁾ 아쉽게도 불발된 상태로 현재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는 부부재산제라는 틀 안에서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를 대상으로 하며, 부부재산계약이 법정재산제에 대한 보충적 역할을 하는 현실적 원인을 구명하고, 이를 기초로 부부재산계약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부부재산계약과 법정재산제에 대한 종래의 논의와 외국의 입법례를 간략히 검토하고, 시대의 변화에 따른 법정재산제의 올바른 개정방향이 무엇인지를 함께 논의한다.

II. 부부재산계약

1. 입법주의

부부가 법률전문가는 아니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즉, 혼인을 앞둔 남녀는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재산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입법주의는, 독일과 프랑스가 취하고 있는 한정적 선택주의와 우리나라가 취한 자유선택주의가 있다. 한정적 선택주의는 법정재산제 이외의 부부재산관계는 법정된 전형적 유형 중에서만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입법주의이고, 자유선택주의는 당사자들이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계약의 형태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입법주의이다.⁷⁾

2. 외국의 입법례

가. 독일

독일민법은 제1408조부터 제1519조까지에서 부부재산계약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온전하게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모범적 형

6) 17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한명숙, 이계경, 최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 20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김삼화, 정춘숙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과 법무부가 제출한 개정안) 등이 있었고, 현 21대 국회에서도 개정안(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이 제출되어 있다.

7) 김양희(1989), “부부재산제도와 처의 가사노동평가에 관한 고찰”, 『인천법학 4』, 인천대학교, 80면.

태의 재산제를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종래에는 선택할 수 있는 부부재산제로 별산제와 공유제(공동재산)의 2가지가 있었으나, 2010년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한 선택-부가이익공동제(Wahl Zugewinnngemeinschaft)가 신설되었다. 즉, 완전히 자유로운 부부재산계약은 불가능하고, 주어진 3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부부재산계약만 가능하다. 또한, 혼인 성립 후에도 부부재산제를 해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독일민법에서 특이한 점은, 이혼과정에서의 재산분할 및 부양과 관련하여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이혼에 따른 혼인주택과 가재도구의 처리방법 및 이혼 후의 부양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제1568조a와 제1568조b).

나. 프랑스

프랑스민법은 제1387조 이하에서 부부재산계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원칙적으로 혼인 성립 전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독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모범적 형태의 재산제를 제시하고 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부부재산계약은 약정공동재산제(제1497조 이하), 별산제(제1536조 이하), 혼후취득재산참가제(혹은 후득재산공통제, 잉여공동제)(제1569조 이하)의 3가지가 있었으나, 2010년 독일과 프랑스가 합의한 선택-부가이익공동제(Wahl Zugewinnngemeinschaft)가 추가되어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1804년 나폴레옹민법 제1395조는 “혼인 성립 후에는 부부재산계약을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으나(이른바, 불역성의 원칙), 1965년 법률은 법원의 인가를 얻어 부부재산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고(불역성 원칙의 완화), 2006년 법률은 혼인 성립 후 2년이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인가가 없어도 부부재산제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불역성 원칙의 폐지).⁸⁾

다. 영국

19세기 중반까지의 영국에서는 여성을 남편과 일체로 보는 전근대적 사고에 기초하여 재산에 대한 여성의 권리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러다가 1870년 기혼부인재산법(The Married Women's Property Act)⁹⁾이 제정되면서 비로소 임금이나 소득에 대한 처의 특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인정되었다. 또한, 대륙법계의 부부재산제와 같은 체계적인 법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부부재산계약에 있어서도 대륙법계에서와 같은 계약유형의 제시 등은 찾아볼 수 없다. 다만, “Marriage Settlement¹⁰⁾”라는 제도를 부부재산계약의 원시적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혼인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과 그 친족 사이에 설정되는 형평법상 신탁계약의 일종으로, 재산상 권리는 수탁자에게 있었다. 즉, 처를 위해 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수탁자가 그 재산을 관리하므로, 원칙적으로 남편은 신탁된 재산과 그 과실에 대해서는 관리권이 없었다.¹¹⁾ 따라서 영국에서는 20세기까지도 엄밀한 의미에서의 부부재산계약, 즉 혼인하는 부부 당사자 사이에 체결되는 부부재산계약은 존재하

8) 프랑스의 부부재산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미경(2010), “프랑스민법상 약정부부재산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4(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참고(특히, 221면 이하 참고); 김미경(2014), “프랑스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변경”, 『비교사법 21(2)』, 한국비교사법학회, 427면 이하.

9) 이 법은 1935년 기혼여성 및 불법행위자법(Married Woman and Tortfeasors Act)으로 개정되었고, 이 법을 통해 별산제의 원칙이 확립되게 된다.

10) “settlement”는 법률행위로서 승계재산설정행위 또는 그 증서를 가리키는, 영국법에 특유한 용어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해정(2005), “부부재산계약(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31면 각주 81) 및 82) 참고.

11) 전해정, “부부재산계약(박사학위논문)”, 31면 이하 참고.

지 않았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중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혼에 대비하여 재산관계의 청산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라고 이해하면서, 그 성립시기에 따라 혼인 성립 전에 이루어진 계약(*prenuptial agreement*), 혼인 중에 이루어지는 계약(*postnuptial agreement*), 이혼에 임박하여 이루어지는 계약(*separation agreement*)의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혼인관계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전통적 입장에서는 세 번째 유형에 한해 그 유효성을 인정하였다. 즉, 앞의 2가지는 이혼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공서양속에 반하는 계약으로 무효라고 하였다. 그러다가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에서 당사자의 사적 자치를 보장하고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대응하기 위해, 앞의 2가지에 대해서도 그 유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혼인 중 부부재산계약에 대해서는 2008년의 *Macleod v. Macleod* 사건을 통해, 혼인 전 부부재산계약에 대해서는 2010년의 *Radmacher v. Granatino* 사건을 통해 유효성이 인정되었다. 따라서 현재 영국에서는 성립시기와 무관하게 사적 자치에 기반하여 부부재산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지만, 부양과 보상의 관점에서 법원에 의해 무효화될 여지는 남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혼인관계법(*Matrimonial Cause Act*)이 규율하고 있다.¹²⁾

3. 우리 민법의 해석론

가. 입법취지

본래 부부재산계약은 부부 중 일방의 일방적 재산처리나 이혼과정에서 재산분할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고, 부부재산에 대해 일방의 소유권을 확보해 줌으로써 실질적인 평등을 실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민법 제829조¹³⁾에 규정된 부부재산계약에 관해 살펴보면, 부부재산계약의 체결은 혼인성립 전에 하도록 하고(제1항),¹⁴⁾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재산계약을 변경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2항). 또한 이러한 약정은 혼인신고 전에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4항).

나. 부부재산계약의 내용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면 부부의 혼인 중 재산관계가 이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이혼 시의 재산분할도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

12) 이창현(2016),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연구-영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51』, 한국법제연구원, 14-25면 참고.
 13) 제829조(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①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 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 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4) 프랑스 민법 제1395조도 그러하다. 반면, 독일은 부부재산계약의 체결시기를 혼인 전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제1408조).

인 경우에도 타방 배우자의 당해 재산에 대한 유지·관리의 기여가 인정되면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부부재산계약을 해두면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그런데 제829조 1항은 부부재산계약에 관하여,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정재산제가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부부재산계약의 구체적 내용이나 방법에 관해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어떤 내용으로든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부부재산에 대한 내용형성의 자유를 온전히 부부에게 맡기는 것은, 얼핏 보면 계약자유 원칙의 실현으로 보이지만, 오히려 그 열린 형태 때문에 제도의 이용을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일정한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거나, 표준계약서와 같은 형태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상세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현재의 부부재산제인 별산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¹⁵⁾¹⁶⁾

예를 들어, 부부 중 일방이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는데 타방 배우자에게 재산이 있는 상황이라면,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는 부부 간 재산귀속의 원인을 살펴 사해행위로 취소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등기해두었다면, 채권자취소권으로부터 타방 배우자는 스스로 재산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여기의 등기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다. 부부재산계약의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재산계약을 제대로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다. 제829조 4항과 5항의 해석상, 부부재산계약을 한 경우와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경우에 등기하여야 부부의 승재인 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경우 대항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부부재산계약을 통하여 혼인 중의 재산귀속관계뿐만 아니라 이혼시의 재산분할이나 상속재산의 귀속에 관한 내용을 정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만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아니면 이를 근거로 혼인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아직 부부재산계약으로 인한 법률문제에 관하여 법원이 판단을 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지를 예측하기 힘들다. 그렇지만 민법의 규정만 본다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없어도 부부재산계약과 그 등기만으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볼 여지도 있는바, 이러한 해석은 재산법의 영역에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부부재산계약과 그 등기로 부부 일방은 특정의 부동산에 관해 물권적 지위를 취득한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지만,¹⁷⁾ 현재 부부재산계약을 부부재산계약등기규칙에 의하여 夫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서 등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등기부의 전산화에 따라 부부재산계약등기도 전산화가 되기는 하였지만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¹⁸⁾ 부부재산약정을 등기한 것만으로는 물권변동의 효

15) 부부재산계약제도는 부부별산제인 법정재산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부재산계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등기절차를 개선할 것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박현정, 앞의 글, 182면 및 194면).

16) 혼인재산에 대한 명의 없는 배우자의 보호를 위하여 부부공동재산제를 고려할 수 있지만, 채무에 대해서도 부부가 함께 책임을 부담해야 하고, 기여와는 무관하게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결국에는 현행의 별산제를 유지해야 하지만, 부부재산계약을 활성화함으로써 별산제로 인한 폐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로, 김병두(2004), “별산제의 한계와 그 극복으로서 부부재산계약”, 『성균관법학 16(3)』,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18면 참고.

17) 김병두, 앞의 글, 26면.

18)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과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지침에 따르면 등기부전산화에 따라 부부재산계약도 전산화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부부재산약정 신청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만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이다. 즉, 부부재산약정등기에 대한 공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부재산약정이 얼마나 많이 체결되고 있는지, 체결된 약정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부재산약정이 어떻게 체결되어야 하고, 그 효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되는지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은 현재 체결된 부부재산약정등기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 부부재산계약의 성립 시기

제829조 1항의 반대해석상 혼인신고 후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은 무효이다. 이와 같이 혼인 성립 전에만 부부재산계약의 체결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혼인 중에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처가 부(夫)의 압박에 눌리거나 애정에 휩쓸려 경솔하게 불리한 부부재산계약의 체결에 응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함이었다.¹⁹⁾ 그러나 여권(女權)의 신장에 따른 양성평등의 시대에 이러한 전제는 시대착오적인 과거의 유물이 되었다. 또한, 다음 “라.”에서 검토하는 바와 같이 부부재산계약을 해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계약의 성립 시기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 부부재산계약의 변경 가능성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부부재산계약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한 까닭은, 혼인 전에는 각자가 독립적 존재이지만 혼인 후에는 부부 중 일방이 타방에 압력을 줄 수 있다는 점, 부부재산계약의 변경을 통해 부부 중 일방의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가 가능해진다는 점, 약정의 변경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부간 증여가 가능해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재산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상황이 변화되었다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기초해 혼인 전에 체결한 부부재산계약을 변경할 필요성도 존재한다. 나아가 부부 사이의 신뢰가 붕괴된 경우에는 부부재산계약의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가족의 이익에 부합하고, 생존배우자의 불충분한 상속상 권리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제829조 2항은 원칙적으로 부부재산약정을 혼인 중 변경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규정의 해석상 적어도 부부재산약정을 한 경우에만 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혼인 전에 부부재산약정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부부재산약정을 하지 않아 법정재산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애초에 부부재산제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차단된다. 그러나 혼인 중의 재산 문제를 혼인 당사자가 결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정재산제의 변경도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부가 합의하여 혼인 중의 재산관계를 정함으로써 법정재산제인 별산제의 문제점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혼인 중에 부부가 법정재산제를 변경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혼인 중에 새로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부부재산계약의 활성화 방향은 부부재산계약의 변경을 용이하게 인정하는 방향과 궤를 같이 하여, 부부재산계약의 체결 시기를 혼인 성립 전으로 제한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한편, 향후 부부재산제의 변경에 있어서는 프랑스에서의 입법과정과 마찬가지로 법원의 개입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 다만, 혼인 중 부부재산제의 변경을 인정할 때에는 제3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여기의 제3자는 부부 일방의 채권자뿐만 아니라 상속인도 포함될 수 있다.

19) 편집대표 윤진수(2015), 『주해친족법(제1권)(이동진 집필부분)』, 박영사, 254면.

마. 부부재산제와 재산분할의 연동

이혼이 성립하면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그의 명의로 등기된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혼인 중의 재산귀속관계와 이혼시의 재산귀속관계가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법정재산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누구의 명의냐로 되어 있느냐보다 일단 공유재산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을 해주는 대법원의 태도에서 확인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부부재산제는 혼인 중의 재산관계뿐만 아니라 이혼시의 재산관계 및 사망으로 인하여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의 재산관계까지 망라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김상용 교수가 2015년에 제안한 부부재산제 개정안²⁰⁾은 진일보한 개정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재산제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그 부부재산제에 의하여 혼인 중의 재산관계와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부부재산제는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한 규정으로 물권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물권변동에 관한 논의와 물권의 공시에 관한 논의는 부부의 재산관계를 공시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부부재산제에 관한 개정논의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물권법적인 관점에서의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²¹⁾

바. 재산분할과 상속분의 연동

현재 부부재산제는 이혼시에만 적용되며, 상속의 경우에는 유언 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이

20) 이 개정안은, 김상용교수가 2015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심포지엄에서 제안하였다.

제833조의2(혼인해소 시의 재산분할) ①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생존 배우자는 공동상속인 또는 포괄적 수증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분할에 대하여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이 해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제833조의3(혼인 중의 재산분할)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부부의 다른 일방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재산의 감소로 인하여 장래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5년 이상 별거하고 있는 경우

제833조의4(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거절) 재산분할청구를 한 부부의 일방이 제826조에 따른 부부간의 의무를 장기간 고의로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를 받은 다른 일방은 분할을 거절하거나 일부에 대해서만 응할 수 있다.

제833조의5(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생존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소는 제406조 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33조의5(사실혼관계에 대한 준용) 제833조의2 규정 및 제833조의4부터 제833조의5까지의 규정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에 대해서 준용한다.

제839조의2 삭제

제839조의3 삭제

제843조(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 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한다.

21) 제17대, 제20대, 제21대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에 관한 설명이나 검토 등에서는 물권변동론에 기초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루어진다. 이 경우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하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 재산을 상속받을 뿐이다. 그 결과 공동상속인이 많으면 배우자가 상속받게 되는 상속재산은 줄어들게 된다.

그렇지만 비교법적으로 볼 때 독일이나 프랑스뿐만 아니라 최근에 상속법을 개정한 일본의 경우에도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절반 이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재산과 같은 정도의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 다만, 상속순위 및 상속분에 관한 현행 민법 제1000조 및 제1009조에 따르면 배우자 이외의 상속인이 1인인 경우에는 배우자가 상속재산의 60%를 취득하므로, 배우자에게 절반의 상속분을 인정하는 것이 불리한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만을 예외로 두고, 다른 경우에는 절반의 상속분을 취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 국제결혼에 있어서의 부부재산제 적용

국제결혼의 증가에 따라 부부재산제에 관한 준거법이 문제될 여지도 있다.²²⁾ 국제사법 제38조 제1항에서는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는 제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한다.²³⁾ 그렇지만 부부는 합의하여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할 수 있는바(제2항), ① 부부 중 일방이 국적을 가지는 법, ② 부부 중 일방의 상거소지법, ③ 부동산에 관한 부부재산제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외국법에 의한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에서 행한 법률행위 및 대한민국에 있는 재산에 관하여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그 부부재산제에 의할 수 없는 때에는 제3자와의 관계에 관하여 부부재산제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제3항). 다만 외국법에 의하여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이라도 대한민국에서 등기한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항). 국제결혼의 증가와 함께 이혼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제결혼이 있어서의 부부재산제에 관하여도 관심을 가지고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III. 법정재산제

1. 입법주의

기본적으로 부부는 개인과 개인이 혼인이라는 신분계약을 통해 결합한 것이고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다는 관점을 가지면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혼인계약을 통해 부부라는 가족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관점을 중시하는 경우에는 공동재산제를 취한다. 다만, 어느 하나의 원칙만을 고수하는 것은 아니고, 여성의 지위와 배우자의 평등관계, 혼인 중 재산의 형성과정 등을 고려하면서 혼인해소시의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다양한 입법을 하고 있다. 예컨대, 완전별산제는 경제적 활동을 하는

22)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에 관한 논의는 이병화(1999), “국제부부재산제와 처의 지위”, 『여성학논집 1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62면 이하 참고. 다만 이 논문은 구 섭외사법이 국제사법으로 개정되기 전에 작성되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23) 제37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호에 정한 법의 순위에 의한다.

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쳐는 자신의 수입 및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완전별산제에 의할 경우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가사노동만을 하는 처는 재산을 보유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형식적 평등은 실현되나 실질적 평등에 반한다. 따라서 사망에 의한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상속에 의해, 이혼에 의한 혼인해소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통해 재산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수정별산제라고 한다.

2. 외국의 입법례²⁴⁾

가. 독일

독일²⁵⁾은 혼인기간 동안 부부재산이 별개의 것으로 구분되는 별산제의 성격을 가지면서 이혼 시 부가이익청산이 가능한 부가이익²⁶⁾공동제(혹은 잉여공동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²⁷⁾ 각 배우자는 자신들의 재산을 각기 독자적으로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으며,²⁸⁾ 배우자 간의 소유권 관계는 혼인으로 변하지 않는다.²⁹⁾ 그러나 자신의 전체재산이나 가사를 위한 물건의 처분에 있어서는 상

24) 그 밖의 외국 부부재산제에 관한 연구로는 이준영(2008), “미국에 있어서 혼인법의 전개”, 『가족법연구 22(2)』, 한국가족법학회; 이제우(2015), “러시아가족법상 법정부부재산제의 어제와 오늘”, 『가족법연구 29(3)』, 한국가족법학회; 우병창/마르타 짐바르도(2012), “이탈리아 민법상 혼인의 효과”, 『법학논총 19(1)』,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조은희(2007), “유럽 부부재산제의 통일화에 대한 전망”, 『법학논문집 31(2)』,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강해순(2011), “중국 부부재산제도의 변천과 동인”, 『가족법연구 25(2)』, 한국가족법학회, 2011 등 참고.

25) 조은희·전경근(2004),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64~65면.

26) 독일민법 제1371조 ~ 제1390조 참조. 부가이익은 부부재산제도가 적용되는 시점의 재산인 초기재산과 부부재산제가 종료할 때의 재산인 최종재산의 차액을 의미한다. 부가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초기재산과 최종재산의 목록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최종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독일민법 제1375조에서 규정하는 채무는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을 취한다. 그리고 부가이익의 청산은 법원에 의한 재산분할이 아닌 청산명령에 의한다. 부가이익은 혼인 중에 부가이익공동체를 폐지하거나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것도 가능하며, 현저한 불공정을 이유로 청산명령에 대한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27) BGB §1363 Zugewinnsgemeinschaft(부가이익공동체)

(1) Die Ehegatten leben im Güterstand der Zugewinnsgemeinschaft, wenn sie nicht durch Ehevertrag etwas anderes vereinbaren. (혼인당사자가 부부재산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경우, 부가이익공동재산제가 적용된다.)

(2) Das jeweilige Vermögen des Ehegatten wird nicht deren gemeinschaftliches Vermögen; dies gilt auch für Vermögen, das ein Ehegatte nach der Eheschließung erwirbt. Der Zugewinn, den die Ehegatten in der Ehe erzielen, wird jedoch ausgeglichen, wenn die Zugewinnsgemeinschaft endet. (혼인당사자들 각자의 재산은 그들의 공동재산으로 되지 않는다.; 혼인 당사자 일방이 혼인 성립 후에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도 같다. 그러나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 중에 취득한 부가이익은, 부가이익 공동체가 종료되는 경우에 청산된다.)

28) BGB §1364 Vermögensverwaltung(재산관리)

Jeder Ehegatte verwaltet sein Vermögen selbständig; er ist jedoch in der Verwaltung seines Vermögens nach Maßgabe der folgenden Vorschriften beschränkt. (혼인 당사자들은 각자 자신의 재산을 독자적으로 관리한다.; 그러나 각자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 이하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29) 독일민법 제1365조 및 제1363조 제2항(각주 23) 참조.

BGB §1365 Verfügung über Vermögen im Ganzen(재산 전부의 처분)

(1) Ein Ehegatte kann sich nur mit Einwilligung des anderen Ehegatten verpflichten, über sein Vermögen im Ganzen zu verfügen. Hat er sich ohne Zustimmung des anderen Ehegatten verpflichtet, so kann er die Verpflichtung nur erfüllen, wenn der andere Ehegatte einwilligt. (혼인 당사자 일방은 타방 배우자의 동의가 있는 때에만 자신의 재산을 전체적으로 처분하는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혼인 당사자 일방이 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의무를 부담한 경우, 그는 타방 배우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2) Entspricht das Rechtsgeschäft den Grundsätzen einer ordnungsmäßigen Verwaltung, so kann das Familiengericht auf Antrag des Ehegatten die Zustimmung des anderen Ehegatten ersetzen, wenn dieser sie ohne ausreichenden Grund verweigert oder durch Krankheit oder Abwesenheit an der Abgabe einer Erklärung verhindert und mit dem Aufschub Gefahr verwunden ist. (그 법률행위가 적합한 관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경우, 배우자가 충분한 이유 없이 동의를 거절하거나 질병이나 부재로 인해 의사표시를 하는 데에 장애가 있고 지체가 위험과 결부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혼인 당사자 일방의 신청에 기해 배우자의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대 배우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³⁰⁾ 이는 가족의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상대 배우자가 이혼 시 재산 청산과정에서 당할 수 있는 청산재산의 감소로 인한 불이익을 막기 위한 취지이다.³¹⁾ 따라서 혼인 중에는 부부의 공동재산을 인정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각 배우자는 단독으로 자기의 전재산을 관리·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이혼 등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혼인 중 증가한 재산을 절반으로 분할하며, 사망으로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에는 생존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일률적으로 상속재산의 1/4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부부재산관계가 청산된다.

나. 프랑스

프랑스³²⁾는 소득공동제(혹은 공동재산제)로서 각 배우자는 공동재산을 동등한 권한으로 관리하고, 고유재산을 공동재산과 별도로 관리할 수는 있지만,³³⁾ 별산제만큼 재산관리의 완전한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 공동재산인 부동산, 상업자본 경작지,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공시를 요하는 동산,³⁴⁾ 가족의 주거를 보장하는 권리 또는 주택에 설치된 가구의 처분,³⁵⁾ 농지 또는 상업, 공업, 수공업에 이용되는 부동산의 임대³⁶⁾ 등에 대해 배우자의 동의 없이 무상으로 처분하지 못하며, 자기의 지분을 초과하는 유증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³⁷⁾ 광범위한 처분권 제한을 두고 있다.³⁸⁾

혼인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하고 있다. 즉, 배우자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서로 가족의 주거를 보호하는 권리 또는 주거에 설치된 가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호되며, 부부 일방이 개인적으로 점유하는 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권이 있는 것으로 보아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며,³⁹⁾ 집이 임차된 경우 혼인 전에 임차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임차권이 양 배우자에게 속한 것으로 간주된다.⁴⁰⁾

그리고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 불문하고 공동재산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동재산은 거래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에게 공동재산에 관한 관리·사용·수익·처분권을 부여하나, 이에 다시 일정한 제한을 두어 공동재산의 무상 처분행위, 공동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물권적 처분행위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다. 영국

30) 독일민법 제1365조 제1항(각주 25 참조) 및 제1369조 제1항 참조.

BGB §1369 Verfügungen über Haushaltsgegenstände (가사를 위한 물건의 처분)

(1) Ein Ehegatte kann über ihm gehörende Gegenstände des ehelichen Haushalts nur verfügen und sich zu einer solchen Verfügung auch nur verpflichten, wenn der andere Ehegatte einwilligt. (혼인 당사자 일방은 배우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자신에게 속한 혼인 중 가사를 위한 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처분을 위한 의무도 부담할 수 있다.)

31) 독일의 부가이익공동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은희(2021), “독일과 프랑스의 선택 - 잉여공동제 협약과 그 시사점”, 『국제법무 13(1)』,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204면 참고.

32) 조은희·전경근,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60~62면; 이화숙(2008), “부부재산제의 이상에 비추어 본 입법론과 개정안”, 『인권과 정의 381』, 대한변호사협회, 79면.

33) 프랑스민법 제1403조

34) 프랑스민법 제1424조

35) 프랑스민법 제215조

36) 프랑스민법 제1425조

37) 프랑스민법 제1422조, 제1434조

38) 프랑스의 소득공동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조은희, 독일과 프랑스의 선택, 204~207면 참고.

39) 프랑스민법 제215조

40) 프랑스민법 제1751조

영국⁴¹⁾은 부부가 혼인 시 소유했던 재산 및 혼인 중 각자의 수입과 그로부터 취득한 재산은 모두 각 배우자에 속하도록 하는 엄격한 별산제를 취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야기되는 혼인관계 종료 시의 재산상 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혼법과 판례에서 부부재산권 결정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재산이 부부의 공동명의 또는 부부 한쪽의 명의로 취득된 경우에는 매각신탁의 원리가 적용되거나 또는 명의자에게 복귀신탁한 것으로 추정되고, 둘째, 부부의 공동명의로 등기된 경우에는 기여분 차이에 상관없이 동등한 분배가 인정된다. 셋째, 혼인 중 공동의 기여를 통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명의에 관계없이 합작기업의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동등하게 분배하고,⁴²⁾ 넷째, 혼인주택에 관해 소유권, 임차권 등의 권리가 없는 배우자는 거주권에 의한 보호를 받으며, 등기할 수 있고 제3자의 권리로부터 보호된다.⁴³⁾⁴⁴⁾

혼인주택법은 혼인주택 이외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남편이 다른 곳으로 거처를 옮긴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거주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거주권은 혼인 중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권리가 없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혼인이 종료되면 거주권도 종료된다.

따라서 영국의 법정재산제에서는 부부 각자 명의의 고유재산만이 있을 뿐 공동재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혼인 그 자체는 부부의 재산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혼인 중 취득한 주택을 합유로 등기하는 관례를 통해 혼인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를 주려고 한다. 즉, 이혼 시에는 법원의 광범위한 재량에 의한 재산급부명령과 재산조정명령을 통해 혼인 중 재산에 대해 명의를 가지지 못한 배우자를 보호하고 있다.

라. 평가

법정재산제를 이야기할 때 그 중심에 두어지는 것이 어떤 재산제를 채택할 것인가이다. 수정별산제를 주장하는 견해의 대부분은 독일의 부가이익공동제와 스위스의 소득공동제를 예로 들고, 공동재산제를 주장하는 견해는 프랑스의 공동재산제를 그 예로 든다. 독일의 부가이익공동제는 혼인 후 증가한 부가이익을 분할하는 것으로 한 법정재산제이다. 별산제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의 경우에는 혼인 중에는 부부 일방의 개인재산으로 인정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혼인 중 증가한 부가이익을 분할하도록 한다. 스위스의 소득공동제도 이와 유사한데, 다만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부가이익인가, 소득으로 인하여 증가한 재산인가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프랑스의 공동재산제는 혼인 전에 부부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혼인 중 증여나 상속과 같이 상대방 배우자의 도움 없이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고유재산으로 하고, 혼인 중의 소득에 기초하여 취득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삼은 것이다.

부부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공동의 권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어떠한 법정재산제를 선택할 것인가는 국민들의 의식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

41) 조은희·전경근,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79~84면; 이화숙, 부부재산제의 이상에 비추어 본 입법론과 개정안, 79~80면 참고.

42) 배우자의 기여가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다소를 불문하고 공동분배를 인정하는 관례가 구축되었다. 그러나 처가 가사노동에만 종사한 경우에는 혼인주택의 소유권에 관한 수익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즉, 혼인주택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가사노동은 기여로 평가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경향이다.

43) 혼인주택을 합유로 등기하는 관례가 혼인 중 취득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혼인주택법은 권리 없는 거주권을 보호하고 있다. 한편, 한쪽 배우자만이 주택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권리 없는 배우자에게 주거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여러 권리가 인정된다.

44) ‘주택’이란 건물, 정원, 차고 및 그에 부속된 별채 등을 포함한다.

된 입법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수정별산제가 개인의 재산관계를 더 잘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혼인재산의 일방적인 처분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는 점에서 별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는데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그에 비하면 공동재산제를 통하여 혼인재산에 대하여 공유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부부재산의 귀속관계를 공시하는데에 유리한 점이 있다. 다만 공유관계로 인한 채무의 부담이나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문제 등 공유관계로 인한 거래의 제한을 어떤 방법으로 완화할 것인가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3. 우리 민법의 해석론

가. 수정별산제

부부재산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830조 이하에서 규정하는 법정재산제인 별산제가 적용된다. 현행 법정재산제인 부부별산제는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합하여 특유재산이라고 하면서(제830조 1항),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제830조 2항). 그리고 특유재산에 대한 관리, 사용, 수익은 명의자가 하도록 하고 있다(제831조). 한편, 1990년 민법개정을 통해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규정이 신설되었는데(제839조의2), 이는 별산제를 택함으로써 명의를 갖지 못하는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즉, 이혼을 통한 혼인 해소의 경우에 배우자 보호를 도모하면서 별산제를 보완하고 있다.⁴⁵⁾

한편, 대법원은 “사실혼관계에 있는 부부의 일방이 사실혼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반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고 함으로써,⁴⁶⁾ 사실혼 부부에 대해서도 별산제를 적용하고 있다.

나. 특유재산의 추정과 그 반복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부가 혼인 중에 협력하여 마련한 재산이라도, 그 재산이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한 명의를 가지고 있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본다. 다만, 재산을 취득할 때 다른 일방이 대가를 부담한 경우와 같이 구체적으로 기여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의자의 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은 반복될 수 있으나⁴⁷⁾,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처의 가사노동, 내조의 공은 그 추정을 반복할 수 없다⁴⁸⁾고 한다.⁴⁹⁾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시에는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와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⁵⁰⁾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일정

45) 윤진수(2018),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115면.

46)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52068(본소), 52075(반소) 판결

47)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나,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반복되어, 그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171 판결).

48)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고, 다만 실질적으로 다른 일방 또는 쌍방이 그 재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취득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특유재산의 추정은 반복되어 다른 일방의 소유이거나 쌍방의 공유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다거나 혼인생활에 있어 내조의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위 추정을 반복할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21982 판결).

49) 김주수/ 김상용(2016), 『주식 민법[친족(1)]』, 한국사법행정학회, 484-485면.

50) 김태선(2017), “양성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 개정방향”, 『입법과 정책 9(3)』, 국회입법조사처, 34-35면.

한 기여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다. 혼인재산의 처분제한

수정별산제와 공동재산제 모두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재산에 대한 처분의 자유도 인정한다. 그렇지만 수정별산제와 공동재산제 중 어느 재산제를 채택하더라도 혼인재산 중 처분이 제한되어야 할 재산이 존재한다.⁵¹⁾ 바로 부부 또는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이다. 그 재산이 부부의 공동생활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심지어 부부 일방의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이혼 후 자녀를 상대방 배우자가 양육하는 경우에는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법례도 있다.

한편 배우자 일방의 재산처분은 이혼 후 재산분할에서 상대방 배우자가 취득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처분으로서의 실질을 가지므로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우리 민법은 제839조의3을 신설함으로써 재산분할청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그렇지만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그 행위의 효력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인함으로써 상대방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보호한다. 따라서 혼인재산의 처분제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논의와 함께 어떠한 재산에 대한 처분을 제한하는 것이 혼인재산의 안정적인 활용과 재산적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라. 혼인 중의 재산분할

명의자의 일방적인 재산처분으로 인한 혼인생활의 파탄과 혼인재산을 통한 가정에서의 가부장적 지위의 행사는 가족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원인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배우자의 파산으로 말미암아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하에서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다만 혼인 중 재산분할이 있은 후에도 혼인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후의 재산관계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에 관하여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혼인 중의 재산분할은 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개정안이 논의되기 전에는 거의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제도이지만, 이제는 혼인 중에도 재산분할을 인정할 것인가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혼인 중의 재산분할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의 경제적 기반을 유지하여 혼인이 해소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이다.

부부재산제의 개정이 논의되기 전에는 가정의 주수입원인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렇지만 부부재산제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부부재산을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고, 배우자에 대한 증여세 부담 없는 증여의 가액도 증가하였다. 또한 부부사이의 명의신탁을 통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일방 배우자의 재산을 상대방 배우자의 명의로 하는 경우도 많다.⁵²⁾ 따라서 이러한 재산들에 대해서는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인정함

51) 최행식 교수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실시한 부부재산 공동명의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재산제의 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부부재산이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혼인재산의 처분제한이 필요하며, 가사노동의 가치를 반영하는 부부재산제가 필요하며, 혼인재산에 대한 권리가 상속의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최행식(2006), “부부재산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원광법학 22(2)』,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401면 이하).

으로써 선제적으로 가정공동체의 경제적 기반을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 재산분할의 비율

부부간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이 공동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분할의 비율은 당연히 절반씩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부부재산에 대한 2분의 1의 지분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한다면, 그 원칙이 수정되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⁵³⁾

한편 재산분할의 비율과 관련하여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은 부부 각자의 고유재산 증가분에 대한 분할이다. 부가이익공동체의 경우 혼인 당시의 재산과 혼인이 해소된 때의 재산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일방의 고유재산의 가액이 혼인 중에 증가하였다면 그 증가분은 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배우자 일방의 고유재산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그렇지만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에서 분할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재산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므로 고유재산을 분할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다. 따라서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분할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확정된 후, 분할의 대상인 재산을 절반씩 분할하는 것으로 함으로서 재산분할이 가지는 본래의 취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바. 사망 시의 재산분할

배우자 일방이 사망하면 그 재산이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배우자는 이혼 시 재산분할과 비교할 때 더 적은 재산을 상속할 가능성이 많다. 이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에게 불리한 결과이므로 이혼 시의 재산분할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에 상응하는 재산을 상속을 통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만 최근 들어 상속으로 인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것이 곤란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에서 배우자의 상속분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배우자에 대한 재산분할에 상응하는 상속분의 인정은 배우자의 생존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 법무부가 준비했던 선취분에 관한 민법개정작업은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적절한 재산이 상속되고, 그 재산을 통하여 배우자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상속법의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⁵⁴⁾

52)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免脫)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에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기존 명의신탁자가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위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9915 판결).

53) 부부재산제의 규정에 의하여 일방의 영업재산도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와 그 경우 분할비율을 일반적인 부부재산의 경우와 같게 정할 수 있는지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프랑스에서의 규율방법에 관하여는 소재선(2004), “프랑스법상 가족법과 거래법과의 관계”, 『경희법학 39(1)』,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103면 이하 참고.

54)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고 있는 주택연금금도 주택을 담보로 하여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빌려 쓰는 것이다. 주택 연금은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종료되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가입자의 사망시까지 빌려 쓴 돈이 주택의 가액을 넘으면 상속인에게 주택이 상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택연금제도의 활성화는 상속재산을 생존배우자에게 귀속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IV. 맺음말

현재의 부부별산제는 형식상으로는 부부평등의 원칙에 입각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부부평등의 원칙만을 선언한 것이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정에 합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⁵⁵⁾ 반면, 부부공동재산제는 혼인공동체의 실질에 부합하는 이상적인 부부재산제라고 평가되지만 실제생활에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법정부부재산제로 부부공동재산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 기존의 별산제를 유지하면서 별산제가 지닌 미비점을 보완하는 방안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다.⁵⁶⁾ 따라서 어느 부부재산제가 더 좋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을 것이며, 부부재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기초로 하여 이를 법적으로 가장 성공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재산제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부부재산제는 약정부부재산제와 법정재산제(특히 부부별산제)로 구성되지만, 제829조 1항과 사적자치 원칙에 근거해서 본다면 약정부부재산제가 원칙이고 법정재산제는 보충적 제도라고 이해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부부재산계약이 잘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정재산제가 원칙처럼 굳어져 있는 상황이다. 필자는 다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이 원칙을 관철하기 위해 부부재산계약을 활성화시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특히 부부재산계약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부부 각자의 소유재산 및 채무를 공개하고, 혼인 중 재산관계를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부부재산계약 도우미 제도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⁵⁷⁾ 그 밖에 표준계약서 등을 이용한 부부재산계약의 서면 작성 및 공증제도의 이용방안과 같은 체결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⁵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 개정안을 별개로 한다면 - 우리 민법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성립 전의 계약에 한해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단순히 부부재산계약의 성립시기만 놓고 비교하면, 영미법상 혼전계약(*prenuptial agreement*)이라는 제도가 있다. 이는 단순히 혼인 중 부부재산관계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이혼사유, 이혼 후 부양, 이혼 후 재산분할 등에 대해 온전히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계약내용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부부재산계약과 다르다. 이 제도는 부부관계에 대한 공익적 관점에 근거해 법적으로 형성된 제도가 아니라, 사적자치 내지 계약자유의 원칙에 의해 당사자들이 개별적으로 발전시켜온 제도이며, 영미권 국가에서는 그 유효성이 널리 인정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는 그의 저서 「부자되는 법(*How to Get Rich*)」에서 성공의 법칙 중 하나로 혼전계약을 꼽았다.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결혼 전에 반드시) 혼전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이다. 결혼해도 이혼할 확률이 절반이 넘는 미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신이 이런 경제적 성취를 허무하게 날려 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현실적 조언이다. 그는 “누구나 안정된 결혼생활을 오래 유지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이를 방해한다.”고 하면서, “(혼전계약) 얘기를 꺼내기 어렵겠지만 단지 몇 년간 함께 산 사람에게 전 재산을 줄 가능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당연하게도, 결혼 전 각자 보유한 재산에 대한 권리관계와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결혼 생활에서 지켜야 할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혼전계약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다. 유교문화가 깊이 뿌리 내린 보수적인 사회의 특성상, 사랑해서 결혼하는 이들이 돈 문제를 운운하며 계약서를 쓰는 것

55) 노종천(2007), “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개정법률안 소고”, 『원광법학 23(2)』,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88면.

56) 법무부안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노종천, 앞의 글, 270면 이하).

57) 윤우일(2013), “부부재산약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학논총 29』,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327면 이하.

58) 편집대표 윤진수(2015), 『주해 친족법 제1권(이동진 집필부문)』, 255면; 이창현,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연구, 29면 참조.

자체가 정서에 맞지 않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하지만 혼인하는 사람들 중 50%가 이혼하는 2020년의 ‘이혼공화국’ 대한민국⁵⁹⁾에서 혼전계약서는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특히 수백억 자산가들은 무방비로 이혼할 경우 거액의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데, 이 경우 힘들게 모아온 재산을 한 번에 날릴 수 있어 치명적이다. 결국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혼전계약은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약속을 확인하고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미리 작성하는 일종의 안전장치라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한걸음 나아가 애초에 법률혼의 테두리에 들어오지 않는 수많은 사실혼의 경우에 혼인관계의 당사자가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법정재산제인 별산제가 적용되는 대법원 판례가 확인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들이 혼전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을 때,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있을까? 적어도 사적 자치의 원칙상 어느 누구도 쉽사리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는 우리 국민들이 혼전계약을 알지 못해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이미 우리 현실에 혼전계약은 존재하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혼전계약은 부부재산제(부부재산약정과 법정재산제)뿐만 아니라, 혼인 해소에 따르는 재산분할문제, 재혼하는 경우에 전혼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의 관계에서 상속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 사실혼 관계에서 혼인이 해소된 경우의 재산분할문제⁶⁰⁾ 등등을 해결하는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V. 토론 - 개정안⁶¹⁾

현행	개정안
第829條(夫婦財産의 約定과 그 變更) ①夫婦가 婚姻成立前에 그 財産에 關하여 따로 約定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財産關係는 本款中 다음 各條에 定하는 바에 依한다. ②夫婦가 婚姻成立前에 그 財産에 關하여 約定한 때에는 婚姻中 이를 變更하지 못한다. 그러나 正當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法院의 許可를 얻어 變更할 수 있다. ③ (생략) ④夫婦가 그 財産에 關하여 따로 約定을 한 때에는 婚姻成立까지에 그 登記를 하지 아니하	第829條(夫婦財産의 約定과 그 變更) ① 부부는 혼인성립 전 또는 혼인 중에 혼인 중의 재산 관계에 관하여 약정할 수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약정을 변경할 수 있다. <삭제> ③ (현행과 같음) ④-----약정을 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아 약정을 변경할 때에는 이를 등기

59) 통계청, 2020년 혼인·이혼 통계, 2021. 3. 18. 보도자료.

60)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관한 민법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다. 그러나 부부재산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 관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므15841)”.

61) 2020. 8. 18. 정춘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였다(의안번호 3008).

현행	개정안
면 이로써 夫婦의 承繼人 또는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⑤第2項, 第3項의 規定이나 約定에 依하여 管理者를 變更하거나 共有財産을 分割하였을 때에는 그 登記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夫婦의 承繼人 또는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한다. <신 설> 第830條(特有財産과 歸屬不明財産) ①夫婦의 一方이 婚姻前부터 가진 固有財産과 婚姻中 自己의 名義로 取得한 財産은 그 特有財産으로 한다. ②夫婦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分明하지 아니한 財産은 夫婦의 共有로 推定한다. <신 설> 第831條(特有財産의 管理等) 夫婦는 그 特有財産을 各自管理, 使用, 收益한다. <단서 신설> <신 설>	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⑤ 제1항 및 제3항의 약정에 의하여 재산관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재산관계를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청산을 통하여 소유하게 된 재산은 부부의 고유재산으로 한다. ⑥ 부부가 혼인 중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제830조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第830條(부부재산의 권리귀속) ①----- -----재산과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으로 한다. ②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을 기반으로 발생한 재산 증가분과 혼인 중 취득한 재산 및 그 증가분은 제102조에도 불구하고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③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이 등기 또는 등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명의를 가지지 않은 부부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공유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청구할 수 있다. 第831條(고유재산의 관리) -----고유재산을 각자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다. 다만, 고유재산이 제831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제831조의2를 준용한다. 제831조의2(부부공유재산의 처분제한) ① 부부의 일방이 자기의 명의로 된 주거용 건물과 주거용 건물의 취득을 위한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 및 생계를 위한 영업용 자산을 양도하거나 이를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동의를 하여야 하는 다른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의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동의에 갈음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신설>	②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제1항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일방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취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831조의3(혼인 중의 재산분할) ① 혼인 중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일방에 대하여 공유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1. 부부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부부 일방의 현저한 낭비, 도박, 담보 제공 등 재산 감소행위로 말미암아 가족 경제에 위기를 가져오는 경우 3.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혼인 중 별거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4. 부부 일방이 제831조의2제1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혼인 중 재산분할을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합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가정법원은 균등하게 분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쌍방이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2항의 분할에 대하여는 공유물의 분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268조제1항 단서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④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일방이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대한 정보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혼인 중 재산을 분할한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하여 다시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현행	개정안
第839條의2(財産分割請求權) ①協議上 離婚한 者の 一方은 다른 一方에 대하여 財産分割을 請求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第1項의 財産分割에 관하여 協議가 되지 아니하거나 協議할 수 없는 때에는 家庭法院은 當事者의 請求에 의하여 當事者 雙方의 協力으로 이룩한 財産의 額數 기타 事情을 參작하여 分割의 額數와 方法을 定한다. ③ (생략) 第1009條(法定相續分) ① (생략) ②被相續人의 配偶者의 相續分은 直系卑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直系卑屬의 相續分의 5割을 加算하고, 直系尊屬과 共同으로 相續하는 때에는 直系尊屬의 相續分의 5割을 加算한다.	第839條의2(財産分割請求權) ①----- ----- 이 경우 재산분할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831조의3을 준용한다. <삭제> ③ (현행과 같음) 第1009條(法定相續分) ① (현행과 같음)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의 100분의 50을 선취분으로 청구할 수 있고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되는 재산이 없는 경우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 참고문헌

< 단행본 >

- 통계청, 2020년 혼인·이혼 통계, 2021. 3. 18. 보도자료
윤진수, 친족상속법강의, 박영사, 2018
김주수/ 김상용, 주식 민법[친족(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6
편집대표 윤진수, 주해친족법(제1권)(이동진 집필부분), 박영사, 2015
조은희·전경근, 부부재산제 개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4
전혜정, 부부재산계약(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5

< 논문 >

- 강해순, 중국 부부재산제도의 변천과 동인, 가족법연구 25(2), 한국가족법학회, 2011
김미경, 프랑스민법상 약정부부재산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4(1),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2010
김미경, 프랑스 민법상 부부재산제의 변경, 비교사법 21(2),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김병두, 별산제의 한계와 그 극복으로서 부부재산계약, 성균관법학 16(3),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김선희, 부부재산제도의 효과와 그 개선방향, 젠더법학 9(1), 한국젠더법학회, 2017
김양희, 부부재산제도와 처의 가사노동평가에 관한 고찰, 인천법학 4집, 인천대, 1989
김태선, 양성평등을 위한 부부재산제 개정방향, 입법과 정책 9(3), 국회입법조사처, 2017
노종천, 부부재산제에 관한 민법개정법률안 소고, 원광법학 23(2),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박현정, 부부재산계약상의 계약자유원칙, 재산법연구 32(4), 한국재산법학회, 2016
소재선, 프랑스법상 가족법과 거래법과의 관계, 경희법학 39(1),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우병창/마르타 짐바르도, 이탈리아 민법상 혼인의 효과, 법학논총 19(1),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윤우일, 부부재산약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법학논총 29,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이병화, 국제부부재산제와 처의 지위, 여성학논집 1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1999
이제우, 러시아가족법상 법정부부재산제의 어제와 오늘, 가족법연구 29(3), 한국가족법학회, 2015
이준영, 미국에 있어서 혼인법의 전개, 가족법연구 22(2), 한국가족법학회, 2008
이창현, 부부재산계약에 관한 연구—영국의 논의를 중심으로, 법제연구 51, 한국법제연구원, 2016
이화숙, 부부재산제의 이상에 비추어 본 입법론과 개정안, 인권과 정의 381, 대한변호사협회, 2008
조은희, 유럽 부부재산제의 통일화에 대한 전망, 법학논문집 31(2),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조은희, 독일과 프랑스의 선택 - 잉여공동제 협약과 그 시사점, 국제법무 13(1),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21
최행식, 부부재산제의 실태와 개선방안, 원광법학 22(2),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6

* ABSTRACT *

The provisions of the Korean Civil Act on the marital property system have been largely maintained since the Civil Act was enacted in 1958. However, even in today's era of numerous changes, such as the improvement of women's status, women's economic activity' increase, the collapse of patriarchal society, and changes in perceptions of marriage and divorce, it is very difficult to regulate marital property relations as it was in the past.

Regardless of the form of the legal marital property system, as long as substantial gender equality can be realized, there is no big problem even if it is based on the conventional separate property system. However, the marital property agreement needs to be completely revised. The autonomy of the parties, that is, the freedom of contract, should be given more weight than the public interest aspect of maintaining the marital community. The amendments submitted to the 21th National Assembly are considered to be the result of comparative law studies and efforts to respond to the changes of the times. I hoped that the amendment will be passed and the marital property system – in particular, marital property agreement will become more active.

On the other hand, in-depth research on the introduction or reflection of premarital agreement in the UK and the United States should be conducted. The prenuptial agreement is the closest form to the realization of contractual freedom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 wife and husband are a community of status united by love and affection, but a relationship is made in the form of a contract called marriage. Therefore, the will of the parties must be respected in regards to the marital property relationship, the grounds for divorce, the division of property in case of divorce, and maintenance etc. Of course, partial restrictions may be applied to agreement by one party's oppression, but those restrictions should not become a principle.

행정학에서의 은유 연구: 성과와 한계*

강성남**

A Study on The Metaphor in the Administrative Research : Outcomes and Limits

Seong Nam Kang

◁ 목차 ▷

- | | |
|----------------------|-------------------|
| I. 문제에 대한 기본시각 | IV. 은유 활용의 성과와 한계 |
| II. 은유의 패러독스 | V. 결론 |
| III. 행정학 연구에서 은유의 실제 | 참고문헌 |

I. 문제에 대한 기본시각

과학적 이론의 발달은 새로운 이론 구성에 의해 추동된다. 새로운 사실을 찾거나, 새로운 개념의 개발은 이론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과학의 결과물인 이론이 언어, 즉 명제 체계로 표현되기 때문에 이론형성과 설명에 있어서 언어(개념)가 갖는 위상은 매우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논리 실증주의자처럼 관찰언어와 이론 언어의 연관성을 강조하는 좁은 경험주의의 관점이 아니라 과학적 탐구가 언어적 전환과 혁신에 초점을 둔 인식이 강조된 지는 오래다. 여기에는 은유(metaphor)가 새로운 발견의 사고방식이란 전제가 있다. 1960년대 전후까지만 해도 과학적 이론과 관련하여 은유가 주된 기능을 수행한다고는 보지 않았다.

행정학 연구에서 특히 조직이나 정책 과정의 복잡성을 설명할 때는 모델의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연구자는 상징을 활용한 경성언어를 이용한다. 계량화도 그중에 하나다. 자연어에 비해 경성언어는 일부 현상만을 추상화하여 표현한다는 한계가 있다. 자연언어를 활용하면 관찰 대상에 대한 이미지를 선명하게 그려낼 수 있다. 복잡한 현상의 대강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현상을 그림으로써 추상에서 오는 모호함을 완화 시키는 효과가 있는 게 사실이다. 현상을 그릴 때 여기엔 은유가 활용된다. 특히 추상적이며 비 경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자 할 때는 구체적이고 경험 가능한 개념으로 바뀌어 ‘읽어 볼’ 필요가 있다. 자연언어의 기반인 은유가 이를 담당한다.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은유란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Lakoff & Johnson, 1980/1995: 23). 상식적인 차원에서 은유는 낯선 것을 낯익은 것으로 정의하는 수사법으로 통용된다.

복잡하고 익숙하지 않은 현상을 보다 단순하고 친숙한 용어로 환원하기 위해 자주 은유 (metaphor)를 활용한다. 은유는 우리가 하나의 경험 영역을 다른 경험 영역의 언어로 해석하는 사유 방식이다. 하나의 사유 대상(A)과 다른 사유 대상(B)을 비유적으로 동일시하고 둘의 이미지를 융합하여 둘 간에 연관성을 형성함으로써 마치 하나를 다른 하나인 것처럼 바라보게 한다. 은유가 동일하지 않은 대상들 간의 동일성을 단언할 때 그것은 글자 그대로 난센스다.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은 삶이 영역에서 우리의 은유가 우리의 현실지각, 우리의 개념적 상상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행위를 틀 짓는다고 주장한다(Lakoff and Johnson, 1980). 이것은 은유가 현실을 묘사하고 해석하고 변형시킨다는 점에서 매력을 지닌다는 뜻이다.

철학자와 과학사자들은 은유와 유추가 과학적 창조성과 발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Black, 1962; Hesse, 1966; Weisberg, 1993). 파레토(Vilfredo Pareto)가 정치 지도자 유형으로 ‘사자형’과 ‘여우형’으로 지칭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은유다. 이처럼 은유는 단순한 글쓰기 장식이 아니라 사유체계를 구조화하는 작용을 한다. 가레스 모건의 조직 이미지 탐구는 행정조직을 이해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G. Morgan, 1997).

행정학 연구에서 관료제의 이념형이나 조직과 정책에서의 추상적인 관념을 은유로 표현하여 개념의 실체를 명확하게 이해시키고 더 나아가 개념확장과 새로운 이론영역을 개척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은유는 인지적 도구기능과 함께 추론적 기능 및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한다(임지룡 외 지음, 2015). 그렇다면 은유가 사회과학 또는 행정학 연구 분야에서 어떻게 우리의 사고방식을 구조화하는가?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개념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과연 은유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이 글에서는 바로 이런 문제 인식하에 행정학 연구에서 은유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살펴보면 서 그것의 성과와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은유의 패러독스에 대한 비판 이론적인 정리를 할 것이다. 필자의 기본 인식은 향후 행정학 연구에서 은유 활용의 지평이 더욱 확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은유 연구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은유는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세계이자 다른 현실의 장(場)으로 우리를 안내하기 때문이다.

II. 은유의 패러독스

1. 은유의 원리: 건너가기

관찰을 통해 패턴을 발견하는 것이 이론과 규칙을 만들기 위한 첫 단계이다. 관찰을 통해 시간과 공간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는 유사성을 찾아냄과 동시에 반복되는 패턴을 구분해내고 다시 패턴으로부터 원리를 뽑아낼 때 비로소 이론과 규칙이 형성되는 것이다. 은유(metaphor)는 관찰을 통해 사물의 특징에서 발견되는 유사성을 발견할 때 만들어진다. 실제로 관찰만으로 이론과 규칙을 만들어 낼 수 없다. 치밀한 논리적 사고가 개입되어야 한다. ‘관찰->논리적 추론-> 이론과 규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정교한 논리적 추론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이론과 규칙이 만들

어질 수 있다. 은유는 논리적 추론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논리적 추론 없이는 관찰 자료가 한낱 자료 무더기에 지나지 않는다.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서 ‘내용 없는 사고는 공허하며, 개념 없는 직관은 맹목이다’라고 지적했듯이 관찰(내용)과 논리적 추론(사고)은 이론과 규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새의 두 날개와 같다.

은유는 우리의 사고와 언어의 근간이다. 레이코프와 존슨(Lakoff & Johnson, 1980)은 『삶으로서의 은유』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점을 이루는 일상적 개념체계의 본성은 근본적으로 ‘은유적’이라고 말했다. 어떤 문화의 기본적인 가치는 문화의 근본 개념의 은유적 구조와 정합성을 갖는다.

대개 은유는 ‘A는 B다’라는 형식을 취한다. A를 원관념 또는 근원 영역(source domain)이라 하고 B를 보조관념 또는 목표영역(target domain)이라고 부른다. 은유는 A와 B를 대응시켜 관계 맺기를 하는 것으로, 이를 가리켜 ‘매핑(mapping)’이라고 한다. 은유는 두 개의 개념적 영역을 관계 맺기 과정에서 생긴다. 사전적인 의미로 정보·통신 컴퓨터 그래픽스에서의 매핑 용법은 한 좌표 체계에서 다른 좌표 체계로 변환하는 일을 의미한다. 영상 분야에서의 매핑은 사실적인 묘사를 위해 평면의 이미지를 입체적으로 변환하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기법을 일컫는다. 하나의 값을 다른 값으로 또는 한 데이터 집합을 다른 데이터 집합으로 번역하거나, 2개의 데이터 집합 사이에 1:1 대응 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요컨대 매핑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짓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인터넷은 정보고속도로다’라는 은유적 표현을 통해 정보사회의 기본적 가치가 인터넷망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실어 나르는 것이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산업사회의 정보고속도로와 은유적 구조와 잘 들어맞는다는 뜻이다. 인터넷망이 정보고속도로라는 은유처럼 어떤 사회나 문화의 기본 가치와 정합성을 갖는 근본적인 개념으로서의 은유 즉, ‘사회문화적 은유’는 어떤 표현을 더욱 돋보이게 하려는 의도와 목적에서 생긴 것이 아니다. 바로 이런 측면이 문학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사적 은유와는 다른 점이다. 은유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회문화적 행위를 이루고 있는 정신적 코드를 이해한다는 의미다(강성남, 2016: 74).

아리스토텔레스는 『시학』에서 은유를 ‘어떤 것에다 다른 낱선 어떤 것에 속하는 이름을 옮겨놓는 것’이라고 정의했다(아리스토텔레스, 2005). 인터넷망에다가 대로, 골목길, 소로, 차도, 인도, 자동차 전용도로 등 여러 종류의 길 가운데 고속도로를 옮겨놓음으로써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이것이 은유의 원리다.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건너가기’다. 대상이 가진 본래의 관념으로는 전달할 수 없는 의미가 있다면 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유사한 특성의 다른 사물의 관념을 차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게 은유법이다. ‘유사한 특성’이란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은유의 본질이 바로 원관념(인터넷망)과 보조관념(정보고속도로) 간의 유사성에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망과 정보고속도로는 정보를 신속하게 실어 나른다는 유사성을 효과적으로 이용했다. 이 유사성이 원관념의 본질을 더욱 잘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은유가 유사성만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은유에서 ‘어떤 것에다 다른 낱선 어떤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원관념과 보조관념 사이에 낱선 비 유사성을 함축하고 있다는 의미다. 보조관념인 정보고속도로에는 정보 통로라는 유사성만 아니고 원관념인 인터넷망과 전혀 낱선 ‘정보를 아주 신속하게 퍼뜨린다’는 비 유사성이 함께 들어 있다. 이런 비 유사성으로 인해 인터넷망은 정보를 매우 빠르게 옮긴다거나 사방팔방으로 뻗어나간 망을 따라 정보가 쉼 없이 확산한다는 새로운 의미가 창조된다. 이처럼 은유는 우리에게 현상에 대한 새로운 측면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측면’이란 우리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세계이자 다른 현실의 장

(場)이다.

은유가 원래 유사성을 통해 그 안의 본질을 파악하여 보편성을 밝히는 생각의 도구로 개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은유와 학문과의 관계가 긴밀할 수밖에 없다. 학문이란 본래 보편성을 추구하는 작업이다. 그래서 학문은 은유를 통해서 보편성을 밝혀낸다. 보편성을 추구하는 이론 역시 은유와 같은 역할을 한다. 유사성을 통해 보편성을 드러내는 역할이 은유에서 나온 것이라면 이론 역시 은유를 통해 생겨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시장에 대입하는 은유 방식을 통해 자율조정력을 지닌 시장의 힘을 생성하고 있다. 사실 칼뱅의 예정조화설을 신봉했던 애덤 스미스가 종교적 언어로 시장을 움직이는 가격 장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한 것이다. 결국 ‘보이지 않는 손’이 스미스에겐 ‘신의 손’ 또는 ‘섭리’로 이해됐을 것이다. 관료조직을 묘사하는 피라미드도 은유다. 많은 관료조직의 형태에 관한 기록에서 피라미드라는 보조관념을 대입함으로써 무질서한 기록과 자료, 정보를 질서정연한 상태로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관료조직의 추상성을 구체적인 이미지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강성남, 2016: 75).

2. ‘드러냄’과 ‘감춤’

행정학에서 활용되는 은유는 문학에서 사용하는 창의적 은유,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상적 은유, 개념화되어 굳어진 개념적 은유에 걸쳐 있다.

그런데 은유에는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의 일부를 드러내거나 부각(highlighting)하는 한편 대상의 일부를 억압 또는 은폐(hiding)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는 점에서 패러독스의 측면을 갖고 있다. 은유의 기제에 집중하면 모든 것을 그 틀에 집어넣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언어의 표현적 측면을 소홀하게 다루는 결과를 초래한다. 사실상 개념적 은유는 인간의 신체적 경험과 사회문화적 배경을 기반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언어의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영역에 적용될 수 있다는 확장력을 지닌다.

결국 은유가 대상에 대한 모든 측면의 특성을 다 드러내지는 못한다는 의미다. 특정 영역이나 측면을 부각하기도 하지만 다른 측면이나 영역을 감춘다. 일반적으로 특정의 관점은 어떤 측면에 초점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초점에서 벗어난 다른 측면을 희생시키는 결과를 낳는다. 즉, 은유는 그 틀 내에 잘 맞지 않는 잠재적인 새로운 의미들을 잘라내는 구실도 한다는 점에서 은폐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는 말이다.

은유의 ‘부각’과 ‘은폐’라는 패러독스는 은유의 장점이자 한계라는 양면성을 가진다. 외견상 제한된 이해는 ‘부각’의 특성이자 한계이고 이해의 맹목은 ‘은폐’의 특성이자 제약이기 때문이다.

은유의 부각은 창조적 통찰력의 원천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은유는 눈에 보이는 것(sight)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insight)을 알게 하는 효능을 가진다. 하지만 은유에는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정치선동가들이 공적 담론에서 은유를 악용하는 경우에서 드러나는 위험성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도 『시학』에서 은유의 양면성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그는 은유에 정통하다는 것은 천재성의 표시라고 극찬한다. 은유에 능숙하다는 것은 숨어 있는 유사성을 직관적으로 깨닫는 것이기 때문이다. 토머스 홉스는 국가를 구약성경 율기에 나오는 바다 괴물인 리바이어던(leviathan)으로 묘사하는 은유를 제시한 것은 유명하다. 홉스도 무의미하고 모호한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무수한 어리석음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3. 외연적 소외와 내포적 소외

은유는 개념의 외연(extension)과 내포(intention)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배제와 소외를 유발한다.

하나의 우리의 정신에서 은유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것들을 배제한다. 이것이 바로 외연적 소외다. 다른 하나는 은유에서 말하는 것 외에 다른 속성은 보이지 않는 곳에 가둔다. 그럼으로써 다른 술어들을 차단한다. 이것이 내포적 소외다(김용규, 2021: 46).

대상과 은유 사이에는 엄연한 간극이 존재한다. 대상과 은유 사이에 틈이 벌어질수록 은유의 효과는 커지는 법이다. 틈이 생긴다는 것은 항상적 불일치, 혹은 낯설게 함을 전제로 삼는다. 은유를 만드는 자들은 은유를 전유하면서 이 틈의 이격(離隔) 효과를 손아귀에 넣는다. 이 틈이야말로 의미가 말없이 깃드는 장소다. 대개 큰 은유는 작은 은유들을 포용하며 의미의 지평을 펼친다.

라캉이 은유는 무의미 속에서 태어나는 바로 그 위치를 차지한다고 했을 때 은유는 의미도 아니고 의미의 기원도 아니다. 은유는 실재성을 이루는 성분들이 증발하면서 드러난 구멍이다.

은유는 실재에서 나왔지만, 그것의 속박에서 벗어난다. 그 구멍을 채우는 것은 이미지와 시니피앙(기표)이다. 나쁜 은유, 해로운 은유란 없다. 오직 명석한 은유와 덜 명석한 은유가 있을 뿐이다.

생각에 자리한 개념 활동을 위해서는 (생각의) 도구가 필요하다.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까지 그리스에서 개발된 은유는 원리, 문장, 수, 수사와 함께 ‘생각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생각은 무한한 대상들 앞에서 혼란스러워진 우리의 정신이 질서를 이끌어 내는 방식이다. 그것은 보통 다양하고 복잡한 대상들을 몇 가지 단순한 패턴에 의해 정리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그리고 그 패턴들이 서로 모여 더 크고 복잡한 패턴을 만들어간다. 생각의 도구들은 그 자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생각의 패턴들이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모든 생각을 만들어내는 시원적 방식이고 패턴이다(김용규, 2014). 생각의 도구를 통해 생각은 커지고 복잡해지기도 하고 단순화하여 이해를 돕기도 한다.

특히 은유에서 배제와 소외의 기능을 통해 복잡성을 단순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용규, 2021: 110-111). 은유는 단순히 비유적 표현에 머물지 않는다.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문화적 사회적 경험들에 근거하는 은유는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개념체계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은유는 생각을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인식된다.

반면에 어떤 종류의 개념적 틀, 즉 어떤 종류의 은유에 의지해서 사물이나 대상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그 틀로는 볼 수 없는 것, 즉 감추어진 진실이 있게 된다.

사람은 자원이다. 그래서 인적자원이란 단어가 파생된다. 이것은 노동을 물질적 자원과 마찬가지로 사용하거나 개발하여 어떤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산업사회에서 만들어진 틀이 작동하고 있다.

관료제와 행정, 정책, 인사, 조직이론에서 등장하는 은유에는 바로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두고 등장한 게 많다. 산업사회와 자본주의 사회를 배경으로 삼는 은유 말이다. 시간동작연구에서 시간은 자원이고 생산성에 필수요소인 셈이다.

조지 레이코프는 논리 전개에서 사고의 ‘틀 짜기(framing)’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한다(레이코프, 2018; Lakoff, 1980). 코끼리를 생각하지 말라고 한 뒤 잠시 후에 코끼리를 생각하지 않는 게 가능했는지 알아봤다. 결과는 거의 모든 학생이 성공하지 못했다. 특정 개념의 틀에서 나온 단어를 사용한다면 그 개념적 틀에서 벗어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틀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결정한다. 틀은 사고의 구조이고 어떤 단어가 갖는 함축적인 의미와 그런 가치가 담긴 단어들이 놓인 문맥을 형성한다. 인지적 잠재의식의 일부가 틀에 작용한다. 의식의 세계에선

접근할 수 없지만, 우리가 결정하거나 행동할 때, 정보를 처리할 때 작동한다.

현실에 대한 직관적인 평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틀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틀은 언어로 작동하므로 새로운 틀을 위해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달리 생각하려면 다르게 말해야 하는 이유다.

조직이나 정책을 이해하려면 그의 언어를 해석하고 분석해야 한다. 조직과 정책은 언어를 매개로 구성하는 문화 텍스트다. 인간의 조직행동은 특정한 문화 텍스트다. 구성원의 인식과 해석, 의미 부여와 상호작용은 사회구성 과정의 산물이자 매개다. 은유에 초점을 둔 언어 텍스트 분석을 통해 조직이나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다.

조직을 기계, 유기체, 두뇌, 식물, 감옥으로 ‘다시 틀 짜기(re-framing)’하는 모건(Gareth Morgan)의 조직 이미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은유는 두 개의 기호나 주제를 새롭게 연결하는 수사법이다. 이처럼 ‘다시 틀 짜기’를 통해 새로운 관점이 나타난다. 정서적 실재를 포착해 표현할 수도 있다. 특정 가치를 표현하거나 지지할 수도 있다. 세계를 보는 방식을 규범화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확립하는 이데올로기의 가치를 생성할 수도 있다. 은유는 개념체계를 형성해 삶의 실재를 규정하는 핵심이다. (수잔, 티체 외, 2013)

4. 은유의 동학

은유의 가치에 대해서 존 로크는 『인간 오성론』에서 수식 없는 평상어 사용을 옹호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은유를 심각한 논의에서 배제해야 할 언어 오용 현상으로 지적함으로써 비판적인 태도를 취했다. 그는 있는 그대로의 사물에 대해 말하려면 모든 수사학적 기술과 인공적이고 비유적인 적용이 그릇된 생각을 하게 하고 감정을 움직임으로써 판단을 오도하기 때문에 완전한 속임수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비판했다(J. Locke, 2017). 로크의 입장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과학적 진리와 이론에서 은유는 언어 오용의 오류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유가 탐구의 도구일 뿐만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측면과 다른 측면을 인지하는 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어렵다. 철학에서는 은유 논의가 의미론의 지류로서 간주했다. 그리고 은유의 역할, 은유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심리학과 문학 및 과학교육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졌다. 즉 과학자는 어떤 심리적 이유와 동기를 가지고 은유를 사용하는지, 활용하는 은유가 어떤 효과를 내는지, 그래서 어떤 은유가 학습에 효과적인지를 따져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과학 언어의 정치성과 은유가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논구하는 차원으로 발전하게 됐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행정학 연구에서의 은유는 대부분 기존의 것들을 차용한 것이다. 행정학자들이 독창적으로 은유를 개발한 경우는 거의 없다고 과언이 아니다.

헤시(M. Hesse)는 은유를 인지의 도구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서는 존재론, 지식론 및 진리론에 대한 기존 사고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다(Hesse, 1966). 헤시의 주장에서는 은유가 과학의 새로운 질서를 그리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함축하고 있다.

한편 은유가 이론형성의 전 단계에서 사용되거나 아니면 이론이 완성되고 나서 이를 소개하고 교육할 때 비공식적인 주석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게 신중론자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신중론자들은 은유가 과학적 명제의 정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은유 활용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블랙(M. Black)이 바로 이런 신중론자의 입장을 취한다(Black, 1955, 1962).

한편 보이드는 은유가 새로운 이론적 용어를 도입할 때 유용하다고 말한다. 은유의 속성상 새로운 유사성이 만들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연과학 분야의 예로는 우주 공간에서 블랙홀(black

hole)과 화이트홀(white hole)을 연결하는 통로를 의미하는 가상의 개념으로 벌레 구멍(worm hole)으로 은유하거나, 전자 궤도를 전자구름(electron cloud)으로 지칭하는 것과 같은 은유는 기존 이론을 단지 소개하는 차원을 넘어서 새로운 이론 구성을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이론 구성적 은유(theory constitutive metaphors)라고 할 수 있다(Boyd, 1979: 360). 인지심리학에서는 이런 유의 은유가 종종 활용되고 있다. ‘뇌는 컴퓨터다’, ‘기억은 정보저장과 처리다’ 등이 뇌와 기계의 정보처리 과정에서 이해하고자 한다. 이처럼 은유가 기존의 유사성을 넘어서서 새로운 관계를 창조한다. 핵심은 인간 컴퓨터, 둘 사이의 간격을 어떻게 이해시키는지이다. 이것은 은유 사용자의 몫이다.

은유를 둘러싸고 벌이는 논쟁 중에는 은유가 두 현상 간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속성에 기초한 것인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서 그런 유사성을 만들어낸 것인지에 관한 것이 있다. 블랙(Black, 1962: 37)은 어떤 경우엔 은유가 존재하는 유사성에 기초한다기보다는 유사성을 창조한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종의 은유가 구성주의적 전통과 맥이 닿아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은유는 사람들의 생각, 감정, 행위를 틀 짓는다. 이런 방식으로 그 은유가 다시 출현한 사회적 맥락으로 피드백되고 그 과정에서 그 맥락을 변화시키는 동학을 발생시킨다(대니얼 리그니, 2018: 350). 또한 은유는 경험을 조직화하고 범주화한다. 은유는 의미를 통제하고 행위자들을 동기 짓는다. 은유는 공유된 가치와 신념을 표현한다. 요컨대 은유는 사회 세계를 구성하는 데서 필수적이다. 게다가 은유의 의미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변하면서 다양한 동학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 동학은 문화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은유는 동일한 사회의 다른 분파에게 실제로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은유의 의미는 보편적이고 정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하고 변화한다는 점에서 은유의 동학은 은유의 활용성을 증대시킨다(대니얼 리그니, 2018: 351). 특히 연구 과정에서의 은유 활용은 경험적 자료를 선택하고 분류하고, 정리하고 비교하고, 분석하고 종합함으로써 그 경험내용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한다. 왜 은유를 만드는데 물음은 이런 맥락에서 볼 때 경험적 자료 간의 관계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은유를 만든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이다.

III. 행정학 연구에서 은유의 실제

과학적인 이론연구에서 은유의 역할은 과연 정당성을 얻을 수 있는가? 다시 말해서 은유가 행정연구에서 어떤 이론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가?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은유가 활용되는 현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행정학 연구주제 중에서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직, 정책, 정부와 시민 관계를 중심으로 은유 활용의 실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직 은유

가장 널리 알려진 조직 은유는 모건의 『조직 이미지/Images of Organization』에서 소개하는 것이다. 그는 조직을 기계, 유기체, 두뇌, 문화, 정치 시스템, 심리적 감옥, 흐름과 변환과정, 지배의 도구 등 여덟 가지 은유로 제시했다(Morgan, 1980, 1986). 그는 조직의 이미지를 하나의 은유로 파악했을 때 조직에 대한 이해를 왜곡 또는 배제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무려 여덟 개의 서로 다른 은유를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모건이 일관성을 결여한 은유를 나열한 것은 은유의 패러독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조직 관리자나 전문가의 역량 중에서 상황을 읽어내는 능력을 강조했다. 상황을 읽는 교묘한 솜씨(knack)는 다양한 상황에 대해 융통성 있는 대응력을 갖출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통찰이 생겨난다는 전제에서 폭넓고 다양한 상황 읽기를 통해 다양한 행동 가능성을 만들어낸다고 보는 것이다. 고정된 관점이나 입장에서만 사태를 조망하고 해석하는 태도는 덜 효과적인 관리자이거나 문제해결자라고 할 수 있다.

모간(G. Morgan)은 이런 인식에 기초하여 조직 생활을 읽고 이해하는 기술로서 은유를 통한 조직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한다.

가. ‘조직은 기계다’라는 은유

이것은 1740-1786년까지 프리시아 제국을 통치했던 프레더릭 대왕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다 (Morgan, 2006: 16). 그는 기계를 원형(prototype)으로 삼아 군대조직을 강력한 조직으로 변화시켰다. 조직을 기계로 인식할 수 있다는 점은 그 후 산업화 시대의 테일러리즘(Taylorism)으로 이어졌다. 산업화 시대의 공장 시스템은 과학적 관리론의 토대에 의해 작동되는 기계인 셈이다.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모던 타임스 영화다. 거대한 기계의 톱니바퀴에 끼인 인간의 모습은 거대 관료조직의 부속품으로서의 인간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조직이 기계라는 인식은 기계가 서로 맞물린 부품(interlocking parts)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조직을 이런 방식으로 설계하고 각각의 부품은 전체로서 기능하는 데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된다고 본다. 기계론적 사고방식은 일상생활에서 조직 이해에 있어서 뿌리 깊이 박혀서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다.

나. ‘조직은 유기체다’라는 은유

이 은유는 조직의 필요(needs)와 환경과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조직의 탄생, 성장, 발전, 쇠퇴, 그리고 소멸(사망)을 이해하고 조직이 환경변화에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은유다. 또한 생태 환경에서 발견되는 종들과 진화패턴의 관계를 고려하는 데도 유용한 은유다. 유기체 은유는 현대조직이론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개방체제, 환경과의 상호작용, 피드백의 개념들은 모두 유기체 은유에서 비롯됐다.

다. ‘조직은 두뇌다’라는 은유

조직의 정보처리, 학습, 지능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현대조직을 이해하는 준거의 틀을 제공한 것이 바로 ‘조직은 두뇌다’라는 은유다. 학습조직(learning organization)이란 개념은 바로 이런 은유에서 나왔다. 조직관리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정보의 원활한 흐름도 그 기저에는 ‘조직은 두뇌다’라는 은유가 자리하고 있다. 최고조직관리자층을 ‘수뇌부(首腦部)’라고 일컫는 것 역시 이런 은유가 반영된 것이다.

라. ‘조직은 문화다’라는 은유

조직을 문화로 보는 은유는 조직을 이해하는 데 조직의 가치, 생각, 신념, 규범, 의례, 공유된 의미 패턴이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다. 조직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이념과

목표, 조직문화, 조직의 업무처리에 있어서 의례적 프로토콜을 검토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은유에 따른 조직 이해 방식이다.

마. ‘조직은 정치체제다’라는 은유

조직을 정치체제로 보는 은유는 조직 활동을 형성하는 서로 다른 이해, 갈등, 그리고 권력행사에 초점을 두기 위해 활용되고 있다.

바. ‘조직은 심리적 감옥(psychic prisons)이다’라는 은유

조직이란 조직 구성원들의 생각, 사상, 믿음 또는 잠재의식 등에 의해 포획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나온 은유다. 사실 우리는 의식적이거나 무의식적인 심리적 과정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성적 욕구, 죽음에 대한 공포, 자신이 선호하는 강령 등에 따른 행동이 나타난다. 조직에서도 이런 현상은 존재한다. 조직편향성과 경로의존성 등은 한 번 틀에 갇힌 판단이나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 ‘조직은 끊임없는 변화(flux)다’라는 은유

앞에서 살펴본 조직을 유기체로 이해하려는 차원에서 제시한 은유에서는 조직이 탄생하고 성장하며 결국엔 소멸하는 변화와 변형(transformation)을 겪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조직은 변화다’라는 은유도 사회적 삶을 형성하는 변화의 논리에 초점을 둔 것이다. 조직을 스스로 자신의 이미지를 창조하는 자기생산 체계(self-producing system)라는 점을 강조하는 게 이런 은유에 기반한다. 카오스와 복잡성의 관점에서 얻는 통찰도 이 은유에 힘입은 바 크다. 조직을 경쟁하는 끌개 패턴(attractor patterns)의 이미지로 이해할 수 있는 배경에 이 은유가 자리하고 있다. 또한 조직을 긍정적 피드백과 부정적 피드백의 순환흐름(circular flows)의 산물로 이해하는 것도 이 은유에 기반한다. 게다가 현대조직의 특성이 변증법 논리의 산물이라는 관점도 이 은유와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모든 조직에서 혁신이나 개혁에는 반작용 또는 저항이 발생하는 데 이는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통찰은 조직변동을 이해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조직의 특성을 형성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시사점을 주기 때문이다.

아. ‘조직은 지배의 도구다’라는 은유

이 은유에는 계급론적 사유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이 잠재적으로 착취 측면을 지니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둔 조직 이해 방식이기 때문이다. 조직은 구성원을 이용하여 조직이 추구하는 최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노동과 경영의 관계, 글로벌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 등을 이해하는 데 지배의 도구 은유는 유용하다. 하나의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본 행동이 다른 관점에서는 착취적인 것으로 이해되는 측면을 다루는 데 도움 주는 은유법이다. 인사행정에서의 공무원 단체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슈를 분석할 때 생각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

모건의 조직 은유는 정부 조직의 다양한 속성에 대한 이해를 위해 여러 가지 은유를 활용 함으로써 관료조직에 대한 이해의 다층구조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하지

만, 이들 여덟 개의 은유에서 벗어난 조직 본래의 속성에 기초한 본래의 독립적인 실체로서의 목표를 지니고 고유한 논리체계로서의 조직이 지니는 특성을 포착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다.

2. 정책 갈등 은유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하는 것은 일단은 정책 이해당사자가 많다는 데 있다.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정책이 도달할 목표와 목표 달성을 위해 선택한 수단들에 따라 정책대상집단의 이해가 엇갈린다. 특히 정책 수단에 의해 정책대상집단은 분기되어 각기 주장 논리와 대안들이 다기화한다. 정책을 놓고 무조건 반대하는 세력은 차치하고라도 정책추진 방향과 방법을 놓고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어쨌든 정책 갈등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볼 것인가의 문제를 천착하는 과정에서 은유를 제시한 사례가 있다.

김정수는 「감정의 재발견: ‘화성남(男) 금성녀(女)’ 은유를 활용한 정부-국민 간 정책 갈등에 대한 시론적 재해석」 논문을 통해 은유를 통한 정책 갈등의 원인을 찾고 있다. 그는 정부를 화성 남으로, 국민을 금성 여로 은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존 그레이(John Gray)의 ‘화성 남, 금성 여(Men are from Mars, Women are from Venus)’ 모델을 2008년 광우병 파동을 둘러싼 정부-국민 관계에 대입하여 목표지향적인 남성과 관계 지향적인 여성 사이의 차이가 갈등을 키우듯 합리성과 과업 성취만을 추구하는 정부와 감정공동체인 국민 간에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정책 갈등의 핵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성별 차이에 의한 생각의 차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 소통 부재와 갈등이 증폭되는 원인을 천착하는 데 국민감정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과 몰이해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은유를 활용했다는 것이다. ‘화성에서 온 정부’와 ‘금성에서 온 국민’의 은유는 대상을 보고 이해하는 인식의 틀에서 메꿀 수 없는 틈이 존재한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화성 남자, 금성 여자의 은유는 존 그레이(1993)의 책에서 소개했던 것이다.

김정수의 연구에서는 정부가 정책 갈등 상황에 대처하는 태도와 관련하여 합리적 설명으로 대응해도 국민은 정부의 몰감성적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관점을 제시한다(김정수, 2010 : 894). 따라서 이런 은유의 적용을 통해 정책수요자의 입장을 공감하는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이 행정과 정책수행과정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감성정부(이대희, 2007), 감성 지능적 정부(우윤석, 2008), 동정적인 정부(구교준, 2009) 등은 일종의 정책 체제가 감성체로서의 인간의 특성을 드러낸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기업의 감성마케팅 전략도 고객을 감성체로 보는 것 외에 다른 아니다(스콧 로비넷, 2003).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문제는 정부는 과연 이성체로서만 작동하고 기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언제나 타당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의 여론형성은 이성적 논리와 함께 감성적 느낌이 상호작용의 결과로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 정부가 여론을 따르는 정책 결정과 집행하는 것을 두고 이성체의 역할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행동은 감성체에서 비롯된 것으로 단정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 논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담심리학에서 활용하는 남자와 여자의 감성과 이성에 대한 판단 논리의 차이(그레이, 1993: 234)를 정부 정책의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자 하는 틀로 활용하면 바로 이러한 단순화에 따른 부정합성이 나타난다.

어찌 정부가 감성을 지닐 수 있을까? 감정의 메커니즘, 즉 감정 발생과 표출이란 것에 대한 뇌과학적 이해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표상적인 현상이나 느낌으로 은유를 활용했을 때의 왜곡 현상

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3. 관료제 이미지 은유

관료제의 부정적인 조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은유 중에는 쇠 우리(iron cage)가 있다(박영신, 2014: 105-143). 그리고 관료-정치인-기업 간의 연대체에 의한 정책 결정 메커니즘을 설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은유로서 쇠 삼각형(iron triangle)이 있다. 관료제의 쇠 우리 은유는 조직 속의 인간이 갇혀 있다는 이미지와 함께 외부로부터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한다. 따라서 쇠 우리 은유는 관료제가 외부환경으로부터 피드백이 차단되어 있음으로 인해 변화에 둔감하고 변화를 추구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는 점을 강조할 때 종종 인용된다. 쇠 우리에 갇힌 관료 이미지는 절차와 규칙에 얽매어 행동의 자율성이 지극히 제한되는 상황을 상상하게 한다. 쇠 삼각형은 삼자 연대체의 강고함을 상징하고 있다. 연대체를 해체하거나 느슨한 구조로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이미지를 준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체제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때 이런 은유가 흔히 활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4. 시민과 정부 관계 은유

시민- 정부 관계를 상징하는 은유도 행정학에서 흔히 발견된다(김민주, 2016: 9-16). 주인-대리인 모델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이 밖에도 몇 가지를 더 살펴보기로 한다.

가. ‘정부는 대리인이다’라는 은유

이 은유는 조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에 토대를 둔 「주인-대리인 이론」을 통해 널리 알려졌다. ‘정부는 대리인이다’라는 은유는 존 로크의 계약론에 토대를 둔 정부 인식론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에게 일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주인인 시민에게 더 좋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나. ‘정부는 기업가다’라는 은유

신자유주의의 기조하에 전개된 정부혁신을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된 신관리주의, 신공공관리론 등에서 일관되게 제시된 은유다. 게블러와 오스본은 정부 재창조를 위한 정부 인식을 토대로 기업가적 정부론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장에서 활동하는 행위자로서 정부는 철저히 경쟁과 원가 개념에 따라 움직인다는 인식을 전제하고 있다. 정부 활동에 있어서 투입에 대한 산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것은 기업과 닮았다. 정부 역할은 고객이 원하는 방향에서의 정책과 사업을 결정하고 고객의 욕구를 기준으로 그 결과를 평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다. ‘정부는 피고용인이다’라는 은유

정부를 고용주(시민)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 고용된 집단체라는 인식에 기초한 은유다. 따라서 피고용인으로서 정부는 고용주인 시민의 뜻을 헤아리고 그에 따른 활동을 지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점을 전제한다. 납세자인 시민의 권리를 주장하는 명제에는 바로 이러한 은유에 기초

한 정부관이 배어 있다.

라. ‘정부는 규제다’라는 은유

이것은 정부가 사회와 시장에 개입하여 사회구성원과 시장에서의 행위자들의 행위를 통제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서 규제란 재산권의 행사나 권리를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실현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시장가격이나 시장참여와 진입 등에 대해 정부가 취하는 경제적 규제와 더불어 개인의 행동이나 가치나 관행 등에 가하는 사회적 규제를 말한다. 여기에 더하여 보호적 규제도 있다.

마. ‘정부는 피감시자다’라는 은유

‘시민은 감시자이고 정부는 피감시자다’라는 은유는 시민에 의한 정부 통제 기능을 이해하기 위한 사고방식이다. 이 은유는 앞서 소개한 시민이 주인이고 정부는 대리인이라는 생각, 시민이 고용주이고 정부는 피고용인이라는 사고와 맥을 같이 한다. 민주정부론에 따른 행정통제론을 지배하는 은유적 사고다.

바. ‘정부는 감시자다’라는 은유

이 은유는 미셸 푸코의 『감옥의 역사』에서 소개하는 파놉티콘(Panopticon) 이미지의 정부 인식론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도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부가 시민의 일거수일투족을 들여다보는 감시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있다. 즉 태형(big brother)으로 대변하는 전체주의 국가의 실체로서의 정부를 상징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보사회가 심화하면서 개인정보가 디지털화되고 빅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정부 역량이 날로 증대하면서 감시와 통제의 수준이 더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코드화는 개인의 행동반경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이미지는 시민의 감시자라는 인식을 부각시킨다.

사. ‘정부는 권위자다’라는 은유

정부의 행위가 합법적 권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지배원리에 따르기 때문에 시민의 복종이 반드시 옳다는 신념에서 권력행사 주체인 권위자로서의 정부를 상징한다(김광웅, 1981). 시민의 복종과 순응은 정부가 권위자로서의 역할 인식을 통해 나오는 필연적 인식이다. 토마스 홉스와 존 로크, 장자크 루소의 계약론의 밑바탕에도 이런 은유적 사유가 자리잡고 있다.

아. ‘정부는 지도자다’라는 은유

이 은유는 동양의 유교적 사상에 터 잡는 사유 양식이다. 정부는 어린 백성을 지도하는 위치에 있다고 본다. 목민심서의 기본 바탕을 이루는 사유형식이다. 즉 정부는 양치는 목자의 이미지다. 목자의 인도에 따르는 시민의 이미지를 강조한다. 전근대적인 정부관으로 비판받고 있는 은유다.

자. ‘정부는 보호자다’라는 은유

‘정부는 보호자다’라는 은유는 나약한 시민을 보살피는 위치의 정부를 상징한다. 그렇다고 시민이 무조건 보호를 받기만 하지 않는다. 보호를 대가로 보호자에게 의무를 지게 된다. 가부장적인 봉건제의 쌍무적 관계에 기초한 정부관이다. 다만 엄격한 아버지의 이미지인지, 자애로운 부모의 이미지인지 차이가 있을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국가와 정부의 역할론에는 직접적으로 이런 은유가 적용된다. 서양의 사유에서는 ‘계약’에 의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동양의 사유에서는 봉건제적 관계 양식에 초점을 둔다. 하지만 국가나 정부의 제일의 존재이유가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정부는 엄격한 아버지로서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리고 복지를 요구하는 국민에게 시혜를 베푸는 정부는 자애로운 부모의 이미지에 부합한다는 점도 배척하기 곤란하다.

VI. 은유 활용의 성과와 한계

1. 성과

은유는 일상생활의 바탕이자 대상이 되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현실을 축조한다. 은유는 연상법칙을 따라 만들어지는 기호체다. 은유는 다른 것에 이해서 어떤 것을 생각해 내고 그 다른 것에 대해 잘 아는 바에 의해서 새로운 어떤 것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이다. 은유적 현실은 동일상(유사성) 원리에 따라 어떤 비슷한 특성에 근거해서 사로 연결되기 때문에 공상적이고 초현실적인 효과를 사람의 마음에 일으키기도 한다. 교리를 설명하는 종교적 경전들이 수많은 은유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행정학 연구에서 은유가 활용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은유는 행정학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이론적 모델의 원천이 되었다. 조직이론이나 정책이론 및 분석모형들은 은유활용의 결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은유는 사회현상의 본질적 특징을 포착하기 위해 사회적 실재에 대한 단순화하고 선택적인 표상을 산출해왔다.

조직을 유기체로 보는 은유적 사유방식은 오귀스트 콩트, 에밀 뒤르켐 등 초기 기능주의자의 사회 유기체론에서 비롯된 것이다. 생물학 은유는 조직 생활의 관계적 성격과 유기적 상호관련성에 주목하게 된다. 조직이 생물체와 유사하다고 암시하는 것에 더하여 조직 현상이 살아 숨 쉬는 것일 수 있다는 인식에까지 이른다. 또한 조직을 기계로 보는 은유는 사회공학의 시각과 관련된다. 사회물리학의 은유가 사회를 불변의 과학 법칙에 의해 지배되는 자연적 장치로 묘사했다면, 사회공학의 은유는 인간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조직을 인공 기계로 바라보는 견해를 제시했다. 막스 베버가 그랬던 것처럼 관료제를 하나의 기계라고 일컫는 게 대표적이다. 조직을 기술 용어로 묘사할 때의 인식론적 바탕은 바로 기계 은유다. 기계 은유를 활용하는 사람은 그들 시대의 기술과 연계되어 있다. 산업사회의 공장 시스템이 보편화하면서 등장한 은유라는 점에서 그렇다. 이런 은유는 정보사회로 이행하면서 컴퓨터 시스템으로 조직을 이해하는 은유 설명으로 진화해 왔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문진형 조직이란 은유는 수직적 계층을 문진 모양과 같이 줄여서 평평하게 만든 조직을 일컫는

다. 이런 조직은 의사소통이 빠르게 진행하고 창조성이 높다는 특징을 지닌다는 점을 깨닫게 한다. 모자이크 이론은 여러 조직의 장점만을 추려서 만든 조직이란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게 한다. 아메바 조직이란 말에서는 조직구조가 경직되지 않고 신축적이기 때문에 상황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탁월한 조직이라는 이미지를 머리에 그릴 수 있도록 한다. 네트워크형 조직 이미지는 계층이 사라지고 조직 간 벽도 없이 부문 간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조직의 특성을 충분히 드러낸다. 경계를 넘기 때문에 글로벌 조직으로 발전하는 데 유리한 조직이라는 추론이 자연스럽다. 집단지성형 조직이란 은유는 ‘조직이 두뇌다’라는 은유의 변형이다. 이것은 특정 과제에 모든 관계자 참여하여 의사결정하고 집행하는 조직이라는 특성을 부각시킨다. 플랫폼 정부라는 은유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광장을 열어놓는 역할을 하는 정부라는 의미를 강조한다. 네비게이션형 조직이미지는 딥러닝 기술을 응용하여 스스로 조직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 모형이다. 생명체 조직 이미지는 생물체처럼 인공지능의 기계장치가 조직의 능력을 분석하여 최적의 상태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모형을 나타낸다(강성남, 2018: 132-134).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다룬 신문 기사에 나타난 은유를 분석한 연구(임혜원, 2020)에서는 은유가 정보 수용자의 인지과정에 프레임을 형성하고 정보를 특정 방향으로 이해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한다. ‘부동산시장은 생명체다’, ‘부동산 경기는 날씨가 나빠졌다’라는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부동산시장이 매우 위태롭고 심각한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 또한 거품, 강풍, 절벽 등의 이미지 개념을 사용하여 절망적인 상태를 암시하기도 한다.

은유 활용의 성과로 꼽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유 방식을 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추상적인 개념 영역이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개념 영역으로 건너기를 시도함으로써 개념을 체득하는 효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 방향을 찾는 데 유용하다는 점이다. ‘조직이 기계다’라는 은유 활용을 통해 우리는 조직과 기계에 대한 아직 알려지지 않은 유사성(similarity)과 상사성(analogy)을 생각하면서 새로운 연구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이다. ‘조직은 유기체다’, ‘조직은 두뇌다’, ‘조직은 심리적 감옥이다’라는 은유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직과 유기체, 조직과 두뇌, 조직과 감옥이란 두 영역 간의 유사성과 상사성을 찾아내고 그 틈에서 다양한 해석과 이해를 발견해낼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이론적 해석을 새롭게 해석하거나 전복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즉 유기체, 두뇌, 감옥에 대해 알려진 속성을 준거로 삼고 조직에 대한 탐구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은유를 만들고 그것의 모호함(즉, 두 영역의 틈)을 매개로 지식을 확장해 나가는 전략인 셈이다.

한편 관찰 가능성 개념의 모호함 때문에 ‘관찰용어’와 ‘이론용어’의 이분법은 더 이상 유용성을 지속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이분법은 논리실증주의의 유산이었다.

토머스 쿤(Thomas S. Kuhn)은 은유가 세대 간 학문 전수에서도 유용하게 작동한다고 본다. 다시 말해 정상과학에서도 언제나 필요한 장치라는 것이다. 기존의 과학 용어가 세계 사이를 완벽하게 연결 짓는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은유가 필요하다. 즉 은유가 세계를 다른 방식으로 자른 이론적인 언어와 달리 서로 다른 접점을 세계에 할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우리는 이론 언어와 함께 은유를 통해 세계에 더 근접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은유의 효능을 이해할 수 있다.

정책 갈등의 은유로서 화성남과 금성녀의 경우는 1980년대 중반 ‘차이의 원리’에 기초한 젠더와 언어에 관한 접근이 나왔다. 이런 생각의 지지자들은 남성을 표준으로, 여성을 희생자로 조명하는 결합이론의 전제를 문제시한다. 이들은 남성과 여성의 이차원적인 비교, 즉 여성을 언제나 좋지 않게 조명하는 비교를 벗어나고자 했다. 이들은 양성은 본질적으로 다른 문화 공간 속, 마치 다른 종족 집단에서 온 사람들과 같은 곳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남녀 간 커뮤니케이션은 힘들다는 점을

서 출발한다(Gumperz, 1982).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전제하면서 연구자들은 표준(남성 언어라는 규범)의 결합 또는 타락한 형태가 아닌 것으로서, 남성 언어와는 다른 것으로서, 그리고 그 자체로 검토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여성의 언어를 보고자 했다(Coates, 1998)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정부 관료제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은유와 ‘정부는 ...이다’라는 은유는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특성을 지닌 복잡계로서의 정부를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특정의 정부 특성이 부각되고 그에 따른 이론개발의 지평이 확장되기도 한다.

은유는 종종 담론을 장식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한다. 하지만 은유의 중요성은 그 이상이다. 은유의 활용은 세계를 어떻게 이해할지에 관한 사고방식(a way of thinking)이자 보는 방식(a way of seeing)을 의미한다. 따라서 새로운 행정학 연구 지평 개척이란 관점에서 평가할 때 은유 연구는 커다란 성과를 냈다고 볼 수 있다.

2. 한계

은유 활용의 성과 또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은유는 일정한 한계를 갖는 것도 간과할 수 없다. 한 예로 ‘조직은 기계다’라는 은유는 기본적으로 관점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직은 기계적 결합체가 아닌 유기적 결합체이기 때문이다. 유기체의 특성은 생명력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즉 탄생, 성장, 소멸의 과정을 거친다는 말이다. 조직이 기계다는 은유는 사전에 결정된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구조화된 조직을 특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하지만, 여기엔 인간적 측면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은유가 한쪽에 치우친 편견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조직은 기계가 아니고 실제로도 그렇게 설계될 수 없고 구조화되지도 않았다.

게다가 복잡계 이론의 관점에서는 조직을 스스로 창발성과 자기조직화 현상을 드러내는 실체로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카우프만, 2021).

우리는 이론이나 관점이 때로는 불완전하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잠재적으로 오도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관점이나 이론적 근거에 따라 은유는 은폐와 부각이라는 패러독스를 여실히 드러낸다는 점에서 한계가 명확하게 존재한다. 특히 은폐를 통해 은유는 현실이해에 심대한 장애가 된다.

그래서 은유를 평가할 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준점을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발견적 잠재력이다. 즉 새로운 발견과 통찰력을 산출하는 능력이 있는지에 따라 평가된다. 발견적 은유는 친숙한 주제에 대한 신선한 견해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풍부한 새로운 개념들을 암시하고 새로운 탐구 노선을 창출하는 기능을 가진다. 둘째, 광범위하고 다양한 현상을 간결하고 간명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포괄적이고 단순성을 동시에 충족하려는 은유의 평가 기준 때문에 ‘부각과 은폐’의 패러독스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셋째, 설명력이 높아야 한다. 넷째, 예측력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미학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여섯째, 도덕적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인간적 가치와 이해관계에 우호적인지를 따져야 한다. 사회현상에 대한 은유는 다양한 경제적 계급과 정치적 분파에 의해 각각의 사회적 입장과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전유된다. 예컨대, 유기체 은유는 보수적 이해관계를 표현한 것이라면 원자론과 기계론적 사회 은유는 좌파적 성향을 지닌 것이라고 한다(대니얼 리그니, 2018: 367).

은유는 본래 역설적(paradoxical)이다. 은유가 왜곡이 되는 강력한 통찰력을 낳을 수 있다. 은유를 통해 만들어진 보는 방식이 역시 보지 못하는 방식(a way of not seeing)이 되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이런 은유의 역설을 깨달으면 은유의 진정한 힘을 제대로 동원할 수 있다. 은유로서의 이론을 알면, 완벽하거나 다목적의 관점을 주는 단일의 이론이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래서 은유를 활용하는 기술을 익히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은유를 통해 신선한 보는 방식을 발견하고, 우리가 조직화하고 관리하려는 상황을 이해하고 형성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은유는 부분적이지만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의 틀을 구성한다. 은유의 흥미로운 측면 중 하나는 한 측면에 치우친 통찰(one-sided insight)을 낳는 경우가 흔하다는 점이다. 특정 해석을 부각(highlighting)하는 경우 이는 다른 요소들을 배경 역할(background role)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한계가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 다른 흥미로운 특징은 은유가 항상 왜곡을 낳는다는 사실에 있다. 은유가 구성적 거짓을 만들어내기 위한 이미지를 활용한다. ‘정부는 기업이다’라는 은유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다양한 경영활동을 하고 자본의 투입력과 영향력에 의존하는 행동 패턴을 전적으로 드러낸다고는 말할 수 없다. 기업처럼 행정수반이 회장이고 일선 관료가 종업원이라는 이미지와도 동떨어진 구성적 거짓이라는 말이다. 본질에서 정부는 기업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이라는 은유는 정부의 본질을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은유 활용에서 유의해야 한다. 은유에서의 배제의 논리를 따르다 보면, 자칫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하기 쉽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은유 활용 과정에서 언어의 작동양식의 한계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V. 결론

은유는 단지 수사적 효과를 내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사고와 삶을 실제로 지배한다. 우리가 은유의 의미와 기능을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각종 프레임과 은유가 경합하는 전장에서 살아남게 해줄 은유 리터러시(literacy)가 필요하다.

정부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진보와 보수의 개념 전쟁도 따지고 보면 각 진영 구성원의 머릿속에서 작동하는 은유 체계의 상이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불평등, 청년 문제, 비정규직 문제, 주택문제, 여성문제, 재난 문제, 교육 문제 등에 대한 진보와 보수의 논쟁에 어떤 은유가 깔려 있는지 분석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과제가 될 것이다. 풍부한 사례를 통해 진행되는 분석 결과는 한국인의 사고와 삶을 지배하는 은유들을 알고 그 의미와 기능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과학을 위한 변화는 과학 언어의 변화에서 시작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언어는 세계를 서로 다른 방식으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학의 이론이나 연구과제에 대한 탐색적 여정에서 은유 활용이 지금보다 더 심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세계의 인과구조를 이해시키기 위해 우리는 비 정의적 지시 확정의 방식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은유다. 즉 세계 속에서 어떤 현상의 필요충분조건, 기준, 절차가 명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을 때 현상의 본질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복합적인 관계 속성을 포착하여 이를 지시하는 용어를 도입하기 위한 적절한 지시 확정 메커니즘 구실을 하는 게 바로 은유라는 것이다(Boyd, 1979: 358).

은유는 새 이론용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학문 후속 세대에게 기존 용어를 소개할 때도 나타난다는 것은 쿤(Thomas S. Kuhn)의 주장이다(황희숙, 2004).

은유의 대상이 되는 행정 현상은 하나의 은유적 언어표현으로 대표될 수 없는 복합적인 또는

상충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정된 은유적 접근은 오히려 대상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비판은 은유의 특성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 부족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제 은유는 세계의 인과적, 설명적인 의미 있는 특징을 기술하기에 적절한 언어적 범주를 형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새로운 은유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개념 용법을 변경시키는 등의 과제를 수행할 때 행정학 연구의 차원은 높아질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민아, 장지호(2008).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 입지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1(2).
- 강성남(2016). 『행정이론: 맥락과 해석』, 에피스테메.
- 강성남(2018). 『정보사회와 행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구교준(2009). “아담 스미스와 지식경제, 그리고 정부의 역할: 작고 효율적인 정부에서 동정적인 (compassionate) 정부로”, 『정부학연구』 15(2),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그레이, 존 지음. 김경숙 옮김(1993).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서울: 친구미디어.
- 김민주(2016). “시민과 정부는 어떤 이미지로 존재하고 있는가?”, 『한국행정연구』 제15권 제3호.
- 김용규(2014). 『생각의 시대』, 살림.
- 김용규(2021). 『소크라테스 스타일』, 김영사.
- 김정수(2010). “감정의 재발견: 화성남 금성녀 은유로 해석한 정부-국민 간 소통과 갈등”,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김주식(2011). “은유의 이데올로기 분석”, 『언어과학연구』 5, 언어과학회.
- 김현효(2011). “은유와 사고: 정치적 은유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2-10. 한국산학기술학회.
- 대니얼 리그니 지음, 박형신 옮김(2018). 『은유로 사회 읽기』, 한울아카데미.
- 로비넷, 스콧 외 지음. 윤친규 옮김(2003). 『감성 마케팅: 평생 고객을 얻는 홀마크 전략』. 서울: 김앤북스.
- 머레이 노울즈, 로자먼드 문 지음, 김주식 옮김(2008). 『은유소개』, 한국문화사.
- 박영신(2014). “베버의 ‘최우리’”, 『사회이론』, (46). 한국사회이론학회.
- 수잔 티제, 로리 코헨, 질 머슨 지음, 신병현 옮김(2013). 『언어와 조직 이해』, 커뮤니케이션북스.
- 스튜어트 A. 카우프만 지음, 김희봉 옮김(2021). 『무질서가 만든 질서: 인류와 우주의 진화 코드』. 알에이치코리아.
- 우윤석(2008). “감성 지능적 정부의 개념화와 구현을 위한 모색: 미학적 유비추리와 도구적 활용을 중심으로”, 『행정논총』, 46(2)
- 윤건수(1992). “조직 은유의 변화를 통해 본 조직의 변동과정”, 『정부학연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 이대희(2007). 『감성정부』. 서울: 대영문화사.
- 이병주 외 2인(2007). “레이코프와 존슨의 은유 개념을 통한 프레임 분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39호. 한국언론정보학회.
- 이중범(1992). “은유와 정책: 대학의 과학기술 연구에 관한 정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 Discussion Paper.
- 이준형(1995). “정책분석에 있어서 은유의 활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5-1. 정책분석평가학회.
- 임혜원(2020). “정책과 은유: 신문 기사문에 나타난 부동산시장 은유”, 『인문학연구』 제42호, 경희대학교 인문학연구원.
- 장석주(2017). 『은유의 힘』, 다산책방.
- 조지 레이코프 지음, 유나영 옮김(2018).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진보와 보수, 문제는 프레임이다

』, 와이즈베리.

채경석(2003). “지방정부의 정책은유와 정책 대응”, 『지방정부연구』 7-2. 한국지방정부학회.

퍼즈, 앨런·바바라 퍼즈 지음. 이종인 옮김(2000). 『말을 듣지 않는 남자, 지도를 읽지 못하는 여자』. 서울: 가야넷.

황희숙(2004). “과학이론에서 은유의 역할”, 『철학연구』 65권, 철학연구회.

Black, Max(1955), “Metaphor” in M. Johnson(ed.) (1981). *Philosophical Perspectives on Metaphor*, Univ. of Minnesota Press.

Black, Max(1962). *Models and Metaphor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Brown, Richard Harvey(1977). *A Poetic for Sociolog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oyd, R.(1979), “Metaphor and Theory Change: What is ‘Metaphor’ a metaphor for?”, in A. Ortony(ed.)(1979), *Metaphor and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Greenspan, Patricia(2004). “Emotions, Rationality, and Mind/Body” In Robert C. Solomon (ed.). *Thinking about Feeling: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Hesse, Mary(1966). *Models and Analogies in Science*. Notre Dame: University of Notre Dame Press.

Kövecses, Zoltán(2003). *Metaphor and Emotion: Language, Culture, and Body in Human Feeli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Lakoff, G. & Johnson, M(1980). *Metaphors We Live By*. Chicago University Press.

Locke, J.(2017).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Platform.

Marcus, George E.(2002). *The Sentimental Citizen: Emotion in Democratic Politics*. University Park: Pennsylvania State Univ Press.

Morgan, Gareth(1980). “Paradigms, Metaphors, and Puzzle Solving in Organization Theory,”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25.

Morgan, Gareth(1986). *Images of Organization*, Sage Publishers.

Pondy, Louis R. Peter J. Frost, Gareth Morgan, Thomas C. Dandridge eds.(1983). *Organizational Symbolism*, Greenwich: JAI Press Inc.

Rigney, Daniel(2001). *The Metaphorical Society : An Invitation to Social Theory*.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Weisberg, Robert W(1993). *Creativity: Beyond the Myth of Genius*, New York: Freeman.

사회적 기업의 연원과 정치경제학적 의미 탐색: 근대시장 메커니즘의 이해를 중심으로*

문 병 기**

A Study on the Origin and Political-economic Implication of Social Enterprise:
Focused on the Modern Market Mechanism

MOON, BYUNG-GI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시장 vs. 사회 이분법적 사고의
극복 |
| II. 선행연구 고찰 | V. 근대시장 메커니즘 이후의 가능성 |
| III. 근대시장 메커니즘 이전의
사회적 경제 | VI. 정책제언 및 결론 |
| | 참고문헌 |

I. 서론

현재 국내에서 정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단체 구성원들은 사회적 경제를 사회복지 실천 또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의 진보 정책적 대안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실상 사회적 기업을 위시한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이념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업 주체들은 무 목적적 소비와 생산의 확대 및 다층적 격차의 확대에 요약되는 후기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경제주체로서의 의미가 훨씬 더 심대하다. 국내에서의 이러한 사회적 경제의 철학적·시대사적인 뿌리에 대한 오해가 사회적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다양한 사회적 경제의 이념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업 주체들에 대한 시행착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는 국민 일반이나 사회적 경제 진흥사업을 주도하는 주무 부처 담당자들의 판단과 시각이 사회적 경제의 정치·경제학적 맥락과 그 의미에 대한 잘못된 해석에 기초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정립되고 광범위하게 확산되지 못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소위 보수 진영에서는 사회적 경제가 반시장주의적 철학에 기초하고 있다거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 수단의 하나로만 인식함으로써 자유시장경제질서에 위협

* 이 논문은 2020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교수

적인 요소로 사회적 경제를 바라보고 있다. 반면, 소위 진보 진영에서는 사회적 경제를 기본적으로 전통 기업의 냄새를 완벽하게 털어내지 못한 회색 느낌¹⁾의 불완전한 개혁 수단 중의 하나라는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사회적 기업의 본질과 그 연원 및 그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명확히 드러나게 하는 것은 2007년경 사회적기업진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10여 년의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본원적 취지나 소기의 정책적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경제 개념의 연원과 본질을 고대 그리스철학에서부터 시작하여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근대 시민사회에서 수립되고 확산된 근대시장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사회적 경제 개념의 연원에 대한 탐구를 통해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철학적 기초를 드러냄으로써 현재까지 우리나라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부 주도적이고 편향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적 한계가 무엇 때문인지를 명시적으로 확인한다. 나아가 근대시장 메커니즘의 본질에 대한 천착과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 안에서 사회적 경제의 의미를 탐색함으로써 시장과 정부, 기업가와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치·경제학적 논리와 시각이 갖는 정당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데 본 연구의 후반부를 할애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회적 기업을 위시한 다양한 사회적 경제 주체들이 작금의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 실천 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정책대안을 넘어서, 후기 자본주의 경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통합과 국가의 장기적 발전의 초석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논리적·정책적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사회적 경제 개념의 연원 관련 선행연구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시한 다양한 대안적 경제주체들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나타났으며, 그 철학적·문화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은 단순히 학문적인 탐구를 넘어서서 현실 정책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007년경 사회적기업진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정부 주도적이고 목적 편향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적 한계에 기인한 정책 착오와 혼란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금까지 10여 년간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시한 다양한 대안적 경제주체들은 사회복지 실천 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하나의 정책대안 그 언저리의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오해와 편견이 단순히 예산 낭비나 정권마다 반복되는 정책적 착오의 하나쯤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만한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다. 즉, 갈수록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는 다층적 격차 심화 현상과 그에 따른 사회 구성원 간의 불신과 갈등, 분

1) 노동 그 자체 및 노동자와 대립적 위치에 있는 자본가나 사용자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도 함께 추구하는 것은, 실상은 사회적 목적 추구가 결국에는 영리 획득에 보탬이 된다는 계산을 저변 깊숙이 품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노동 그 자체 및 노동자에 옹호적인 입장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기업이나 기업가에 대한 이미지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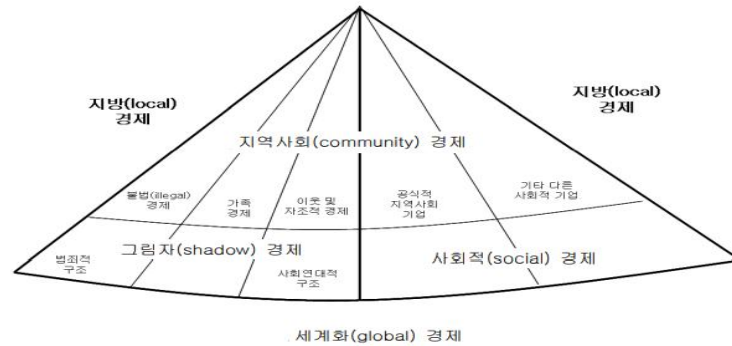
노와 절망이 한계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작금의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시한 다양한 대안적 경제주체들은 사회통합과 국가의 장기적 발전을 위한 돌파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이유로 사회적 경제에 대해 이러한 기대를 하게 되는지를 선행연구 및 현장 자료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의 출현에 대해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이 보인 초기²⁾적 태도는 사회적 경제의 기원을 1989년에 제정된 <유럽사회헌장>으로 보면서, 유럽연합 통합의 범위 안에 사회적 통합과 함께 경제적 통합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런 양면적 통합을 이룩하는 중심 도구로서 사회적 경제의 진흥에 역점을 두었다고 주장하는 형태이다(한상진, 2001; 김준환, 2004). 문제는 이들 연구가 소개하는 ‘양면적 통합’의 구체적 의미가 무엇이며, 그러한 통합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즉, 1989년 유럽집행위원회(EC; European Commission)가 사회경제국(social economy unit)을 만들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적 기업을 사회적 목적과 이윤을 ‘동시에 추구하는’(working for mission ‘and’ money) 조직으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막상 ‘and’ 즉, ‘동시에 추구한다’라는 말의 구체적 의미가 불분명하다. ‘사회적 목적’이라는 말과 ‘이윤 추구’의 의미가 불분명하며, 그들 간의 비중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좀 더 나아가면, 생산과 분배의 분리라는 주제와 연결될 수 있는데 과연 그런 것들을 고려한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말이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바라보는 시계가 다소 넓어지는데, 김경휘·반정호(2006)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은 1980-9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인 반면, 사회적 경제는 산업혁명 이후 200여 년 동안 사용한 개념으로서, 사회적 기업의 이론적 조직적 토양이 되어 왔다.”라며 엄형식(2005)의 주장을 재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막상 엄형식(2005)에는 이러한 주장의 직접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엄형식(2005; 81쪽)에 “본래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은 애초 프랑스, 벨기에를 중심으로 한 불어권 지역에서 사용하던 개념이었으나, 차츰 유럽 전역에서 유사한 조직 형태를 지칭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확대되었으며,”라는 서술이 있을 뿐이다. 더욱이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 경제는 지방경제(local economy)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사회경제(communitary economy)로서, ‘공식적인 제 3의 체계’에 위치하고 있다는 Galliano(2003)의 주장을 인용하고 있으나, 막상 사회와 지방 및 지역 사회(또는 공동체)의 ‘구분’에 대한 근거 제시가 부족하다. 나아가 사회와 시장(경제)의 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고민의 흔적도 찾아보기 어렵다.

2) 본 연구가 ‘초기’라고 표현한 것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포괄하여 다양한 대안적 경제주체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2000년을 전후한 시기를 말한다. 이 당시에는 이들을 묶어 사회적 경제라는 하나의 통합적 개념 속에서 조망하지 않았으며 각각의 사안별로 다루었다고 할 수 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대략 이 시기에 다량의 논문들이 생산되었는데, 서로가 서로에 의지해 상당히 획일적인 내용과 태도를 보인 시기이다. 그 이후 2007년 무렵부터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위시한 다양한 대안적 경제주체들이 사회적 경제의 틀 안에 포괄되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 발원지인 유럽의 상황과 전체적인 맥락을 탐구하기 시작한 일종의 도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본 연구에서는 ‘중기’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그림 1> 사회적 경제의 영역 구분

출처: 김경휘 · 반정호(2006)에서 재인용.

이러한 초창기를 지나 사회적 경제 개념의 발원에 대해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중기적 도약을 시도하는데, 먼저 장원봉(2007)은 드푸르니(Defourny)(1992)를 통해 사회적 경제의 이론적 궤적을 상호 연결된 1840년대 중반 이후 프랑스의 네 개의 사상적 흐름으로 해석한다. 즉, 첫째, 뻬케르(Constantin Pecqueur), 비달(François Vidal), 말롱(Benoît Malon)으로 대표되는 유토피아 사회주의 전통과 둘째, 샤를 뒤누와이에(Charles Dunoyer), 빠시(Frédéric Passy), 밀(John Stuart Mill) 등으로 요약되는 자유주의 전통, 셋째, 르 플레(Frédéric Le Play)의 사회적 경제조합으로 대표되는 사회기독교개혁주의 전통, 마지막으로 오토(Auguste Ott)의 사회적 경제조합, 샤를 지드(Charles Gide)와 님즈학파(Nîmes School)로 요약되는 연대주의 전통을 소개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해당 연구는 이들 학파가 어떠한 이념적·철학적·이론적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 이후 어떻게 현재의 사회적 경제에 연계되는지에 대한 심층적 고찰을 수반하지 않고 있다.

이어서 신명호(2009)는 프랑스에서 시작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유럽의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19세기 후반의 샤를 지드, 루이 블랑(Louis Blanc), 생 시몽(Saint Simon), 푸리에(Fourier) 등 사회주의자의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해당 연구는 19001년의 법 제정으로 사회적 협동조합 운동이 합법화되었으며 이는 중국에 1989년 유럽위원회의 전담부서 설치로 귀결됨을 강조한다. 그러나 여기서도 이들 사회주의자 이전의 철학적 뿌리가 되는 연원이나 그들의 사상적 고민에 대한 성찰이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송백석(2011)은 사회적 경제가 학술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이유와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푸르니의 2004년 연구를 간접 인용하고 있다. 즉, “1900년대 이후 유럽의 사회 경제적 변화의 소산이기 때문에 아직 오랜 기간을 거쳐 역사적으로 형성된 고정된 지시 대상을 갖는 개념은 아닌데, 각국의 다양한 경험에 기초해서 아홉 가지의 공통된 특성을 추출해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아홉 가지 공통 특성³⁾을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무슨 근거로 사회적 경제가 1900년대 이후 유럽의 사회 경제적 변화의 소산인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않고 있는 한계를 가

3) 송백석(2011)이 사회적 경제의 공통 특성으로서 소개한 EMES의 아홉 개 사회적 기업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 및 경영의 차원에서는 ① 지속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활동의 유지, ② 활동의 지속 및 종료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권을 의미하는 높은 자율성(autonomy)의 확보, ③ 조직의 재정적 생존 가능성이 구성원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잘 아는 높은 경제적 리스크 의식의 보유, ④ 최소한의 유급 직원 등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는 ⑤ 공동체의 이익 추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의 보유, ⑥ 지역사회 소수자나 약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집합적 특성(collective dimension)의 견지, ⑦ 자본의 소유 정도와 분리된 의사결정 권한의 보유, ⑧ 기업 활동에 참여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광범위한 참여의 확보, ⑨ 이윤 배분에 대한 제한 및 이윤극대화에 대한 금지 등이 확실하게 관찰될 수 있어야 한다(Defourny, 2001: 16-18; Defourny & Nyseens, 2006: 5-6).

진다.

이어서 김경희(2013)는 신명호(2009), 엄형식(2008)의 내용을 재인용 하면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1900년대 이후의 사회적 경제 관련 분과의 흐름에 주목할 뿐 그 이전 시기의 발자취와 뿌리를 찾으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더욱이 다분히 정부와의 정치적 행로에 편향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1920년대 1940년대 사이에는 각기 분업해오다가 협동조합은 시장경제의 한 부분으로 편입되고, 상호공제조합이나 민간단체는 국가의 사회 보험의 하부 인프라로 흡수되었으며, 1970년대에 이들 조직은 대정부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연대를 모색하면서 "사회적 경제 현장"을 채택하고 중국에는 1989년 유럽위원회의 사회적 경제 전담부서 신설 및 사회적 경제 개념 정의 채택으로 귀결되었음을 강조할 뿐이다. 결국 사회적 경제개념의 연원을 사를 지드로 보는 신명호(2009)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의 사회적 경제 개념의 발원지 규명에 대한 담보 상태는 이은선·이현지(2017)에 이르러 약간의 발전을 보인다. 즉, 해당 연구는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의 역사를 좀 더 조밀하게 추적해 가는 과정에서 1830년 프랑스의 경제학자 샤를 뒤노이에가 처음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를 사용했을 때, 그 의미는 대략 '시장경제의 부침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신명호 2014: 18) 정도의 의미로서, 오늘날 사회적 경제의 개념과 상당한 괴리가 있는 의미로 사용하였음을 밝혀냈다. 나아가, 이후 1851년 프랑스 사회학자 프레데릭 르(Frederic Le)에 의해 그 용어가 알려지게 되었으나, 막상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학계에서 논의된 것은 그 후 60여 년이나 지나 샤를 지드나 레온 왈라스(Leon Walras)에 의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모든 노력"(Gide, 1912)으로 정의하였음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사회적 경제의 개념은 '19세기에 고안된(invented)' 것이라고 사실상 합의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국내의 어떤 연구도 사회적 경제 개념의 기원과 관련하여 19세기 초반 이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를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사회적 경제 개념이 온전히 19세기 특정 사상가들의 창작품이라는 의미로, 검증이 요구된다.

다시 말해, 사회적 경제의 역사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한 결사체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심층적 고찰이 필요하다. 실제로 Campos & Avila(2012), Moulaert & Ailenei(2005) 등은 사회적 경제가 등장한 것은 중세 조합(associations)과 일찍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된 경험이 제도화 및 이론화된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하여 칼 폴라니(Karl Polanyi)는 그의 대표적 업적인 「거대한 전환」(1944)의 제4장에서 중세 유럽의 봉건제부터 공동체의 삶에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회가 존재해 왔다는 점을 논증한 바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본 연구가 근대시장 메커니즘과 사회적 경제의 기원, 그리고 사회적 경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를 천착하고 이들이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에 대해 탐구의 초점을 두려는 이유가 존재한다.

2. 근대시장 메커니즘과 사회적 경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관련 선행연구

기본적으로 시장 메커니즘이란 수요와 공급의 관계에서 상품의 가치가 결정되는 기구를 말한다. 시장을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가 교환되는 개념적 장으로 개념 정의하고, 가격의 형성과 교환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치가 실현된다고 보는 시각은 근대시대에 이르러 수립되었다고 본다. 이것이 소위 근대경제학의 핵심 주제이고, 그 대표자가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A. Smith)이다.

근대시장 메커니즘에는 경쟁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관철되는데, 경쟁이 있기에 분업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능률성과 가치의 실현, 나아가 시장의 균형을 통해 경제적 정의가 실현된다고 본다. 순

수하게 이기적인 동기로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각각의 사회 구성원들이 시장의 자율 조정 메커니즘을 통해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을 유지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 자본 축적이 이루어져 생산성이 향상되고 국가의 부가 증대하게 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역으로, 사회복지 서비스, 의료, 교육, 경쟁력이 떨어지는 한계노동 등 시장 메커니즘에 취약한 상품이나 서비스, 자연독점, 기간산업, 오보호 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정부 공권력의 직·간접적 개입을 통해 가격의 보호나 수요공급에 통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이 전통적 시각이다.

이러한 근대시장 메커니즘은 시장을 자연발생적인 것, 다시 말해, 사회와 시장을 동일시하는 시각이 내재하여 있다. 즉, 시장과 사회는 하나이며, 정부 또는 국가는 그 바깥에 존재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사회와 시장을 동일시하거나, 정부나 국가가 예외적으로만 시장에 개입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그대로 유지된 것은 아니다. 시장과 사회는 분리되어 있으며, 더 나아가 사회의 회복을 위해 시장을 사회와 대척적인 존재로 생각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의 개입 없이도 공동체를 통해 재분배를 실현할 수 있다면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생각이 그것이다.

대표적으로, 「거대한 전환」(1944) 제4장에 따르면, 중세유럽의 봉건제부터 책을 저술할 당시에 이르기까지 서(西)멜라네시아 제도, 서아프리카의 베르그다마족(Bergdama) 등 공동체의 삶을 통해 오히려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공동체와 부족에서 자원·상품·서비스의 교환과 생산이 더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회가 유지되고 있음을 칼 폴라니는 상당한 정성을 들여 논증하고 있다. 이를 통해 폴라니는 정부의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사회관계 속에서 공동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구성원으로서 결속력을 다지는 행위를 통해 재분배의 원리가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적어도 자율 조정 시장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회에서, 혹은 공동체 정신이 매우 강한 지역에서는 상호성(reciprocity)과 재분배(redistribution)의 이상적인 원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도 시장도 아닌 ‘사회’를 발견하고 사회를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라고 한다(이은선·이현지, 2017).

최소한 여기서 우리는 19세기 전-후반, 심지어 20세기 후반의 법제화 및 제도화를 사회적 경제의 기원으로 보는 시각은 매우 편협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사회적 경제는 19세기 이르러 만들어진(invented) 개념이 아니라 사회와 시장 간의 관계 안에 이미 오래전부터 내재해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한국어로 “묻어 들어가 있는” 또는 “내재 되어 있는”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embedded’라는 개념은 사회와 시장의 관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에 해제(introduction)를 쓴 프레드 블록(Fred Block)에 의하면, ‘묻어 들어가 있는’이라는 말은 시장이 고전과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종교·사회관계들에 경제가 ‘종속되어 있다’는 표현이라고 주장한다(폴라니, 2009: 39). 그러나 그 스스로 해제의 각주(10)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embedded’란 “석탄이 탄광의 암반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처럼 완전히 섞여 있거나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이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와 분리되어 존재하거나,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지배된다는 의미가 될 수 없다. 폴라니가 국가도 시장도 아닌 ‘사회’를 발견하고 사회를 재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지만, 시장(경제)이 사회에 종속되어 있다거나 사회의 재건을 위해 지배적 지위에 있는 시장을 굳이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이를 배척해야 한다고 확대해석할 이유는 특별히 없음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폴라니적 사고’를 가진 학자나 활동가들이 국내에 많다는 데 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은선·이현지(2017)의 해석, 즉, 폴라니가 국가와 사회에 대척적인 존재로서 시장을 바라보았다는 주장이 정확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과연 정말로 폴라니가 시장(경제)이 고

전적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종교·사회관계들에 종속되어 있다고 봤다면, 국가의 강제적 개입을 거부하지만, 시장도 거부하면서 국가 및 시장과 분리되고 대척적인 존재로서 ‘사회’를 발견하고 사회를 재건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시장(경제)이 정치·종교·사회관계들에 종속되어 있다면 그 말 자체로서 시장(경제)과 사회는 비록 중-주적 지위로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서로 분리되거나 배타적인 관계에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폴라니는 시장이 고전적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율적인 것이 아니며, 더 나아가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을 뿐임이 분명해 보인다. 굳이 추가적인 해석을 붙인다면, 폴라니가 사회의 발견과 재건을 주장하게 된 그 시장이란 근대 이후의 시민적 관계가 소거된 계약 중심의 자본주의적 시장일 뿐이다. 결국 이제부터의 중요 이슈는, 사회적 경제의 본질을 찾기 위한 여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회와 시장 간의 관계에 대한 탐구에서의 시장은 굳이 근대 이후의, 시민적 관계가 소거되고 계약이라는 제도적 장치로 모든 교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소위 자본주의적 시장으로만 상정해야 하는가? 라는 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하는 것이 된다.

둘째로, 이은선·이현지(2017)의 해석에 대한 또 다른 반론으로서, 폴라니가 논증한 사례, 즉, “글자로 된 기록과 정교한 행정조직의 도움 없이 상호성과 재분배의 원리만으로도 경제체제의 작동을 보장할 수 있는 이유”(폴라니, 2009: 189)로서, 책을 저술할 1944년 당시의 서(西)멜라네시아 제도, 서아프리카의 베르그다마족(Bergdama) 등, 공동체의 삶을 통해 자원·상품·서비스의 교환과 생산이 더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곳들의 예시는 문자 그대로 시장원리가 작동하지 않는 공동체와 부족들, 즉 모두 원시 공동체 사회이다. 글자(문자문화) 및 글자로 된 기록(즉, 성문법)과 정교한 행정조직(즉, 행정부 통치구조)의 도움 없이도 운용될 수 있는 매우 작고 단순한 사회에서만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회가 유지될 수 있음을 폴라니가 논증한 것일 뿐이라는 말이다.

결국, 사회 구성원의 숫자 자체가 적고, 그들 간 관계의 범위와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관계의 복잡성도 낮아서 직접적인 접촉과 분명한 상호 이해도 용이한 상황에서만 시장(경제) 없이 상호성과 재분배의 원리만으로도 자원·상품·서비스의 교환과 생산이 더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회의 유지가 가능한 것은 아닐까? 라는 의문을 품게 된다. 바로 이 점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근대사회로 진입하지 못한 그 중간단계(예를 들어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의 상황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게 된다. 이를 통해 원형적 의미의 시장(경제)를 상정하고 여기에서도 여전히 상호성과 재분배의 원리만으로도 자원·상품·서비스의 교환과 생산이 더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회의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초기 르네상스 시대가 중요한 이유는 중세의 공동체 일방주의(즉, 개인과 개인의 독자성에 대한 부정)가 극복된 다음에 독립되고 개인화된 인간들의 사회가 어디를 향해갈 수 있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폴라니는 자신의 논증에 대한 일반화를 시도했다. 「거대한 전환」 195~196쪽에서 “우리는 이러한 설명에서 동질적 사회와 계층화된 사회, 즉 사회가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사회들과 지배자 대 피지배자로 갈려있는 사회들 사이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구별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중략) 두 사회 안에서 개인들이 재분배에 참여하는 동기도 대단히 큰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경제체제를 조직하는 원리는 동일하다. 물론 이 원리가 실제로 작동하는 데에는 대단히 상이한 문화적 특징들이 함께 나타나며, 그것은 경제체제와 얽혀있는 아주 다양한 여러 인간관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주장했다. 관련하여 이은선·이현지(2017)이 각주 (7)에서 “폴라니는 이러한 현상을 ‘문어

들어있는(embedded)’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시장이 경제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종교·사회관계들에 종속되어 있다는 표현이다.”라고 기술한 것도 이 부분을 당연시하고 기술한 부연 설명으로 보인다.

문제는 폴라니의 이러한 일반화의 시도가 상당히 성급하고 영성하다는 것이다. 정말로 원시사회나 제도화된 사회에서나 결국 경제체제를 조직하는 원리가 동일하다면 자본주의 자유시장경제의 폐단을 너무 크게 부각할 것도 없다. 어차피 기본원리가 동일하다면, 그리고 문화적 특징이 충족되는 곳과 경제체제와 얽혀있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충족되기만 하면 자원·상품·서비스의 교환과 생산이 더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회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과연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이러한 이상적 상태가 유지되는 곳이 하나라도 있는가? 라고 자문하게 된다.

이는 결국, 경제체제를 조직하는 원리가 동일하더라도 자원·상품·서비스의 교환과 생산이 더 효율적이고 이상적인 사회가 유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사회들과 지배자 피지배자로 갈려있는 사회들 사이의 절대적으로 중요한 구별의 기준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들 두 사회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탐색하는 데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사회와 시장 간의 관계, 나아가서 사회적 경제의 본질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심층적인 탐구가 될 수 있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하게 된다.

3. 소 결론 및 분석의 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밝혀진 바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들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 상당한 정도의 노력과 분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외 대부분의 연구는 공통적으로 19세기 이전의 시기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추구한 노력이 있었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한 바가 없다. 즉, 사회적 경제 개념이 19세기 당시만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진보적 사상가들의 노력으로 ‘고안된(invented)’ 것인지, 또는 Campos(2012), Moulaert & Ailenei(2005)이 주장한 것처럼 중세 조합(associations)과 일찍이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된 경험의 제도화 및 이론화된 결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둘째, 소위 ‘폴라니적 사고’에 경도된 결과로서, 국내의 사회적 경제 관련 연구들은 사회와 시장은 서로 분리되고 상호 대척적인 존재라는 점을 당연시한다.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사회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은 시장을 부정하고 이윤 추구 등의 기업적 요소를 거부하는 것뿐이라는 획일적 사고가 여기에 존재한다. 이러한 획일화된 경향은 단순히 관련 학자들만의 이아가 아니며, 대다수의 사회적 경제계 활동가들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된 바 있다.⁴⁾

셋째, 사회적 경제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 바탕을 이루는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은 시장의 자율성에 대한 신화와 그에 대한 맹신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좁게 시장(경제)을 해석하였

4) 사회와 시장은 서로 분리되고 상호 대척적인 존재라는 점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경제 활동가들의 경향은 여러 번의 실증 연구 과정에서 확인되었다. 대표적으로, 2014년경 실증 연구 과정에서 한 사회적 경제 활동가는 “사회적 경제는 분명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것이지, 여기에 기업가와 일반인들이 개입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대립적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 2017년 무렵 실증 연구 과정에서 또 다른 활동가는 “사회적 기업 운영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하였으나, 이를 지역사회의 일반인 및 기업가들과 연계하면서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였다. 2019년경 사회적 경제 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면담에서 한 사회적 경제 활동가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활동에는 누구보다도 자신이 있다. 그러나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이윤을 창출하라는 것은 정말 어렵고 조만간 실현할 자신도 없다.”라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유사한 내용으로 사회와 시장, 즉,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이윤 창출 등 시장경제 활동은 서로 분리되고 상호 대척적이며, 조화할 수 없다는 생각에 경도된 활동가를 상당수 만날 수 있었다.

다. 즉, 사회적 경제에 대한 탐구에 있어서 근대 이후의, 시민적 관계가 소거되고 계약이라는 제도적 장치 중심으로 모든 교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소위 자본주의적 시장만이 상정됨으로써 시장과 사회의 새로운 관계 모색을 통해 대안적 경제주체를 추구하려는 담론이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를 자초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 결론에 따라 본 연구가 지금부터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소명해야 할 탐구의 주제와 그 분석적 틀은 다음과 같다. 첫째, 19세기 이전의 상황 속에서도 사회적 경제의 개념을 구상하고 그 이념을 추구한 노력이 있었는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 경제 개념이 19세기 당시만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진보적 사상가들의 노력으로 ‘고안된(invented)’ 것인지 또는 그 이전의 중세 조합(associations)과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이 제도화 및 이론화된 결과물로 볼 것인지 판가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경제를 자본주의와의 대립이나 노동자 평등권의 확보와 같은 진보적 이슈를 넘어서는 훨씬 근본적인 화두, 즉, 19세기 이후 또는 근현대라고 하는 특정 시대를 넘어서서 인간 삶의 의미를 정치·경제적 맥락 안에서 규정함에 있어서 사회적 경제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가를 밝히는 문제이다. 근대사회로 진입하기 이전 단계, 예를 들어 중세 시대나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 해당하는 시기의 사회적 경제 활동에 대한 통찰이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사회와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은 시장을 부정하고 기업적 요소를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님을 입증하는 분석이 필요하다. 시장과 사회가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있기는 한 것인지, 공존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띠며 어떻게 상호 작용할 수 있는 것인지, 시민적 관계가 소거되고 계약이라는 제도적 장치 중심으로 모든 교환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가 배태하고 있는 문제의 더 근본적인 원인인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찰이 여기에 해당한다.

셋째, 근대 이후의 자본주의 시장만이 시장과 사회의 균형 및 사회적 경제의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상정되어야 할 시장의 모델이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 찾기가 필요하다. 좀 더 원형적 의미의 시장(경제)을 상정하고 여기에서도 여전히 상호성과 재분배의 원리만으로도 자원·상품·서비스의 교환과 생산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사회의 유지가 가능한지에 대한 규명이 여기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사회들과 지배자 피지배자로 갈려있는 사회들 사이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이것이 어디에서 유래하였는가? 중세의 공동체 일방주의(즉, 개인이나 개인의 독자성에 대한 부정)가 극복된 다음에 독립되고 개인화된 인간들의 사회가 어디를 향해갈 수 있는가? 라는 의문에 대한 응답이다. 지금부터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 틀에 의해 세 가지 연구 주제를 순서대로 다루고자 한다.

Ⅲ. 근대시장 메커니즘 이전의 사회적 경제

1. 그리스 고대 철학

그리스 고대 철학, 특히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서 이미 사회적 경제에서 추구하는 이념에 대한 통찰이 있었다. 개인이 사회적 삶을 이어감에 있어서 타인의 존재가 필요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비로소 그의 삶이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맥락이 그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신의 윤리학에서, 모든 개인은 부유하든 가난하든 행복한 삶(good life)을 추구하지만,

근본적으로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자기충족적(self-sufficient)이지 못하므로 가진 것을 함께 나눌 친구가 필요함을 갈파하였다. 그러나 우정은 강제할 수 없으며(non-enforceable), 따라서 개인의 행복한 삶 자체도 친구가 배신할 위험에 대해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Brown, 2009: 1169b 176; Nussbaum, 1986).

이러한 논리가 바로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와 나눔이 사회적 경제조직의 경영에 있어서 가장 강조해야 할 근본적 이유이다. 성공적인 사회적 기업가나 활동가들은 배신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무릅쓸 용기를 가져야 한다. 배신의 위험을 극복하고 먼저 신뢰와 나눔을 실천한 다음에, 마침내 상당한 경영 성과와 사회적 기업의 도약을 목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논리 때문이다. 이를 Bruni & Tufano(2017)는 실증분석을 통해 이러한 고대 철학의 논리가 현시대에도 존재함을 확인하고, 이를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위험감수성(intentional vulnerability)이라고 표현하였다. 의도적인 위험감수성의 실천은 내부의 노동자나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자신들이 받은 선제적이고 절대적인 선의에 부응하고 보답해야 한다는 내적 동기를 생성하기 때문이다.

2. 중세 및 르네상스 시대

중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의 발아적 모습은 수도원 경제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베네딕도수도회나 프란체스코수도회에서 강조하던 노동과 영성 생활의 균형과 원형적 공산 경제를 말한다. 먼저, 베네딕도수도회의 좌우명은 ‘기도하고 일하라’이다. 이를 통해, 그 이전까지 노동은 노예들만의 영역으로 생각했던 관습을 깨고 자유인도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뿐만 아니라 숭고하기까지 하다는 인식적 전환을 끌어냈다. 더욱이 프란체스코수도회는 기존의 고립된 세계 속에 머무는 한계를 넘어서 민중과 삶을 함께하면서 봉사와 교육활동을 펼쳐나가는 수도회라는 새로운 전통을 만들었다. 이러한 중세시대 수도원 경제의 진보적 성향은 단순히 종교적인 측면에 그치지 않고 유럽 사회 전반의 의식개혁을 가져왔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일반적으로 선행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은 단순히 가진 재산 일부를 나누어주는 행위에 그치더라도 충분한 줄로 알고 있지만, 실은 삶 자체, 특히, 노동 현장에서 함께 땀 흘려 일하는 것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경제의 핵심을 일찌감치 강조하였기 때문이다(Bruni, 2016).

나아가,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도 사회적 경제의 이상은 살아있었다. 브루니(2020)에 의하면, 이탈리아 시에나 시의 산타 마리아 델라 스칼라 병원 프레스코화에 남아있는 <좋은 정부의 우화(allegory of good government)>는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 강조하던 시장과 사회의 조화를 보여준다. 해당 프레스코화는 15세기 로렌체티(Ambrogio Lorenzetti)가 그린 것으로서, 깔끔히 정돈되고 융성하는 도시에서 시민들이 자유와 함께 공존과 공유를 누리는 이상적 사회에 대한 희망을 잘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그림은 당시 초기 르네상스 시대에 잠시나마 부풀어 올랐던 인간과 사회, 그리고 시장의 공존에 대한 희망을 압축적으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중세까지의 무지와 속박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존재로서의 개인이라는 의미의 시민에 대한 희망에 부풀었던 이러한 초기 르네상스 시기를 특별히 “시민 인본주의(umanesimo civile)”라고 한다.

3. 근대 시민사회

이렇게 고대로부터 중세를 거쳐 초기 르네상스 시대까지도 면면히 이어오던 시장과 사회의 조

화에 대한 희망과 노력은 근대에 접어들면서 포기과 대안 찾기로 넘어갔다. 16세기와 17세기를 거치면서 초기 르네상스 시대까지 가지고 있었던 인간과 사회, 그리고 시장의 공존에 대한 희망은 유럽의 혼란과 갈등 속에서 점차 잊히게 된 것이다. 마키아벨리(Niccolò Machiavelli)나 홉스(Thomas Hobbes)의 사상이 보여주는 절대권력에 대한 요청은 바로 이러한 좌절과 포기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절대적 힘과 비인격적 제도로 무장한 절대적 존재로서의 국가를 통해 개인과 사회, 그리고 시장의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이다. 질서와 안정을 위해 독립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존재로서 희망을 걸었던 개인과 사회, 그리고 시장의 자율성과 선의를 ‘스스로’ 포기하는 비극적인 사회 설계이다. 이러한 좌절과 포기에서 기초한 비인격적 제도와 체계 위주의 사회 운영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이 17세기 이후 현시대에 이르기까지, 심지어는 최근에 사회적 경제를 주장하는 학자와 활동가 사이에도 그대로 세습되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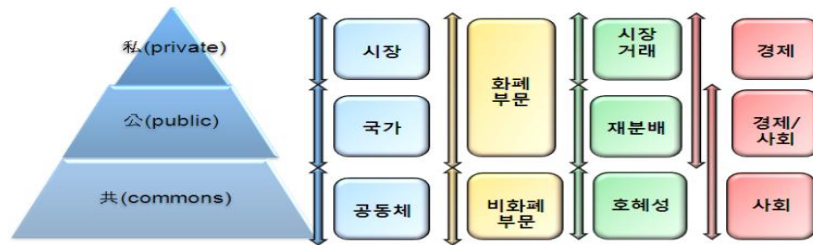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실 사회적 경제에 대한 희망과 노력은 근대시대에도 여전히 살아 있었다. 18세기 무렵의 이탈리아 계몽주의와 나폴리학파의 대표자인 안토니오 제노베시(Antonio Genovesi)의 사상과 노력이 그것이다. Bruni & Zamagni(2007)에 의하면, 제노베시는 자유방임 시장경제의 대표자로 인식되는 애덤 스미스(A. Smith)보다 10여 년 앞서서 사회적 경제의 본질에 대해 설파하였다. 제노베시는 “시민화(civilization)”, 즉, 시민 생활의 영위와 덕성의 발휘라는 차원에서 경제(또는 상업활동)를 바라보았으며, 시민화의 필수조건으로 부의 평등한 분배를 강조하였다.

제노베시는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표현한 ‘목적들의 자연발생(heterogenesis of ends)’은 오직 시민 생활 안에서만이 제도와 법, 교육에 힘입어 사적 이익이 공동선, 즉, 공적 행복(public happiness)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제노베시는 재화의 생산 및 소유 자체가 행복을 가져다주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이기적 경제행위가 공동선(common good)으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시민사회 내부의 장치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신의 섭리로까지 확대하여 해석되는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을 인정하면서도, 공적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시민적 덕성에 기초한 ‘보이는 구조(visible fabric)’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Bruni & Zamagni, 2007). 그러한 시민적 덕성에 기초한 보이는 구조가 바로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사회적 경제조직인 것이다.

IV. 시장 vs. 사회 이분법적 사고의 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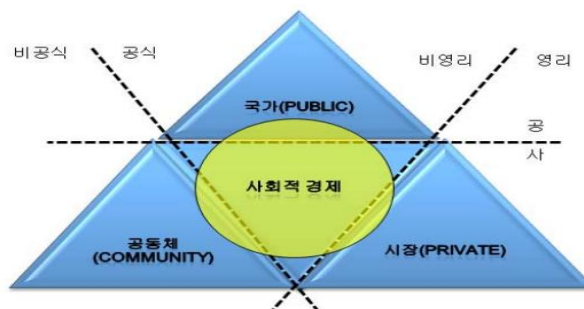
1. 이분법적 사고

김영철(2011)은 [그림 2] 및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폴라니의 주장, 즉 “실체적 경제는 시장 영역과 국가 영역, 공동체 영역의 세 개의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과 국가는 ‘사회적인 것’의 실체가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회를 시장에서부터 분리하거나, 혹은 국가를 앞세워 사회를 억압하는 것은 모두 인간의 자유와 이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폴라니, 2009: 김영철(2011)에서 재인용)라는 부분을 인용하면서, 결국 공동체(사회)와 시장(경제)을 서로 분리하고, 사회를 위해 억압해야 할 대척적인 존재로 시장을 간주한다.



<그림 2> 폴라니의 실체적 경제의 구조

출처: 김영철(2011), 29쪽에서 재인용.



<그림 3> 중간영역으로서 사회적 경제

출처: 김영철(2011), 34쪽에서 재인용.

김영철(2011)은 “‘사회적인 것’이 논자에 따라 다양하게 해석되고 또한 통일적으로 재해석되지만, 이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은 ‘사회적인 것’이 시장과 국가의 바깥에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 결과, 사회적 경제 조직의 목적은 이윤 추구가 아니라 구성원이나 지역사회의 서비스에 있다.”라는 결론에 이름으로써 현재 우리나라 다수의 사회적 경제 관련 학자나 활동가들의 고정관념이 성립되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사회적 경제의 영역을 중앙정부에 대응하는 지리적 실체로서의 ‘지역’(local)의 관계에서 찾으려고 한다. 즉, 폴라니의 ‘사회적인 것’이 시장과 국가의 바깥에 존재한다는 주장과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2005; 2006)의 “네이션(nation)”이 근대 국가의 틀 속에서 성립한다는 점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러한 주장들을 취합하는 방법으로, 유럽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경제의 실천적 양태로서, 사회적 경제가 지역에 기반을 두는 활동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에 주목한 것이다. 이미 본 연구가 각주(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EMES가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기준의 첫 번째에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목적’을 명시하고 있음을 부각한다.

그런데, 이러한 돌파구가 진정한 답이 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근대시대 이후 꾸준히 나타난 국가의 집중적 경향으로 인해 중앙정부의 영향력은 계속 증가하였다. 따라서 국가에 대응하는 정치·경제적 실체로서 지역이 독자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담론이 되기 때문이다.

2. 이분법적 사고의 극복

그렇다면 결국 문제의 타개책은 오히려 가라타니의 “호수(互酬: reciprocation)”에서 찾는 것이 옳다. <표 1>에서 보는 A의 호수, 즉 ‘상호적 보상의 주고받음’은 증여와 답례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환 양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발달한 이후의 상태에서는 희박해졌다. 그러나 진정한 공동체, 예컨대 가족 속에는 현재까지도 확연하게 존재하는 교환 양식이다. 부모가 자녀를 보살피는 것은 무상의 선물이며, 그 경우 자녀가 커서 부모에게 부채감을 갖고 그에 보답하려는 행위를 하게 되는 일종의 교환이다. 이를 가라타니는 “호수란 교환처럼 보이지 않는 교환”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가라타니, 2006: 35).

<표 1>에서 보는 B의 “재분배”란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가치의 박탈과 그 이후 이어지는 재분배를 의미하는데 이것도 엄연한 교환이라고 가라타니는 말한다. 한편, C의 “상품교환”이란 당사자의 상호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교환을 말하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교환으로 화폐와 상품이 상호 거래되는 것을 의미한다(가라타니, 2006).

<표 1> 가라타니의 교환 양식 유형

B. 재분배	A. 호수(互酬)
C. 상품교환	X

출처: 김영철(2011), 31쪽에서 재인용.

나아가, 네 개의 시대 주체를 정리한 <표 2>에서 보는 A의 “네이션”을 가라타니(2006)와 김영철(2011)은 상상의 공동체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표 1>과 <표 2>에서 “X”로 표시된 “어소시에이션(association)” 영역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면서도, 막상 두 연구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그러면서 어소시에이션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한 자본주의 사회의 비판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주장할 뿐이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현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사회적 경제라는 대안적 경제와 시대 주체의 필요성을 갈망하면서도 막상 그것의 현실적 존재 가능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표 2> 가라타니의 시대적 주체 유형

B. 국가	A. 네이션
C. 자본주의 시장	X

출처: 김영철(2011), 32쪽에서 재구성.

그런데, 가라타니와 김영철이 세 가지 유형의 교환 양식 및 시대 주체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간과한 것이 있다. 바로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이다. 즉, 가라타니는 호수, 재분배, 상품교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형태의 교환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당사자(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든)의 자발적인 합의에 기초한 것임을 강조하였는데, 교환의 대상이 호수의 선물이나 재분배의 조세가 아니고

자본주의 시장의 상품임을 강조함으로써 이상의 세 가지 교환 양식이 충분히 구분된다고 본 듯하다.

그러나 가장 핵심은 “호수”, 즉 선물의 교환과 대비되는 재분배 및 상품교환의 본질적 차이를 찾는 것이다. 이것이 단순히 국가와 시장, 사회와 같은 기존의 개념적 구분을 뛰어넘어 ‘사회적 경제’라는 복합적 개념의 본질을 명철하게 규정하는 관건이기 때문이다. 사회적 경제의 본질을 규명하고 그 본연의 역할을 정립하는 데에는 적당히 “변형된 채 남아있다.”(김영철, 2011: 31)라는 정도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선행하는 제3장에서 이미 설명한 바와 같이, 고대에서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근대로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고 강제와 종속의 테두리 안에 갇혀있던 개인이 독립되어 나오면서 기존의 압제적 가치의 이전은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가라타니가 “X”를 어소시에이션이라고 명명하면서도 스스로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라고 포기한 자본주의 시장-네이션-국가의 3위 일체의 결합, 즉 사회적 경제의 본질 규명은 바로 근대 18세기 이후 본격적으로 나타난 계약과 체제로 압축되는 제도화로부터의 탈피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다.

여기서 우리는 브루니(2020)의 주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가라타니가 “호수(互惠: reciprocity)”라고 표현한 ‘상호적 보상의 주고받음’ 또는 선물의 증여와 답례라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교환 양식이 갑자기 근대를 지나 현대로 오면서 권력에 기초한 징세와 재분배 및 상품의 교환으로 “변형”된 것이 아니라 계약과 제도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가 비인격화되면서 사회구성원의 인식 속에서 그 의미가 희석되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시대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교환의 주된 양식으로 호수 또는 상호적 보상의 주고받음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를 당연시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가라타니의 “네이션”을 회복하거나, 또는 “어소시에이션”을 현실 속에서 구현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브루니(2020)의 이러한 주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공동체에 대한 개념 정립이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공동체라고 번역하는 영어의 ‘community’란 라틴어 ‘communitas’에서 유래된 개념이다. 라틴어 ‘communitas’는 다시 ‘communis’에서 유래한 말로서, ‘communis’는 ‘cum’ + ‘munus(또는 munere)’로 분해될 수 있다. 여기서 ‘cum’은 ‘함께’ 또는 ‘서로’라는 뜻이고, ‘munus’는 ‘대가를 바라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 또는 ‘선물’ 및 이러한 일을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상의 라틴어 어원을 종합하면 ‘communitas’란 선물, 즉 무상의 모든 나눔을 서로 실행할 수 있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성을 가진 사람들의 생활공동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공동체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근대를 지나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당연시하면서 희미해진 사회구성원 간의 인격적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나아가 계약과 제도 등 비인격적 장치를 통해 사회가 운영되는 경향을 돌려 호수 또는 상호적 보상의 주고받음을 중심으로 교환 양식을 재정립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회적 경제가 현시대에서 실제로 존재하고 살아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다.

V. 근대시장 메커니즘 이후의 가능성

폴라니와 그의 후계자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사회와 구분되며 대척적인 존재로서의 시장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대 18세기 이후에 본격화된 철저한 자본주의적인 시장이다. 그런데 자본주의 시장이 사회와 대립적인 이유는 시장의 본질적인 특성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근대 이후 당연히

되고 있는 계약과 제도 등 비인격적 장치를 통해 사회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이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자본주의 시장이 경쟁과 생존 및 이윤의 창출을 위해 극대화한 것뿐이다. 따라서 우리가 시장과 사회의 조화, 즉,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주의 시장 그 자체를 배척하기보다는, 사회가 구성원 간의 인격적 관계를 무시하고 계약과 제도 등 비인격적 장치만으로서도 잘 운영될 수 있다는 환상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시작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현상들은 다음과 같다.

1. 관계재 중심의 시장

새로운 시장에서 교환의 주요 대상은 재화나 상품이 아니라 관계재(relational goods)이다. 관계재는 상품과 구분되며, 소비하는 행위 그 자체 및 소비자의 정서나 동기에도 구분되는 독자적인 현실이다(브루니, 2020: 214). 관계재를 중시하는 대표적 학자로서 베네데토 구이(Benedetto Gui)는 2005년의 저술에서 관계재를 “만남(encounter)”이라고 불렀다. 그는 “판매자와 잠재적인 구매자, 의사와 환자, 두 동료 사이, 심지어는 같은 가게의 두 고객 사이”에서 전통적인 결과물(예를 들어, 거래를 통한 생산적인 업무수행 또는 서비스 제공 등)의 범주를 넘어서는, 관계를 토대로 하는 다른 유형의 무형적 산출물이 생산되는데, 이것이 바로 관계재라고 주장했다.

관계재는 몇 가지 중요한 속성을 갖는다. 첫째는 정체성으로, 교환 당사자 간에 익명성이 존재한다면 그 재화는 관계재가 아니다. 둘째는 상호성으로, 교환 당사자 서로 간의 감정과 인식이 명확하게 존재해야 한다. 셋째는 동시성으로, 관계재는 그 생산과 소비활동이 동시에 일어난다. 넷째는 동기부여로서, 관계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며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다섯째는 발현적 요소로서, 교환의 애초 주체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관계 안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관계재이다. 여섯째는 무상성으로, 관계재는 이해타산을 넘어서서 그 자체로서 좋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곱째, 관계재는 재화이지만 상품은 아니다. 관계재는 필요성을 충족시키므로 가치를 지니지만, 무상성 때문에 시장가격이 매겨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재에는 항상 기회비용이 따른다.

관계재를 ‘주요 관계재(primary relational goods)’와 ‘비주요(또는 부차적) 관계재(non-primary relational goods)’로 나누어 생각할 수도 있다. 비주요 관계재는 상호작용과 만남에 의해 형성된 관계재에 다른 구성요소가 부차적으로 합산된 결과로 형성되는데, 관계성의 부재로 인해 상품의 가치가 무효화되지 않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친절하지 않은 이발사와 손님 사이에 관계재가 형성되지는 않더라도 이발이라는 서비스는 받을 수 있다.

한편, 유사(또는 허위) 관계재(pseudo-relational goods)도 있다. 오늘날 기술의 발달 때문에 관계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더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경우에서 발생한다. 텔레비전과 인터넷은 유사(또는 허위) 관계재를 판매하는 대표적인 시장의 산물이다. 그것들은 타인들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원에서 독서나 산책을 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는다. 매우 낮은 가격과 위험 부담률에 기초한 TV 프로그램이나 가상의 친구 관계는 클릭 몇 번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로 인해 우정이나 충실한 결혼생활을 위한 투자는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관계가 붕괴될 위험성은 무한히 커진다. 유사(또는 허위) 관계재에 기초한 상호작용에는 육체와 혈연관계의 고통스러운 취약성, 즉 ‘공감과 상처’라는 관계재의 핵심 요소가 빠져있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재를 생산하고 공급하는 주요 경제주체로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을 활용하여야 한다. 단순히 사회에 도움이 되는 상품과 재화를 생산

하는 착한 기업 정도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생각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장에서 생산되고 교환되는 주요 재화가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사회구성원의 인식 자체가 변화되어야만 사회적 경제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2. 가치 일치 중심의 기업가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은 사회혁신조직(social innovation organization)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혁신조직 또는 사회적 경제조직을 이끄는 지도자 또는 경영진의 리더십이 어떤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은 혁신성, 진취성, 사회적 가치 및 목적 추구와 같은 개인 차원의 요소에 더하여 신뢰, 공동체 지향성, 장기적 역량 등의 거시적·장기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의 특징적 요소들을 열거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 지도자의 리더십은 이러한 사회혁신조직 리더십의 일반적인 구성요소에 더하여 근본적으로 차별화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 첫째가 일치(unity)의 정신이다. 관련하여, Bruni(2002)는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 지도자 리더십의 본질은 단순히 혁신적인 개별 기업가의 진취성이나 사회적 가치 추구로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즉,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서의 공동체와 자아적 각성에 기반을 둔 타인의 독자성을 그대로 인정하면서도 합의된 목적의 추구하고 조화를 이루는, 성숙한 인격체와 인격체가 서로 마주하면서 조금씩 빚어내는 철저히 관계 지향적인 일치의 과정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 지도자 리더십의 핵심이다(문병기, 2015).

이를 정대용·김태현(2013)은 가치 일치(value congruence)로 표현하고 있다. 사회복지조직 구성원 간 가치 인식의 일치도가 높아질수록 상호협조적 행동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또한 허봉선(2015)은 사회적 기업 구성원 간의 호혜적 관계가 지속되면서 사랑의 감정이나 타인에 대한 동정·배려와 같은 도덕적 행위가 자연스럽게 전달되고, 신뢰와 공동체적 결속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어짐을 부각시켰다. 사회적 경제조직 구성원들의 내면적 가치체계 간의 본질적 일치가 있어야만 사회적 가치 창출이 실현될 수 있음을 포착한 것이다.

둘째는 일관성(consistency) 또는 지속성(persistency)이다. 즉,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 지도자의 활동 과정을 시간순으로 따라가며 분석해보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 지도자들은 상당히 오랫동안 사회적 경제의 본질과 관련 조직 지도자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닦쳐오는 여러 가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면서 마침내 확산과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들 수 있었다는 것이다(문병기, 2015).

여러 경험적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 지도자로서 가시적인 성공을 거두는 데 평균 10년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소요됨에 주목하여야 한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 지도자 개인이 아무리 강력한 의지와 실천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직 내적으로는 직원과 소비자 간의 일치, 그리고 조직 외적으로는 지역주민과 자치단체 간에 일치를 이루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하며, 그 기간 내내 일관성과 지속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마침내 조직 내·외적인 일치가 실현되고 지역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심과 해당 사회적 경제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

기 위한 생태계로부터의 꾸준하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3. 식물형 네트워크 중심의 조직생태계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의 지역공동체에 대한 강력한 소속감은 보편적 개방성과 우리 의식(sense of we)으로 나타난다(Bruni, 2002; 문병기, 2016). 이는 다시 말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즉 생태계 안에 존재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생태계(ecological system)란 살아있는 유기체와 그것이 속한 환경의 무생물 요소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말하는데, 결국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의 생태계란 그들이 유기적 환경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이해당사자와의 네트워크, 즉 수많은 연결고리로 구성된 관계의 그물망을 의미한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에게 생태계가 필요한 이유는 그러한 조직들은 그들이 속한 공동체와의 일체감과 목표의 공유를 통해 공동체의 내생적 발전(endogenous development)을 이끄는 핵심적 추진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은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사회 혁신 조직과의 상호 교환·물적 자원 교류·시장 판로의 연계·공동사업 운영 등의 가치사슬 구조를 통해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 및 소비하고, 사회 혁신 조직과의 협의·정보 교환·교육 연계·인적 자원 교류 등을 통해 진행되는 공식적·비공식적 협력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에게 생태계가 중요한 이유는 특별히 사회적 경제조직의 강력한 회복 능력(resilience)에 있다. 회복 능력이란 손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bounce back) 능력을 말하는데, 더 나아가 새로운 위기에도 불구하고 적응과 성장을 지속하는(bounce forward) 능력을 포함한다. 그런데 모든 생태계가 항상 그 구성원의 회복 능력을 강화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의 생태계, 특히 중앙집권적인 관치형 생태계는 소위 ‘머리’에 해당하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그들의 지휘를 받는 중간조직에 거의 절대적으로 의존한다.

그러나 Bruni(2016)에 따르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의 강한 생명력은 사회적 경제조직의 본질이 마치 ‘식물’과 같기 때문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잘 발달된 사회적 경제조직은 ‘식물’과 같아서, 조직의 모든 지체를 통해 생태계와 교호적으로 활동하므로 ‘고등동물’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관치형 생태계와 달리 중심부에 크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식물형’ 사회적 경제조직의 네트워크는 몸의 모든 지체를 통해 환경과 교감하며, 매우 현장 적응적인 대응과 신속한 회복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지역공동체와 일체감을 느끼기 쉽다. 다시 말해, 굳이 정부나 ‘중앙’에 대한 의존성을 보이며 지시를 기다리기보다는, 전 방위적이고 자발적인 연계와 혁신 활동을 통해 공동체의 내생적 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면 무엇이든 가리지 않는 보편성과 포용성을 보여준다.

실지로 현장에서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다수의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의 여러 조직이 소속된 네트워크들은 이러한 관치형 생태계 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문병기, 2020). 따라서 지금까지의 중앙의존성과 동물형 네트워크 편향성에서 벗어나서 식물형 조직과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 그렇게만 된다면, 공동체와의 일체감과 목표의 공유를 통해 공동체의 내생적 발전을 이끄는 핵심적 경제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VI. 정책제언 및 결론

본 연구에서 발견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경제 개념은 19세기 전반의 몇몇 진보적 철학자들에 의해 고안된(invented) 것이 아니다. 나아가 중세 조합(associations)과 19세기 공상적 사회주의자들에 의해 주장된 경험이 제도화 및 이론화된 결과로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 갑자기 등장한 것도 아니다. 사회적 경제의 뿌리는 고대 그리스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중세 수도원 경제와 15세기 초기 르네상스를 거쳐 근대 18세기 이탈리아의 시민 경제학에 닿아있다.

둘째, 사회와 시장은 상호 분리할 수 있고 대척적인 존재가 아니다. 시장(경제)은 정치·종교·사회 관계들에 종속된 것이 아니며, 석탄이 탄광의 암반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것처럼(embedded) 완전히 섞여 있거나 혼연일체가 되어 있다. 따라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이윤 창출 등 시장경제 활동을 포기하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며, 둘의 상호 연계성을 인정하고 조화를 모색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의 본질에 충실한 해석이다.

셋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데는, 자본 및 이윤 추구 그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와 그 긍정적 가능성을 무시하고 계약 등 철저히 비인간화되고 공식화된 제도와 체계만으로 사회와 시장을 운영하려는 근대 이후의 고정관념과 경향 때문이다.

넷째, 시장에서는 재화나 상품만이 교환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은 오해이다. 시장에는 다양한 관계재가 있으며, 이러한 관계재의 적극적 교환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은 익명성 뒤에 숨기보다는 상호성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인간적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과 사회 간의 이분법적 사고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시장과 사회를 대척적인 것으로 보는 지금까지의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사회적 가치의 증진을 위해 기업을, 기업가를, 이윤의 추구를 죄악시하거나 양자의 균형적 추구를 불가능한 것이라고 치부한 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시장과 경제활동에 있어서 사회구성원 간의 관계와 그 긍정적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계약 등 철저히 비인간화되고 공식화된 제도와 체계만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을 운영하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근대 이후 포기해 버린 사회구성원 간의 인간적 관계의 회복, 즉, ‘공감과 상처의 극복’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여러 조직의 최대 생산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셋째, 의도적 위험감수성 등, 진정한 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함양하는 데 힘써야 한다. 열정에 가득 찬 사회적 기업가야말로 조직 운영뿐 아니라 네트워크 생태계 활동에 이르는 거의 모든 측면에서 회전축 역할(pivotal role)을 하는 사회적 경제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의 원리와 이상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견실하게 경영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사회적 경제조직 경영진들에 대한 신규 및 재교육 프로그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넷째, 시장에서의 활동이나 정부에 대응하는 자세에서도 비인간화되고 공식화된 제도 의존적인 행태를 버릴 필요가 있다. 나아가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인정하되 그에 종속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한국의 경우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래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도 거의 전방위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회적 경제 진흥사업들은 국내에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는 데 이바지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진정한 착근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 주목하여야 한다. 이제는 그러한 공식화된 제도 의존적인 행태의 탈피를 심각하게 모색할 때가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복지 실천 내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의 하나로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분야 여러 조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원인을 천착하였다. 그리고 그 근본적 원인이 폴라니와 그의 후계자들이 사회와 구분되며 대척적인 존재로서의 시장을 바라보기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이러한 오해는 단순한 학문적 오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사회적 가치의 증진을 위해 기업과 기업가, 나아가 이윤의 추구를 불온시하거나 양자의 균형적 추구를 불가능한 것이라고 치부한 후 포기하는 심각한 정책적 오류를 초래하였음을 본 연구는 규명하였다. 이제 한국의 사회적 경제계는 완전히 새롭게 출발하여야 한다. 시장과 사회의 조화,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관련 조직들은 인간적 관계의 회복에 집중하여야 한다. 즉, 무 목적적 소비와 생산의 확대 및 다층적 격차의 확대로 요약되는 후기 자본주의 시장의 대안적 경제주체로서 주도적 역할을 다하기 위해 관계제의 생산과 보급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 참고문헌

- 가라타니 고진(柄谷行人)(2005). 『트랜스크리티프: 칸트와 마르크스를 넘어서』, 송태욱(역). 서울: 한길사.
- _____ (2006). 『세계공화국으로』, 조영일(역). 서울: 도서출판 b.
- 김경휘·반정호(2006). “한국 상황에서의 사회적 기업의 개념과 유형에 관한 소고”. 『노동정책연구』. 6(4): 31-54.
- 김경희(2013). “사회적 경제를 통한 지역혁신의 가능성과 한계: 마을기업과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공사회연구』. 3(2): 126-150.
- 김영철(2011). “사회적 경제와 지역의 내발적 발전”. 『지역사회연구』. 19(2): 25-49.
- 김준환(2004).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기업에 관한 고찰”. 『한국사회』. 5: 89-120.
- 문병기(2015). “사회적 경제조직 최고경영자의 역할 분석”.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4(3): 25-53.
- _____ (2016). “사회적 경제조직 유형별 정체성 분석: 개방성을 중심으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3): 27-53.
- _____ (2018). “사회적기업의 위험감수성 비교분석”. 『한국공공관리학보』. 32(3): 1-23.
- _____ (2020). “사회적기업 생태계의 네트워크 특성 비교분석: 무상성과 전이적 호혜성의 확산을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34(3): 227-249.
- 브루니, 루이지노(2020). 『콤포니타스 이코노미: 모두를 위한 경제는 어떻게 가능한가』, 강영선 외 8인(역). 서울: 북돋움 coop(Bruni, Luigino(2007). *La ferita dell'altro. Il Margine*, Trent, Italy).
- 송백석(2011). “사회적 경제모델과 한국의 사회적 기업정책”. 『공공사회연구』. 1(2): 5-32.
- 신명호(2009). “한국의 ‘사회적 경제’개념 정립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5: 11-46.
- _____ (2014). “사회적경제의 이해”. 『사회적경제의 이해와 전망』. 강원: 아르케: 17-42.
- 엄형식(2005). “유럽적 의미의 사회적 기업 개념과 시사점”. 『도시와 빈곤』. 76: 78-117.
- _____ (2008). 『한국의 사회적 경제와 사회적 기업』, 서울: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 일하는 사회 정책연구원.
- 이은선·이현지(2017).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발전. 제도화: 폴라니의 이중적 운동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8(1): 109-138.
- 전중섭(2000). “시민사회의 뉴 거버넌스: 행정책임성의 변화”. 김영섭 외. 『위대한 사회를 향하여』. 서울: 법문사: 361-385.
- 정대용·김태현(2013). “비영리조직 구성원의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가치일치를 매개로 협조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9): 4303-4312.
- 폴라니, 칼(2009). 『거대한 전환』, 홍기빈(역). 서울: 도서출판 길(Polanyi, K.(1944), *The Great Transformati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Origins of Our Time*, Boston Press: Boston).
- 한상진(2001). “시장과 국가를 넘어서-사회적 경제의 대안과 그 사례들”. 『경제와 사회』. 50: 28-49.
- 허봉선(2015). 『한국의 사회적 기업가 정신 개념구성에 관한 통합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 박사학위논문.
- Brown, L.(ed.)(2009). *Aristotle, The Nicomachean Ethics* (trans. by D. Ross), Book 9, Chapter 9.
- Bruni, L.(2002). “Toward an Economic Rationality Capable of Communion”. L. Bruni (ed.). *Toward a*

- Multi-Dimensional Economic Culture: The Economy of Communion*. New York, NY: New City Press.
- Bruni, L. & S. Zamagni(2007). *Civil Economy: Efficiency, Equity, Public Happiness*. New York, NY: Peter Lang.
- Bruni, L.(2016). “EoC, An Economy for All”. 『국회 일치를 위한 정치포럼 특별강연회 발표자료집』 : 9-25.
- Bruni, L. & Tufano, F.(2017). “The Value of Vulnerability: The Transformative Capacity of Risky Trust”,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12(4): 408-414.
- Campos, J. L. M. & Avila, R. C.(2012). *The Social Economy in the European Union*. Brussels: European Economic and Social Committee
- Defourny, J.(1992). “The Origins, Forms and Roles of a Third Major Sector”. Defourny J. & Monzon Campos J.-L.,(eds.), *Economie Sociale-The Third Sector*, De Boeck, Bruxelles: 27-49.
- Defourny, J.(2001). “From Third Sector to Social enterprise”. *The Emergence of Social Enterprise*.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 Defourny, J. & Nyssens, M.(2006). “Defining social enterprise. Social enterprise: At the crossroads of market”, *Public Policies and Civil Society*. 7: 3-27.
- Galliano, R.(2003). *Social Economy Entrepreneurship and Local Development*. Asan-Eurada.
- Gui, B.(2005). “From Transactions to Encounters: The Joint Generation of Relational Goods and Conventional Values,” *Economics and Social Interaction*, Benedetto Gui and Robert Sugden(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ussbaum, M.(1986). *The Fragility of Goodness: Luck and Ethics in Greek Tragedy and Philosophy*, Part 2.(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oulaert, F. & Ailenei, O.(2005). “Social economy, third sector and solidarity relations: A conceptual synthesis from history to present”. *Urban Studies*, 42(11): 2037-2053.
- Putnam, R. D.(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ABSTRACT *

Social enterprises are important alternative players for social integration in the post capitalistic economy. However, social enterprises in Korea are generally regarded as one group of policy alternative for the social welfare or job cre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nd out the fundamental reason of this misunderstanding. For the accomplishment of research goal, this paper reviews various literature on social economy including The Great Transformation(1944) of K. Polanyi. For empirical synthesizing, this paper aggregates interview data from research papers for last 10 years.

This paper identifies that the fundamental reason of misunderstanding in Korea stems from the common consciousness of the successors of Polanyi. They conclude that society is at the opposite position to market and that it is unavoidable to sacrifice making profit for social benefits. Furthermore, this misunderstanding in Korea is not just academical one, it results in serious policy inefficiency in various programs.

As potential policy alternatives, this paper suggests that every scholar and activist in the Korean field of social economy should restart based on the unity of society and market. They need to find out the strategy for balance between making profit and pursuing social benefits. Especially they should try to maximize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relational goods and the recovery of human encounter, which are the major contributions of all organizations of social economy.

Keywords: social economy, unity of society and market, relational goods

정치가의 지대 추구 활동과 대의민주주의의 효율성*

노형규**

Rent-Seeking Activities of Politicians and the Efficienc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Noh, Hyung Gyoo

◁ 목차 ▷

I. 서론	IV. 지대 추구자의 위험 성향과 후생
II. 지대 추구 기본 모형	손실
III. 대 추구 활동의 규모에 대한 수익	V. 규제를 통한 지대 추구
과 후생 손실	VI. 결론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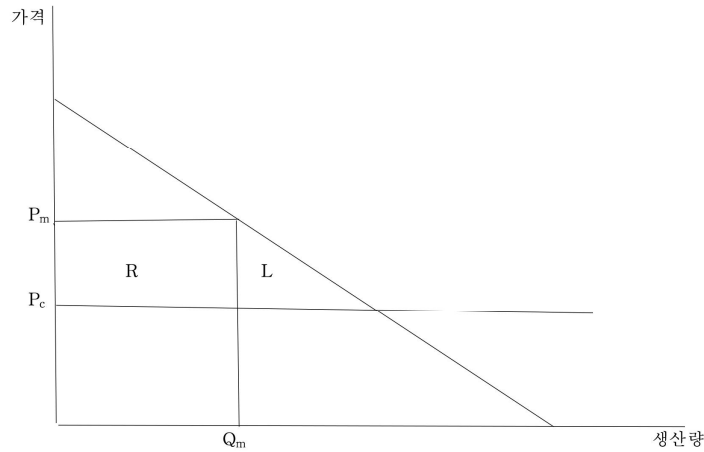
I. 서론

정부는 특정 집단에게 독점적 위치를 부여하거나 독점적 위치를 강화시키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존의 독점적 위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런 권한을 통해 정부는 특정 집단의 독점적 지대를 증가시키고 그 대가로 그 집단이 생산하는 재화를 구입하는 집단들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된다. 이렇게 정부가 제공하는 지대는 추구할 가치가 있는 목표이고 이러한 지대를 추구하는 활동이 지대 추구 활동이다.

지대 추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Tullock(1967)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대 추구라는 용어는 Krueger(1974)의 연구에서 처음으로 등장하였다.

* 이 논문은 2021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그림 1>

<그림 1>은 독점기업의 생산량 결정과 그에 따른 독점적 지대를 보여 주고 있다. 위에서 보여주는 독점기업의 이윤 극대화 생산량은 Q_m 이고 이 생산량 하에서 시장 가격은 P_m 이다. 균형 가격이 P_c 인 완전경쟁 시장과 비교했을 때 독점기업은 R 로 표시되는 독점적 지대를 취하고 소비자 잉여는 $(R + L)$ 만큼 감소한다. 독점에 관한 전통적인 논의에서 R 은 단순히 소비자로부터 독점기업으로의 소득 이전으로 간주하여 후생 손실에 포함시키지 않고 L 만을 독점의 후생 손실로 보았다. 그러나 기업의 독점력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 생성되거나 보호된다면 추가적인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항공사에게 특정 항로에 대해 독점적 운영권을 부여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운영을 원하는 항공사들이 두 개 이상 있을 경우 각 항공사들은 정부로부터 독점적 운영권을 획득하기 노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R 이라는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각 항공사들은 독점적 운영권 획득 확률을 높이기 위해 자원을 투입할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다. Tullock(1967)은 직관적으로 이러한 활동, 즉 지대 추구 활동에 투입되는 자원들을 추가적 후생 손실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보았다.

Buchanan(1980)은 후생 손실에 포함될 수 있는 지대 추구 활동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였다.

- (1) 독점적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경제 주체가 투입하는 노력과 지출
- (2) 독점적 지대를 추구하는 경제 주체가 제공하는 지출을 획득할 수 있는 위치에 가기 위해 정치가나 관료가 투입하는 노력과 지출
- (3) 지대 추구 활동으로 인해 제 3자에게 발생하는 왜곡

앞에서 언급했던 항공사의 독점적 운영권을 예로 들어 각 유형 별 지대 추구 활동의 유형을 살펴볼 수 있다. 정부가 항공노선의 독점적 운영 정책을 시행하려는 것이 알려지게 되면 각 항공사들은 독점적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정치가 또는 관료에 대해 다양한 형태의 로비를 할 것이다. 정치가에게 정치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관료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것 등이 이러한 활동에 포함된다. 만약 위와 같은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관료들이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정보가 관료들 사이에 공유되면 당연히 항공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그러한 위치에 가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는 관료들이 다 수 생겨날 것이다. 항공노선의 독점적 운영을 통해 기업에게 초과 이윤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증가할 수 밖에 없고 그러한 조세 수입 증가 인해 도입되는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 각 이해 집단들이 노력할 것이다.

각 항공사들이 정치가 또는 관료에 대한 로비활동에 투입하는 자원은 첫 번째 유형의 지대 추구 활동에 포함된다. 그리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관료가 되기 위해 각 관료들이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은 두 번째 유형의 지대 추구 활동에 포함된다. 그런데 실제로 정책 과정에 참여하게 된 관료가 항공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투입했던 시간과 노력은 후생 손실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정책 결정 과정에 유용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관료들이 투입한 시간과 노력은 당연히 후생 손실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독점적 이윤에 부과되는 조세로 조세 수입이 증가하면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이 가능해지는데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위한 이해 집단의 노력은 세 번째 유형의 지대 추구 활동에 포함된다.

항공사가 제공하는 뇌물로 인해 두 번째 유형의 지대 추구 활동이 발생하지만 뇌물 그 자체는 후생 손실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뇌물은 항공사로부터 관료로의 단순한 소득 이전이기 때문이다. 항공사의 수입이 여행객들의 요금으로 구성된다면 뇌물은 여행객으로부터 관료로의 소득 이전이라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이 분석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두 번째 유형에 포함되는 정치가의 지대 추구 활동이다. 항공사가 제공하는 금전적 또는 비금전적 특혜를 받기 위해 정치가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키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지대 추구 활동이 없다면 재선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가들은 유권자의 효용을 충실히 반영할 것이고 그 결과 대의 민주주의의 효율성은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항공 이용자가 반대하는 항공노선의 독점적 운영과 같은 정책은 채택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치가가 지대 추구 활동을 수행한다면 대의 민주주의의 효율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의 민주주의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가의 지대 추구 활동을 결정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려고 한다.

II. 지대 추구 기본 모형

지대 추구 기본 모형은 지대를 추구하는 주체의 수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즉 지대를 추구하는 주체의 수가 n 이고 이들이 R 이라는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I 를 투자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어떤 주체가 지대를 획득할 확률(π)은 그가 지대 추구에 투자한 크기에 비례한다고 가정한다. 즉 i 라는 주체가 지대를 획득할 확률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pi_i(I_i) = f_i(I_i) / \sum_{j=1}^n f_j(I_j) \quad (1)$$

지대 추구에 투입되는 투자가 증가하면 지대를 획득할 확률은 높아진다. 즉 $\partial \pi_i / \partial I_i > 0$ 이다.

지대 추구를 위한 투자가 증가할 때 확률의 증가 폭이 투자의 증가 폭보다 적다면 지대 투구 투자는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을 나타낸다. 만약 투자의 증가 폭과 확률의 증가 폭이 동일하다면 지대 추구 투자는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을 나타내고 투자의 증가 폭보다 확률의 증가 폭이 더 크다면 지대 추구 투자는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를 나타낸다. 즉, $\partial^2 \pi_i / \partial I_i^2 < 0$ 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 $\partial^2 \pi_i / \partial I_i^2 = 0$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partial^2 \pi_i / \partial I_i^2 > 0$ 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이다.

Tullock(1980)은 지대 추구 투자의 규모에 대한 수익을 $f_i(I_i) = I^r$ 의 함수 형태로 나타냈고 그 이후 많은 연구들은 이 함수 형태를 변형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 함수 형태에서 $r < 1$ 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 감소, $r = 1$ 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 불변, 그리고 $r > 1$ 이면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를 의미한다.

Tullock(1980)이 제안한 함수 형태와 모든 지대 추구자들이 위험에 대해 중립적이라는 가정 하에서 각 지대 추구자들은 다음과 같은 기대 수익(E(G))을 극대화한다.

$$E(G) = \{I^r / (I^r + T)\}R - I^r \quad (2)$$

식 (2)에서 T 는 $n-1$ 지대 투구자들의 총 투자 액을 의미한다. 다른 지대 추구자들의 투자액이 변하지 않는다는 쿠르노-내쉬(Cournot-Nash) 가정 하에서 식 (2)의 최적화 일차 조건은 다음과 같다.

$$\{rI^{r-1}R / (I^r + T)\} - \{rI^{r-1}R / (I^r + T)^2\} - 1 = 0 \quad (3)$$

대칭적인 균형을 가정하면 최적 지대 추구 투자는 다음과 같다.

$$I = \{(n-1)/n^2\}rR \quad (4)$$

위에서 도출된 I 를 기대 수익을 나타내는 식 (2)에 대입했을 때 기대 수익이 (-) 값을 가지지 않는다면 I 는 지대 추구자의 최적 투자 수준이 된다. 만약 기대 수익이 (-) 값을 가지면 당연히 지대 추구자들은 지대 추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지대 추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r 값에 따라 지대 추구 활동에 대한 후생 손실의 크기는 달라진다.

Ⅲ. 지대 추구 활동의 규모에 대한 수익과 후생 손실

1. 규모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거나 불변인 경우

$r \leq 1$ 인 경우에 식 (4)를 식 (2)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기대 수익이 (-) 값을 가지지 않는 조건을 도출할 수 있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n / (n-1) \geq r \quad (5)$$

지대 추구자의 수가 1이라면 지대 추구를 위해 자원을 투입할 필요가 없다. 즉 지대 추구를 위해 자원을 투입한다는 것은 n 의 최소 값이 2라는 것을 의미한다. n 이 2와 같거나 2보다 크다면 $1 < n/(n-1) \leq 2$ 가 된다, 따라서 $r \leq 1$ 이라면 식 (5)의 조건은 항상 충족된다. 즉 지대 추구 활동이 규모에 대해 수익이 감소하거나 수익이 불변이면 균형 상태에서 지대 추구 투자는 항상 존재한다.

균형 상태에서 총 지대 추구 투자 규모는 n 에 식 (4)에서 도출된 I 를 곱한 값이 된다. 즉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nI = \{(n-1)/n\}rR \quad (6)$$

식 (6)으로부터 r 이나 R 이 증가하면 총투자 규모는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식 (6)의 양변을 R 로 나누어 주면 식 (7)과 같다.

$$nI/R = \{(n-1)/n\}r \quad (7)$$

r 이 1인 경우, 즉 규모에 대한 수익이 일정한 경우, n 이 2라면 nI/R 은 1/2이다. 이 결과는 총 투자 규모가 지대의 절반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쿠르노(Cournot) 복점 모형의 결과와 유사하다. 만약 n 이 무한대로 가면 nI/R 은 1이 된다. 즉, 전체 투자 규모와 지대는 그 크기가 같아진다. 결과적으로 지대 추구자의 수가 증가하면 지대 추구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은 증가한다. 만약 r 이 1보다 작아서 규모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nI/R 은 항상 1보다 작다. 예를 들어 r 이 1/2이면 nI/R 은 1/4에서 1/2 사이의 값을 갖는다.

지대 추구 활동의 총 투자 규모는 지대 추구 활동에 따른 후생 손실의 크기를 나타낸다. 위의 논의로부터 지대 추구자의 수(n)와 규모에 대한 수익 정도(r)가 지대 추구 활동의 총 투자 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n 과 r 의 크기와 지대 추구 활동에 따른 후생 손실 간에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 관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규모에 대한 수익이 일정한 경우, 지대 추구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후생 손실은 증가한다. 만약 지대 추구자의 수가 무한대가 되면 후생 손실은 지대와 크기가 같아진다. 이것은 지대가 완전 소실됨을 의미한다. 규모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지대 추구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후생 손실은 증가하지만 지대 추구자의 수가 무한대로 가더라도 후생 손실은 지대보다는 적다. 이것은 지대가 부분적으로 소실됨을 의미한다.

2. $1 < r \leq 2$ 인 경우

만약 $n \geq 2$ 이면, $n/(n-1)$ 의 최대 값은 2이다. 따라서 식 (5)를 통해 r 의 최대 값 역시 2가 된다. $n = 2$ 이고 $r = 2$ 이면 각 지대 추구자들은 지대의 절반 수준으로 투자하고 총 투자 규모는 지대의 규모와 일치한다. 만약 r 이 2보다 적다면 n 이 2보다 커야지만 균형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r = 1.5$ 일 때 $n = 3$ 이 되고 모든 지대가 소실되는 균형이 달성된다. 만약 $n = 2$ 이면 R 의 2/3가 소실된다. r 과 지대 추구 활동에 참여하는 지대 추구자들의 수(n) 간에는 역의 관계가 존재하는 데 식 (4)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I^* 를 최적 조건을 만족하는 투자라고 했을 때 식 (5)로부터 $\partial I^*/\partial r = (n-1)R/n^2 > 0$ 이다. n 이 일정할 때 r 이 증가하면 각 지대 추구자들의 최적 투자 규모는 증가한다. 그리고 전체 투자 규모가 지대를 초과할 확률은 높아진다. 반면에 n 이 증가하면 각 지대

추구자들의 최적 투자는 감소한다. 식 (5)에서 등식이 성립하는 경우 식 (7)에서 nI/R 이 1이 된다. 즉, $nI = R$ 이 되어 지대가 완전 소실되고 지대 추구 활동의 후생 손실은 지대와 크기가 같다.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 그 밖의 균형에서는 $nI < R$ 이다. 즉 지대는 부분적으로 소실되고 지대 추구 활동의 후생 손실은 지대보다는 적다.

3. $r > 2$ 인 경우

r 이 2보다 많이 커서 규모에 대한 수익 증가가 충분히 크다면 순수 전략 균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극단적으로 가장 큰 투자를 제시하는 지대 추구자에게 지대가 돌아가는 경매가 이 경우와 유사하다. 각 지대 추구자들은 자신이 제시하는 투자가 지대보다 크지 않는 한 더 높은 투자를 제시함으로써 지대를 낙찰받으려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계속되면 최종적으로 모든 지대 추구자들이 제시하는 투자액은 지대와 같아지게 된다. 미술품 경매와 같은 일반적인 경매의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낙찰자는 낙찰 금액을 지불하고 미술품을 획득한다. 반면에 낙찰받지 못한 사람들은 미술품을 획득하지 못하고 그 대신 아무런 금액도 지불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대 추구 활동에서는 그 특성 상 경매에 참여한 지대 추구자들은 설사 낙찰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제시한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한다. 독점적 지대를 제공하겠다는 정치가에게 지대 추구 형태로 제공된 후원금이나 뇌물은 돌려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Tullock(1980)은 이러한 형태의 지대 추구 경우에 nI 은 nR 에 근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I 가 R 에 도달하기 전에 지대 추구자의 기대 수익은 (-) 값을 갖게 되고 위험 중립적인 지대 추구자들은 더 이상 지대 추구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 모든 지대 추구자들이 지대 추구 활동을 포기하면 또 다시 지대 추구 활동이 시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순수 전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대신 혼합 전략 균형이 존재한다.

4. 자유로운 진입이 가능한 경우

새로운 지대 추구자들이 진입하더라도 지대 추구자의 기대 수익이 0보다 크다면 진입은 계속 진행되고 n 은 증가한다. 우리는 앞에서 지대 추구 활동의 규모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거나 일정하면 균형은 항상 존재함을 보았다. 따라서 식 (7)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lim_{n \rightarrow \infty} nI/R = r \quad (8)$$

식 (8)은 진입이 자유롭고 규모에 대한 수익이 일정할 때 지대는 완전 소실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Posner(1975)의 연구를 시작으로 지대 추구 활동의 후생 손실을 측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분의 실증 연구들은 자유로운 진입과 규모에 대한 일정한 수익을 가정하고 있다. 식 (7)은 이러한 가정 하에서 지대 추구 활동의 후생 손실이 독점적 지대와 그 크기가 같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 < r \leq 2$ 인 경우에는 최적 투자수준 즉, I^* 가 0보다 크게 하는 n 중에서 최대 값 n^* 가 존재한다. 즉 지대 추구자의 수가 $n^* + 1$ 이상이 되면 최적 투자 수준은 0보다 적다. $n = n^*$ 이면 당연히 균형은 존재한다. 그리고 n^* 를 식 (5)에 대입했을 때 등식이 성립하면 지대는 완전 소실된다. 즉 후생 손실은 지대와 같아진다. 만약 n^* 를 식 (5)에 대입했을 때 부등식이 성립하면 지대는 부분적으

로 소실된다. 즉 후생 손실은 지대보다 적다. r 이 작을수록, 그리고 n^* 가 클수록 지대의 소실 정도는 커진다. 즉 지대 추구로 인한 후생 손실은 커진다.

IV. 지대 추구자의 위험 성향과 후생 손실

지대 추구 초기 모형은 지대 추구자들이 위험에 대해 중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고 지대 추구에 따른 후생 손실을 분석하였다. Hillman과 Katz(1984)는 지대 추구자들이 위험 회피 성향을 가지고 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그들은 지대 추구자들이 로그 함수 형태의 효용 함수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위험 회피 성향을 도입하였다. 그들은 지대 추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에 비해 지대의 크기가 작을수록 지대 소실의 정도가 커져서 후생 손실이 증가한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예를 들어, 그들의 모형에서 지대가 지대 추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의 20% 정도일 때 지대의 90% 이상이 소실된다. 그들은 다른 형태의 효용 함수를 가정하여 지대 추구자들의 위험 회피 성향을 도입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지대를 어느 한 지대 추구자가 독점하지 않고 여러 지대 추구자들이 나누어 갖는다면 지대는 지대 추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에 비해 크기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대 추구자들의 수가 많은 공공부문에서 이 가능성은 더 높을 것이다. 만약 기업의 획득하는 이윤이 주주들에게 배당된다면 독점적 항공노선으로 발생하는 지대의 추구자들은 항공 회사의 전체 주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지대 추구자가 보유하는 부의 총합은 지대보다 상당히 클 가능성이 높고 결과적으로 지대 추구자들이 위험 회피적이라고 하더라도 지대 소실의 정도는 커지고 후생 손실도 커진다. 정부의 농산물 가격 지지 정책으로부터 발생하는 지대는 모든 농부들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지대 추구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의 총합을 계산한다면 그 크기 역시 상당히 클 것이다. 이렇게 공공 부문의 지대 추구 활동에서 지대 추구자들의 부에 비해 지대는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고 이 경우 지대 추구자들이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지대는 거의 완전 소실되고 후생 손실은 지대 수준에 근접한다.

그런데 주식회사처럼 주인-대리인(principal-agent) 문제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지대 추구자의 부를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지대 추구 활동에 대한 투자를 결정하는 주체는 대리인 역할을 하는 경영자인데 그렇다면 이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를 지대 추구자의 부로 취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존재한다. 그러나 경영자를 지대 추구자로 인정하게 되면 위험 회피적인 지대 추구자의 가정은 더 이상 설득력을 가지지 못한다. 경영자가 지대 추구 활동에 투입하는 자금은 결국 주주들이 제공한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경영자들은 위험을 회피할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이다. Jensen과 Meckling(1976)은 지대 추구자들이 주인의 돈을 투자하는 대리인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위험을 회피하기 보다는 위험을 선호한다고 보았다. 지대 추구자들이 위험을 선호한다면 지대는 초과 소실된다. 즉 후생 손실의 크기는 지대의 크기를 초과할 수 있다. 노동 조합과 같이 대리인이 주인을 대신하여 지대 추구 활동을 주도한다면 유사한 결과가 도출된다.

Knight(1934)는 경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 자기 선택(self-selection) 과정이 적용된다면 그렇게 선정된 경영자들은 집합적으로 위험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위험을 선호하는 경영자들이 이윤에 대해 과도하게 경쟁하다 보면 총 이윤은 평균적으로 (-)가 된다고 예측하였다. 개별적인 경

영자들에게 있어 지대나 이윤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이러한 Knight의 가정을 따르면 경영자들의 지대 추구는 지대의 초과 소실로 이어진다.

주인-대리인 문제가 지대 소실 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주로 민간 부분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정치가가 국민의 대리인이라는 공공 선택 이론의 가정을 따른다면 공공부문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즉 정치가가 국민의 대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지대 추구 활동을 수행한다면 지대의 초과 소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정치가의 지대 추구 활동의 결과 발생하는 후생 손실이 지대 규모를 초과해서 상당히 큰 규모로 나타날 수 있다.

V. 규제를 통한 지대 추구

전통적으로 규제에 대한 경제학적 근거는 장기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자연 독점 산업에서 찾을 수 있다. 교량은 자연 독점의 가장 전형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일단 교량이 건설되면 혼잡이 존재하지 않는 한 추가적인 통행에 따른 한계비용은 0이다. 이 경우 가장 효율적인 통행료는 0이 된다. 그러나 민간 기업이 교량을 건설해서 운영한다면 통행료는 이윤 극대화 수준에서 결정되고 결과적으로 교량은 비효율적으로 적게 이용된다. 장기 평균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사업의 경우 설사 여러 기업이 초기에 경쟁하더라도 결국에는 한 기업이 자연히 공급을 독점하게 되는 즉 자연 독점산업으로 수렴한다. 물론 이러한 독점은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문제는 시장이 독점적이 되면 독점 기업은 <그림 1>이 보여 주는 것처럼 효율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책정하고 그 결과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 여기에 대응하는 것이 규제이다. 즉, 규제를 통해 소비자 후생 감소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다.

규제 과정에서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해는 서로 충돌한다. 규제 당국자가 더 높은 가격을 책정할수록 독점기업의 지대는 증가하는 반면에 소비자 잉여는 감소한다. 규제는 정치적 의사 결정 과정을 통해 결정된다. 따라서 규제 대상 기업은 자신이 획득하는 지대를 최대화하기 위해 규제 당국자가 가능한 한 높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다양한 형태의 압력을 가한다. Stigler(1971)는 규제의 분석에 있어 이전까지의 분석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제시하였다. 이전까지 규제 연구의 목적은 사회 후생을 최대화하는 규제 가격 수준을 찾는 것이었으나 그는 더 많은 지대를 획득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이 규제 가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비록 그의 연구는 지대 추구 연구들에 앞서서 발표되었지만, 정책 당국자가 지대를 창출하고 그러한 지대를 획득하기 위해 경제 주체들이 노력한다는 발상은 이후 지대 추구 분석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Peltzman(1976)은 Stigler의 분석을 확장하여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지대 추구 활동에 참여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그는 정치가가 득표수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써 규제를 사용한다고 보았다. 그의 모형에서 정치가가 획득하는 투표 수는 규제를 받는 생산자의 효용과 규제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 효용의 정의 함수라고 가정하였다.

$$N = N(U_R, U_C), \quad \partial N / \partial U_R, \quad \partial N / \partial U_C \quad (9)$$

N : 정치가가 획득하는 투표 수

U_R : 규제를 받는 생산자의 효용 수준

U_C : 규제 산업으로부터 생산되는 재화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효용 수준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소비자와 효용과 생산자의 효용이 지대(R)와 후생 손실(L)의 선형 함수라고 가정한다.¹⁾ 즉, 다음과 같은 함수 형태를 가정한다.

$$U_R = R, \quad U_C = K - R - L \quad (10)$$

K : 임의의 상수

내적 극대화가 달성되도록 제 2차 조건이 만족한다고 가정하면 득표수 극대화 정치가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는 규제 가격(P)을 책정한다.

$$dN/dP = (\partial N / \partial U_R)(dR/dP) - (\partial N / \partial U_C)(dR/dP) - (\partial N / \partial U_C)(dL/dP) = 0 \quad (11)$$

위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partial N / \partial U_R)(dR/dP) = (\partial N / \partial U_C)(dR/dP - dL/dP) \quad (12)$$

식 (12)는 득표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가가 규제 가격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보여 준다. 그는 독점적 지대(R)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생산자 정치적 지지의 한계적 증가가 R 과 L 의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소비자의 투표수 감소를 상쇄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비록 대부분의 규제 산업이 독점적이지는 않지만 기업의 수가 적은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소비자의 수와 비교하면 더 그렇다. 따라서 지대가 증가했을 때 개별 기업에게 돌아가는 이득은 상당히 크고 소비자 잉여가 감소할 때 개별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상당히 적다. 더구나 Olsen(1965)은 구성원의 수가 적을수록 정치적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 구성원을 조직화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partial N / \partial U_R$ 가 $\partial N / \partial U_C$ 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Stigler(1971)는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규제에 의한 혜택은 생산자에게 집중된다고 주장하였다.

$\partial N / \partial U_R$ 가 $\partial N / \partial U_C$ 보다 상당히 크다면 식 (12)가 만족되기 위해서는 dR/dP 가 상당히 작아져야 함을 의미하고 이것은 가격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partial N / \partial U_C$ 가 0보다 크면, 즉 소비자 후생 감소가 투표수 감소에 조금이라도 영향을 미친다면 식 (12)에 따라 dR/dP 는 0이 될 수 없다. 즉 가격이 독점적 지대를 최대화하는 수준까지는 높아질 수 없다. Becker(1976) 역시 득표수 극대화를 목표로 하는 정치가는 규제 기업에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가격을 책정하지만 지대를 최대화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Peltzman(1976)는 식 (12)로부터 또 다른 흥미로운 함의를 도출하였다. 그는 자연적으로 독점이 되는 산업이나 자연적으로 경쟁적이 되는 산업이 과점적 형태의 산업보다 정치가에게 훨씬 더 매력적이라고 주장하였다. 식 (12)는 규제를 통해 가격이 독점 가격과 완전경쟁시장 가격 사이에서 책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점 시장의 경우 어차피 균형 가격은 독점 가격과 완전경쟁시장 가격 사이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과점 시장의 소비자들은 규제를 통해 큰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반면에

1) R 과 L 은 <그림 1>에서 각각 독점적 지대와 소비자 잉여 감소로 인한 후생 손실이다.

자연 독점 산업의 소비자들은 규제를 통한 가격 하락으로부터, 그리고 완전경쟁시장의 생산자들은 규제를 통한 가격 상승으로부터 큰 혜택을 누린다. Peltzman은 이러한 논리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관찰되는 농업 분야의 규제나 외견상 완전경쟁시장으로 보이는 트럭 운송 산업이나 택시 산업의 규제를 설명하였다.

Stigler(1971)는 규제를 통한 소득 증가 정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규제 대상 집단의 영향력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였고 다른 많은 학자들의 실증 연구들이 그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규제로 인한 지대 추구의 후생 손실에 대한 전형적인 예는 1970년대 규제가 완화될 때까지 지속되었던 민간 항공 산업의 규제이다. 미국의 민간 항공 위원회(Civil Aeronautics Board)는 가격 경쟁을 허용하지 않고 그 대신에 무료 음료나 기내 영화 상영 등을 통한 비가격 경쟁만을 허용하였다. 그 결과 민간 항공 위원회가 책정한 가격으로 인해 발생한 지대가 비가격 경쟁이 가져오는 추가적 비용으로 상쇄되는 현상이 초래되었다.

Posner(1975)는 독점적 지대는 지대 추구를 위한 지출을 통해 완전히 소실된다고 가정하였다. 따라서 그는 규제를 통한 가격 상승이 가져오는 사회적 후생 손실은 전통적으로 독점의 후생 손실로 취급되었던 사중 손실(<그림 1>에서 삼각형 L)에 독점적 지대(<그림 1>에서 사각형 R)을 더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여러 규제 산업에서 이러한 후생 손실을 추정할 결과 그 크기가 적지 않음을 발견하였다.

Peltzman(1975)은 최종적인 득표수 극대화 균형에서 소비자의 이익과 생산자의 이익 간에 상충관계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Peltzman의 견해를 검증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이 생산자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나타내는 변수를 모색하였다. 특히 Becker(1986)는 최종적인 규제 균형 상태가 도출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이익과 생산자의 이익이 각각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Paul and Schoening(1991)은 제 3자 지대 추구를 포함시켜 기본적인 Peltzman 모형을 확장했다. 그들은 제 3자 지대 추구의 증거를 발견하였고 전력 요금 규제의 분석을 통해 포획 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특히 규제 정책 결정자가 선출직일 때보다 임명직일 때 전기 요금이 더 높다는 것을 실증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반면에 Teske(1991)는 규제 당국자가 선출직일 때 기업의 요구에 따라 전화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였다. 그의 가설이 사실이라면 기업들은 정치적 영향력을 미치는 데 있어 확실한 성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Ippolito와 Masson(1978)은 우유 산업에서 규제가 사업자 단체들 간에, 그리고 소비자 단체 간에 지대를 재배분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Wise and Sandler(1994)는 살충제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농업 이익 단체들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 반면 조직력이 떨어지는 환경 단체들은 거의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 주었다. Salhofer, Hofreither와 Sinabell(2000)는 오스트리아의 농업 보호 정책에 대한 지대 추구로부터 후생 손실을 추정하였다. 그들의 연구에 따르면 비록 오스트리아 농부들이 소비자와 납세자의 희생을 통해 이득을 얻지만 가장 많은 이득을 누리는 집단은 식품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다.

규제 정책의 발표에 따라 규제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주가가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를 파악하여 지대 추구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연구들도 있다. Schwert(1977)는 1930년대 주식 거래 규제 법안이 통과하여 생산자로부터 소비자로 지대가 재배분되고 그 결과 주가 하락이 초래되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반면에 Beck와 Connolly(1996)은 48개 사례를 관찰한 결과 정부 정책이 기업의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을 보여 주었다. 그들은 주가가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지대 추구는 존재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지대를 획득하기 위한 지출이 획득한 지대와 그 크기에서 큰

차이가 없다면 지대 추구 경쟁에서 이기더라도 주가는 상승하지 않을 수 있다.

VI. 결론

Buchanan(1980)은 후생 손실을 가져오는 지대 추구 활동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우리는 두 번째 유형에 포함되는 정치가의 지대 추구 활동과 그에 따른 후생 손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정치가가 위험 중립적일 때 중요한 요인들은 지대 추구 활동의 규모에 대한 수익과 지대 추구자의 수이다. 먼저 지대 추구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지대의 소실 정도는 커진다. 이것은 지대 추구 활동에 따른 후생 손실이 커짐을 의미한다. 지대 추구 활동의 규모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 지대 추구자의 수가 무한대로 증가하더라도 지대는 부분적으로 소실된다. 즉 후생 손실은 지대보다 적다. 만약 지대 추구 활동이 규모에 대해 수익이 일정하다면 지대 추구자가 두 명이면 후생 손실은 지대의 반이 되고 지대 추구자의 수가 무한대가 되면 후생 손실은 지대와 일치한다. 만약 지대 추구 활동의 규모에 대한 수익이 증가하면 지대는 초과 소실된다. 즉 후생 손실이 지대보다 더 커진다.

지대 추구 활동에 대한 진입 가능 여부도 지대 추구 활동에 따른 후생 손실의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만약 지대 추구 활동에 대한 진입이 자유롭다면 지대 추구 활동의 규모에 대한 수익이 감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대는 항상 완전 소실된다. 즉 후생 손실이 지대의 크기와 같아진다. 정치 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이 낮을수록 정치가의 지대 추구 활동에 따른 후생 손실은 커지고 대의 민주주의의 비효율성도 커진다.

지대 추구자가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위험 중립적인 성향과 비교했을 때 지대 추구 활동에 따른 후생 손실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지대 추구자에 돌아가는 지대의 규모가 지대 추구자가 보유하고 있는 부에 비해 적다면 위험 회피적인 성향을 가정하더라도 후생 손실은 많이 감소하지 않는다. 정치가의 경우 일반인에 비해 자산 규모가 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설사 정치가가 위험 회피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지대 추구 활동에 따른 후생 손실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정치가의 지대 추구 활동을 가장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분야는 규제이다. 많은 연구들이 규제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정치가의 지대 추구 활동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 들인다면 사회 후생 극대화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서 규제 정책이 결정되고 그 결과 사회 후생의 감소는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정치가가 국민을 대신에 자원 배분을 결정하는 대의 민주주의에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역시 피할 수 없다.

■ 참고문헌

- Beck R. L. and T. M. Connolly, "Some Empirical Evidence on Rent Seeking," *Public Choice* 87, 1996
- Becker, G., "The Public Interest Hypothesis Revisited: A New Test of Peltzman's Theory of Regulation," *Public Choice* 49, 1986
- Hillman, A. and E. Katz, "Risk-Averse Rent Seekers and the Social Cost of Monopoly Power," *Economic Journal* 94, March 1984
- Ippolito, R. and R. Masson, "The Social Cost of Government Regulation of Milk," *Journal of Law and Economic* 21, 1978
- Jensen, M. and W. Meckling, "The Theory of the Fir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ip Structure,"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3, Oct. 1976
- Knight, F., "Profits" in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1934
- Krueger, Anne,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Rent-Seeking Society,"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74
- Olson, A.,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65
- Paul, C. and N. Schoening, "Regulation and Rent Seeking: Prices, Profits and Third-party Transfers," *Public Choice* 68, Jan. 1991
- Peltzman, S., "Towards a More General Theory of Regu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 Au. 1976
- Posner, R., "The Social Costs of Monopoly and Regulatio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3, Au. 1975
- Salhofer, K., M. Hofreither, and F. Sinabell, "Promotion of Agricultural Sector and Political Power in Austria," *Public Choice* 102, 2000
- Schwert, W., "Public Regulation of National Securities Exchanges: A Test of the Capture Hypothesis," *Bell Journal of Economics* 8, 1977
- Stigler, G., "The Theory of Economic Regulation," *Bell Journal of Economics and Management Science* 2, Sp. 1971
- Teske, P., "Rent Seeking in the Deregulatory Environment: State Telecommunications," *Public Choice* 68, 1991
- Tullock, Gordon, "The Welfare Costs of Tariffs, Monopolies and Theft," *Western Economic Journal* 5, June 1967
- Tullock, Gordon, "Efficient Rent Seeking," in J.M. Buchanan, R.D. Tollison, and G. Tullock, eds., 1980

조명변화에 강인한 근적외선 영상을 이용한 얼굴인식*

김형근**, 박철하***

Robust Face Recognition of Near Infrared Images against Lighting Variations

Kim Hyoung Geun, Park Chul Ha

◁ 목차 ▷

I. 서론	V. 결론
II. 얼굴인식을 위한 전처리	참고문헌
III. CS-MLDP에 의한 얼굴인식	ABSTRACT
IV. 실험 및 고찰	

I. 서론

최근, 인터넷의 보급과 초고속 통신망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범죄예방과 사회질서 유지 및 보안이 필요한 곳의 출입통제를 위한 CCTV 시스템의 활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CCTV 영상에서 얼굴인식을 통한 개인인증기술은 보안이 필요한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개인인증시스템에서 필수적인 얼굴인식은 얼굴검출 기술, 특징추출 기술, 조명인식 기술, 포즈인식 기술, 표정인식 기술, 노화인식 기술, 대용량 얼굴 DB구축 기술, 3차원 얼굴형상 복원 등에 초점을 맞춰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

얼굴인식 기술은 사람들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인식하는 생체인식 기술 중의 하나로서 사용자의 특별한 행동 및 접촉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얼굴인식이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정적 요인과 포즈에 의한 오류, 시간의 흐름에 따른 수염의 변화 및 노화, 안경, 가발, 액세서리, 변장, 얼굴성형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실용화가 제한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얼굴인식에서 인식율 저하의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조명환경의 변화에 따라 획득되는 얼굴 영상들이 서로 큰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따라서 조명의 변화로 인한 얼굴 영상의 인식률 저하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이다.

* 이 논문은 2021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컴퓨터과학과 교수(제1저자)

*** 세한대학교 경찰학과 교수(제2저자)

얼굴인식에서 조명변화를 상쇄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접근방법은 기존에 사용되던 가시광선 카메라가 아닌 적외선 카메라 및 깊이 정보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조명의 변화에 불변특성을 갖는 영상데이터를 획득하여 인식성능의 향상을 연구하는 방법이다. 수동적인 접근방법은 가시광선 카메라에 의해 얻어진 영상데이터를 기반으로 더욱 우수한 성능의 얼굴인식 방법을 연구하는 것으로 조명변화 모델링[2], 포토메트릭 정규화[3], 3D 모핑모델[4], 조명불변 특징추출의 네 가지로 방법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조명 불변 특징추출 방법 중의 하나인 LBP(Local Binary Patterns)를 이용한 방법은 알고리즘의 단순성, 병렬처리 알고리즘에의 적합성, 계산량의 감소 등의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으며 우수한 성능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LBP는 비 단조 조명 변화 및 잡음에 의해 성능이 저하되는 단점이 있으며, 또한 히스토그램 기반의 인식 방법에서 특징벡터의 차원의 수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LBP를 수정한 CS-LBP(Center Symmetric-LBP)가 제안되었고, 방향성을 고려한 LDP(Local Directional Pattern) 등의 다양한 변형들이 나타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조명변화에 강인한 얼굴인식을 위해서 근적외선 카메라를 사용하고, 조명불변 특징추출 방법 중의 하나인 LBP의 변형 중에 조명변화에 가장 강인하다고 알려진 LDP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LD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대칭적 마스크를 사용하여 특징벡터의 차원을 줄이고 에지의 방향성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는 것이 가능한 CS-MLDP를 제안하여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얼굴인증을 위해 CS-MLDP 히스토그램으로 템플릿을 추출하고 템플릿 사이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얼굴인식 결과를 도출하였다. 실험결과 제안된 방법이 조명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우수한 얼굴인식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II. 얼굴인식을 위한 전처리

1. 조명변화에 강인한 근적외선 얼굴영상

가. 디지털 이미지

CCTV 카메라는 일반적으로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 그 장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촬영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저장한다. 고정된 장소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촬영함으로써 범죄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 저장된 디지털 이미지를 통해 범죄 수사에 활용되거나 이미지의 신뢰성이 충분한 경우 범죄에 대한 법적 증거자료로서의 효용도 갖는다. 초기에는 군사시설과 같은 고도의 보안시설을 중심으로 보급되었으나 활용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사업시설, 주차장, 도로,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보안 및 감시장비로서 활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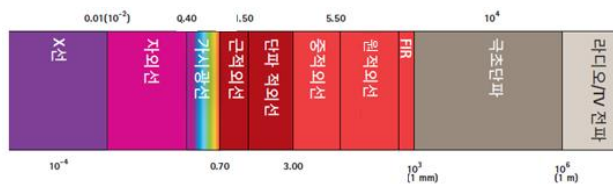
CCTV는 외부환경의 조명 조건에 따라 주간과 야간 모드로 나눌 수 있다. 주간 모드는 가시광선 카메라의 작동원리와 같이 외부 광원에서 발생하는 빛이 물체에서 반사되는 나타나는 가시광선을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한다. 그러므로 주간모드의 이미지는 일반적인 카메라 이미지와 같다. 반면 야간에는 외부 광원이 존재하지 않거나 그 세기가 극히 미약하여 일반적인 카메라로는 정상적인 이미지를 획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하여 광원을 제공할 수도 있으나 이는 야간에 강한 빛으로 인해 식물의 성장을 방해하고 인간의 숙면을 방해하는 등의 환

조명변화에 강인한 근적외선 영상을 이용한 얼굴인식

경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CCTV의 위치를 노출시킨다는 단점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명이 없는 야간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촬영한다. 사람 눈에는 보이지 않는 적외선 조명을 광원으로 사용하여 물체에서 반사되는 적외선을 측정함으로써 야간 이미지를 획득한다.

나. 근적외선 이미지

적외선은 사람 눈으로 식별 가능한 가시광선보다 더 높은 파장을 갖으며,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에 위치하고 있다. 파장의 범위에 따라 근적외선, 단파적외선, 중적외선, 원적외선으로 구분된다. <그림 1>에 빛의 파장에 따른 적외선의 분포를 나타낸다.



<그림 1> 근적외선 카메라의 전자기 스펙트럼

적외선 이미지는 카메라에 들어오는 적외선의 세기를 측정하여 디지털 이미지로 나타낸 것으로서, 크게 근적외선 이미지와 원적외선 이미지로 구분한다. 근적외선은 가시광선과 인접한 파장으로 일반 카메라에서도 일부 측정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근적외선 조명과 조합하여 CCTV의 야간 촬영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그림 2(a)>. 반면에 원적외선은 물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열에너지를 측정해서 획득하기 때문에 별도의 외부 조명이 필요하지 않고, 타겟 식별, 감시, 나이트비전 등 군사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그림 2(b)>. 군사용도가 아니더라도 최근 들어 원적외선의 활용이 많은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환경 감시, 야행성 동물의 출몰 감시, 산업시설 감시 등으로도 사용되고 된다. 그리고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비드19 방역상황에서 발열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비접촉 온도측정기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근적외선 이미지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



(a) 근적외선 이미지



(b) 원적외선 이미지

<그림 2> 적외선 이미지

다. 얼굴영상의 획득

1) 가시광선 이미지 획득 과정

카메라가 가시광선 이미지를 획득하는 과정은 사람이 눈을 통해 물체를 보는 것과 유사하다. 광

원에서 나온 빛($S(\lambda)$)은 식(1)과 같이 물체에 도달해서 반사율($\delta(\lambda)$)에 따라 반사되어서 나온다 ($V(\lambda)$)[5]. 여기서 λ 는 파장을 뜻한다.

$$V(\lambda) = S(\lambda) \times \delta(\lambda) \quad (1)$$

카메라 이미지 센서는 물체에서 반사되어 나온 빛의 세기를 R, G, B 별로 나누어 측정한다.

$$\begin{aligned} R &= \int_{\lambda} V(\lambda) \times r(\lambda), \\ G &= \int_{\lambda} V(\lambda) \times g(\lambda), \\ B &= \int_{\lambda} V(\lambda) \times b(\lambda) \end{aligned} \quad (2)$$

위 식에서 $r(\lambda)$, $g(\lambda)$, $b(\lambda)$ 는 각각 빨강, 초록, 파랑색의 파장을 나타낸다. 식(2)와 같이 빛의 세기를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갖는 R, G, B 값이 최종 이미지의 픽셀 값으로 설정된다.

2) 근적외선 이미지 획득 과정

어두운 환경에서는 빛이 없거나 빛의 세기가 매우 작아서 일반적인 가시광선 카메라로는 선명한 화질의 이미지를 얻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앞에 기술한 이유들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근적외선을 CCTV에서 발사한 뒤($I(\lambda)$), 물체에서 반사된 적외선 빛의 세기(V)를 측정해서 근적외선 이미지를 획득한다. 가시광선 이미지와는 다르게 근적외선은 사람이 눈을 통해서 인지하지 못하는 파장이다. 근적외선은 색깔이라는 개념도 없기 때문에 근적외선으로 구분된 파장의 스펙트럼을 적분해서 근적외선의 세기를 측정한다.

$$V = \int_{\lambda} I(\lambda) \times z(\lambda) \quad (3)$$

가시광선 이미지 획득 과정과 가장 큰 차이점은 가시광선 이미지 획득 과정에서는 광원이 조명 또는 태양이기 때문에 피사체에서의 조명의 방향이 유동적이지만, 근적외선 이미지 획득 과정에서는 광원으로 카메라에 달려 있는 적외선램프를 사용하기 때문에 피사체에서의 조명의 방향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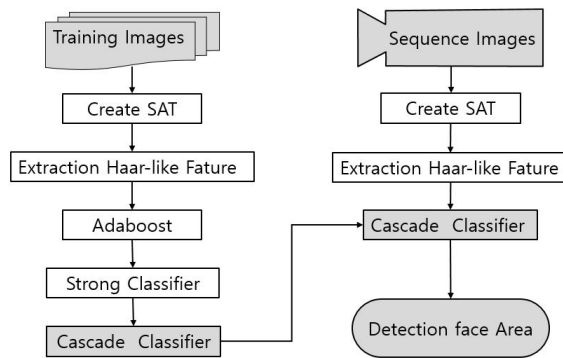
3) CCTV 이미지 획득 과정

일반적으로 CCTV에 사용되는 근적외선 카메라는 야간모드에 좀 더 높은 화질의 이미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근적외선 이미지와 가시광선 이미지를 적분한 값을 합해서 최종 이미지를 생성하고 있다. 이것을 식(4)에 나타낸다.

$$V = \int_{\lambda} I(\lambda) \times z(\lambda) + \int_{\lambda} S(\lambda) \times \delta(\lambda) \quad (4)$$

2. 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한 얼굴요소 검출[6]

획득된 얼굴영상은 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얼굴요소를 검출한다. AdaBoost 알고리즘은 약분류기(Weak Classifier)들을 조합하여 강분류기(Strong Classifier)를 학습하는 알고리즘으로 빠른 실행속도와 높은 얼굴 검출 능력을 갖는다. AdaBoost 얼굴 검출기의 학습은 누적 영상(SAT)의 준비, Haar-like 특징 집합의 생성, 약분류기 및 강분류기의 학습, 직렬분류기의 구성으로 이루어진다. 이 과정을 <그림 3>에 나타낸다.



(a) 분류기 학습단계 (b) 실시간 얼굴요소 검출단계

<그림 3> 얼굴요소 검출기 구성도

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눈과 입의 3개의 영역을 검출한 과정을 <그림 4>에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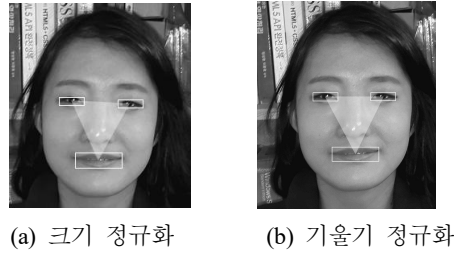


<그림 4> AdaBoost 알고리즘에 의한 얼굴요소 검출 과정

3. 얼굴 정규화와 영역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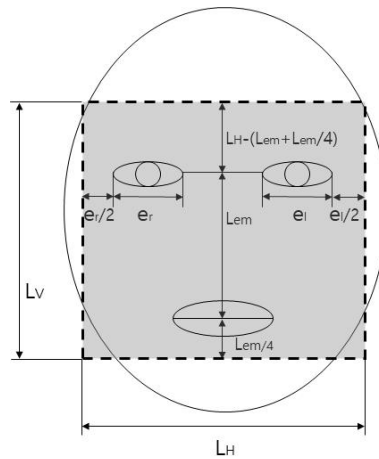
템플릿 매칭 방법을 기반으로 얼굴 검출 시, 템플릿의 크기가 얼굴 크기와 항상 일치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템플릿 매칭 방법만으로 얼굴의 정확한 크기를 알기란 쉽지 않다[7].

본 논문에서 얼굴 정규화는 <그림 4(c)>의 얼굴요소의 검출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그림 5(a)>와 같이 양 눈과 입의 중점을 연결하는 삼각형의 면적이 미리 설정된 기준값과 같게 함으로서 얼굴 특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얼굴영상의 크기 정규화를 하고, <그림 5(b)>와 같이 양 눈의 중점이 수평을 이루도록 회전변환을 통해 얼굴 기울기에 대한 정규화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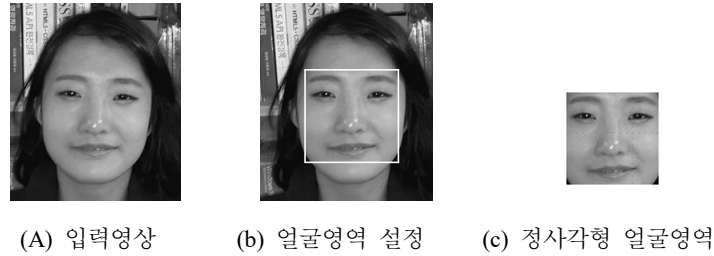
<그림 5> 얼굴영상의 정규화

얼굴영역의 설정은 템플릿 매칭 방법에서 얼굴 요소의 위치가 어느정도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인식률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얼굴 횡 방향 길이 LH 와 종 방향 길이 LV 를 같은 값으로 설정하여 정사각형 형태의 얼굴영역을 설정한다. 먼저 얼굴 횡방향의 길이는 얼굴의 기하학적 비례 관계를 고려하여 양 눈 끝선에서 눈의 길이의 $1/2$ 의 거리만큼 떨어진 위치를 추정하여 얼굴 횡 방향의 경계로 한다. 얼굴 종 방향의 길이는 먼저 눈과 입 사이의 거리(Lem)를 기준으로 입의 중심 위치에서 $Lem/4$ 만큼 내려간 위치를 얼굴 종 방향의 하부 위치로 결정하고, 눈의 중심에서 $LH-(Lem+Lem/4)$ 만큼 올라간 위치를 얼굴 종 방향 상부 위치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인식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배경 부분을 최소화하고 얼굴요소의 위치의 변화가 최소화 되는 정사각형 얼굴영역을 설정한다. 이 과정을 <그림 6>에 나타낸다.



<그림 6> 얼굴영역의 설정

<그림 7>에는 카메라를 통해서 획득된 얼굴영상에서 크기 및 기울기에 대한 정규화 과정을 거쳐 얻어진 얼굴에 대한 영역의 설정의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 7> 정사각형 얼굴영역

III. CS-MLDP에 의한 얼굴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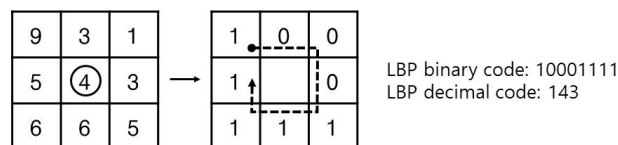
Ojala 등에 의해 소개된 지역 이진 패턴(LBP)은 그레이 레벨의 화소값을 이용하여 점, 선끝, 엣지, 코너 등의 얼굴 텍스처의 마이크로 특징을 표현하여 텍스처 분석, 패턴 인식 등에서 매우 높은 구분 능력을 보여주었다.[9] LBP는 조명의 변화에 대한 내구성, 알고리즘의 단순성, 병렬처리 알고리즘에의 적합성, 간소화된 연산으로 인한 처리시간의 감소, 영상데이터에서 텍스처의 높은 식별력 등의 장점으로 영상의 분류, 얼굴영상 분석 및 인식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LBP에 대한 최근의 연구에서는 조명에 강인한 특성을 이용하여 얼굴 영상의 전처리 과정에 LBP를 적용한 후에 KNN, PCA, LDA, ICA 등의 분류기를 사용하여 얼굴을 인식하는 방법이 제안되고 있다. 이 방법들은 기존의 히스토그램 평활화나 Gross가 제안한 방법보다 더 나은 인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8]. 이것은 LBP가 히스토그램 기반의 특징벡터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조명변화에 강인한 얼굴 인식을 위한 전처리 과정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10].

블록기반의 축적 히스토그램 매칭을 이용한 인식에서 특징벡터 차원의 문제, 비 단조 조명변화에서의 민감성, 랜덤노이즈에서의 민감성 등 LBP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으로서의 LBP, CS-LBP, 지역 미분 패턴(LDP) 등 LBP의 변형들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1. LBP

LBP 연산은 <그림 8>에서와 같이 하나의 중심화소에서 주변 픽셀들과 화소 값을 비교하여 그 값이 크거나 같으면 1을,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중심화소에서 주변 픽셀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타낸 2진 값들은 설정하고 특정 위치를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2진 비트를 나열하여 2진값이 산출되고, 이것을 10진 값으로 변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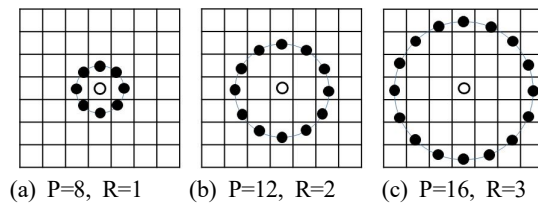
<그림 8> P=8, R=1에 대한 LBP 코드값

LBP는 식(5)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중심 위치의 화소값과 이웃 화소값의 차이를 0과 1의 값

으로 나타내고 이를 이진 코드화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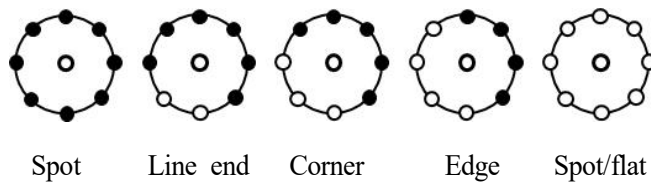
$$LBP_{P,R} = \sum_{p=0}^{P-1} s(g_p - g_c) 2^p, \quad s(x) = \begin{cases} 1, & x \geq 0 \\ 0, & x < 0 \end{cases} \quad (5)$$

식(5)에서 LBP 는 주변 픽셀의 수 P 와 중심에서 주변 픽셀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반경 R 을 이용하여 $LBP_{P,R}$ 로 표현한다. g_c 는 중심 픽셀 (x_c, y_c) 의 화소값을 나타내고, g_p 는 픽셀 (x_c, y_c) 에서 반경이 R 만큼 떨어져 있는 P 개의 주변 픽셀들을 나타낸다. P, R 값에 따른 주변 픽셀의 배치 관계는 <그림 9>에서 설명된다. 다양한 P, R 값을 사용하여 다해상도 텍스처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림 9> P와 R 값에 따른 주변 픽셀 배치

식(5)에 의해 변환된 픽셀 (x_c, y_c) 에서의 $LBP(8,1)$ 일 경우, 8개의 인접픽셀들과 비교하여 1 또는 0의 값이 구성되기 때문에 8비트로 2진수로 표현되며,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갖는다. ULBP(Uniform LBP)는 LBP에서 나타나는 256가지 지역이진패턴 중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패턴들만을 선택하여 히스토그램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의미 있는 패턴을 구별하는 방법은 LBP 8비트 2진 코드에서 0에서 1로 또는 1에서 0으로 바뀌는 현상이 2번 이하로 나타나는 패턴만을 ULBP로 사용한다. 256가지 LBP 패턴 중에서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58개의 패턴이 ULBP로 선택되고, 선택되지 않은 나머지 의미 없는 패턴들은 한 개의 패턴으로 합쳐서 총 59개의 패턴으로 표현된다. ULBP로 선택된 58개의 패턴만으로도 영상 특성의 96% 정도를 표현할 수 있으며 LBP의 반경 R 이 변경됨에 따라 히스토그램의 분포도 변경된다. <그림 10>은 ULBP의 예를 보여준 것이다. 전체 영상에 대한 점, 끝선, 코너, 에지 등과 같은 미세패턴의 분포에 대한 정보가 히스토그램에 포함되고, 이는 영상의 통계적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징들을 이용하여 영상데이터를 분류하고 인식한다.



<그림 10> 균일국부이진패턴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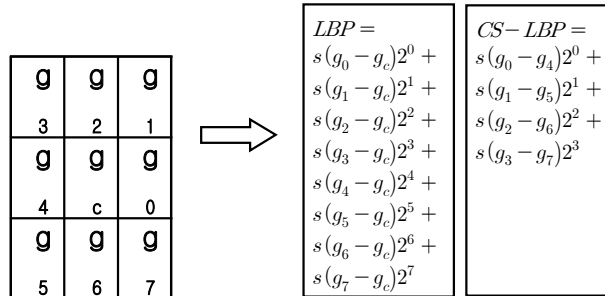
2. CS-LBP

LBP 히스토그램들을 기반으로 한 얼굴인식 방법에서 상당히 양호한 인식 결과가 보고되기 시작

하면서, LBP에 대한 연구가 널리 확산되었다. 그러나 LBP는 단조로운 조명변화에 강인한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비 단조 조명변화로 인한 화소 값의 변화에 LBP 변환 값이 민감하게 변화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LBP의 변형들이 연구되고 있다. 그 중 CS-LBP는 Marko Heikkilä 등이 제안한 방법[11]으로 기존의 LBP가 이진 코드 값의 축적 히스토그램을 기반으로 하는 매칭방법으로 얼굴인식을 수행할 경우 특징벡터의 차원이 늘어나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안하였다. CS-LBP는 중심화소와 주변 화소 값의 비교를 통해 이진패턴을 만드는 LBP와는 달리 중심화소를 기준으로 대칭되는 주변 화소들과의 비교만을 통하여 이진패턴을 만드는 방법 [12]으로 식(6)과 같이 계산된다.

$$CS-LBP_{P,R} = \sum_{p=0}^{(p/2)-1} s(g_p - g_{p+(p/2)})2^p, \quad s(x) = \begin{cases} 1, & x \geq 0 \\ 0, & x < 0 \end{cases} \quad (6)$$

예를 들어, $LBP_{8,1}$ 에서의 가중치는 2^0 부터 2^7 까지이므로 0에서 255까지의 값을 갖지만, $CS-LBP_{8,1}$ 에서의 가중치는 2^0 부터 2^3 까지이므로 0에서 15까지의 값을 갖게 된다. LBP는 8비트 이진 코드로 최대값이 255인 것에 반해 CS-LBP는 4비트 2진 코드로 최대 15의 값을 갖는다. 이것은 이진패턴 히스토그램을 이용한 얼굴인식 방법에서, CS-LBP가 히스토그램 특징벡터의 차원을 절반으로 줄이는 의미를 가진다[13]. 이것을 <그림 11>에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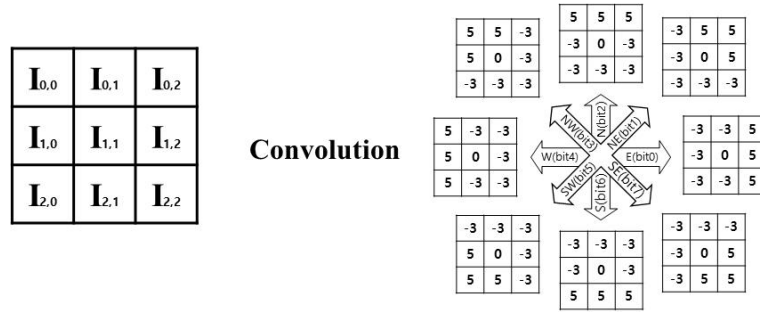


<그림 11> $LBP_{8,1}$ 과 $CS-LBP_{8,1}$ 연산자의 비교

3. LD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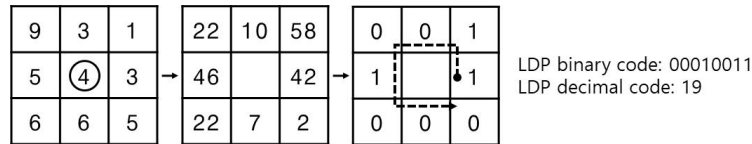
LBP는 입력 영상에 대한 세부적인 특징 변화를 추출하여 정보를 부호화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LDP가 제안되었다. LDP는 기본적으로 LBP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14]. LDP는 영상의 그레디언트 성분을 계산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진패턴을 생성하는 방법으로 LBP보다 가우시안 잡음에 더 강인한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LBP보다 우수한 인식 성능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15].

LDP 이진패턴을 생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각 화소에 대해서 $m \times m$ 개의 지역 패턴 윈도우를 설정하고 여기에 8개의 방향성 에지 마스크를 컨볼루션하여 8개의 방향성분을 구한다. m 을 변경하는 것에 따라 표현 가능한 패턴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 <그림 12>은 3×3 Kirsch 에지 반응 마스크[16]를 방향 마스크로 사용한 예이다.



<그림 12> Kirsch 나침판 마스크

다음으로, 8개의 방향성분을 크기에 따라서 정렬하고 상위 k 개를 선정하여 해당 방향을 나타내는 비트를 1로 설정한다. 이때 최소 방향성분과 유지할 최대 방향성분 수를 달리하여 잡음과 texture 패턴에 대해서 다른 특성을 갖는 LDP 코드를 생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k 개의 선택된 위치와 관련한 비트 값은 1로, 그렇지 않은 비트 값은 0으로 설정하여 <그림 13>에 제시된 방향에 따라 8비트의 LDP_k 코드 값을 생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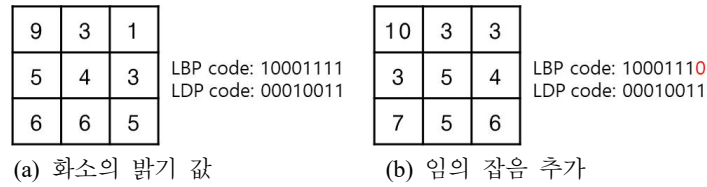


<그림 13> $k=3$ 인 LDP3 코드 생성의 예

<그림 13>는 임의의 영상블록에 대하여 $k=3$ 으로 주어진 3×3 지역패턴에 대한 LDP_3 코드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원영상의 화소 값, Kirsch 마스크에 대한 에지 응답, 생성된 LDP 코드를 보여주고 있다. $m_i (i=0,1,\dots,7)$ 에서 에지 절대 값의 크기순으로 m_4, m_1, m_0 의 3개를 추출하여 1로 설정하고 나머지 비트 m_7, m_6, m_5, m_3 을 0으로 설정한다. 마지막으로 m_7 에서 m_0 의 순으로 비트 값을 나열하여 LDP 코드넘버 00010011(19)가 생성된다.

생성된 LDP는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갖는다. 먼저, LDP는 $m \times m$ 마스크를 사용하여 에지 값을 계산하기 때문에 중심화소 하나의 값에 의해서 코드가 결정되는 LBP에 비해서 잡음에 대한 적응력이 매우 높다[17]. 그리고, 영상에 에지가 존재하는 경우에 높은 순위에 들어있는 반응 값들은 상대적으로 아주 큰 값을 갖기 때문에 낮은 순위에 비해서 변화할 확률이 낮다. 그러므로 영상에 잡음이 포함되어도 LDP 코드는 변하지 않고 안정적이다. 하지만 중심화소와 외곽화소의 차이 값의 부호에 따라서 코드가 결정되는 LBP의 경우는 <그림 14>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잡음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에지가 없는 영역의 화소들의 경우에 중심화소와 주변화소와 차이는 추가된 잡음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LBP의 경우에 매우 불안정한 코드가 생성된다. LDP의 경우에 $m \times m$ 마스크를 사용하여 에지 반응을 구하기 때문에 잡음의 영향을 적게 받을 뿐만 아니라 최대 에지반응 값이 일정 값 이하이면 에지가 존재하지 않는 배경화소로 판단하여 배경화소를 나타내는 “00000000” 코드를 부여하기 때문에 잡음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조명변화에 강인한 근적외선 영상을 이용한 얼굴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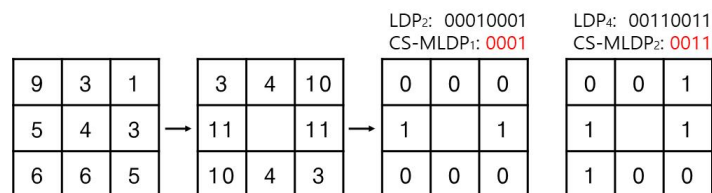
<그림 14> 가우시안 잡음에 따른 LDP와 LBP의 비교

4. 제안된 CS-MLDP

LDP는 8비트의 2진수로 구성되며 각 비트는 Kirsch 에지의 8가지 방향 중 하나를 나타낸다. 그리고 8비트의 에지 값이 높은 순으로 k 개의 비트만 1로 세팅된다. k 값이 커지면 LDP 코드가 표현할 수 있는 패턴의 수는 증가하지만 계산량이 많아진다는 단점이 있고 인식을 향상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LDP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 논문에서는 인식을 저하가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획기적으로 계산량을 감소할 수 있는 새로운 4비트 LDP 표현 방법을 개발하였다.

LDP는 8개의 비대칭 Kirsch 마스크를 사용하지만 제안된 방법에서는 비대칭 Kirsch 마스크 대신에 4개의 대칭 Prewitt 마스크와 마스크 반응의 부호를 활용하여 절반의 계산량으로 8방향의 방향성분을 구할 수 있다. 이때 8방향의 그래디언트의 절대값은 화소 값을 중심으로 서로 대칭되기 때문에 대칭형 마스크의 경우에 k 값은 반드시 짝수의 값을 갖는다.

<그림 15>에 나타난 것과 같이 대칭형 마스크를 사용할 경우에 k 의 값이 반드시 짝수일 수밖에 없고, LDP 코드 또한 대칭형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4비트의 코드가 반복하여 기술되어 8비트를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반복된 LDP코드의 하위 4비트만을 취하여 4비트 CS-MLDP 코드를 제안한다. 이 과정을 <그림 15>에 나타낸다.



<그림 15> 대칭형 마스크에 의한 4비트 CS-MLDP 코드

대칭형 마스크에 의한 4비트 CS-MLDP 코드는 LDP의 대칭된 코드를 단일화했기 때문에 그래디언트의 방향성 정보의 부분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CS-MLDP1에서 4개의 방향성 코드와 CS-MLDP2에서 4개의 방향성 코드를 추출하고, 코드의 방향성의 크기에 따라 16개의 방향성 코드를 사용한다. 그리고 수직방향과 사선방향의 교차특징을 반영하는 2개의 코드를 추가하여 총 10개의 코드를 사용한다. <그림 16>에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10개의 CS-MLDP의 4비트 코드와 각각의 방향성에 대해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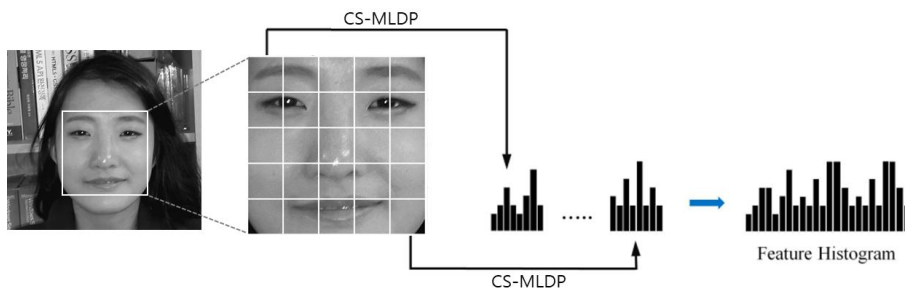
<table><tr><td>0</td><td>0</td><td>0</td></tr><tr><td></td><td></td><td>1</td></tr></table>	0	0	0			1	<table><tr><td>0</td><td>0</td><td>1</td></tr><tr><td></td><td></td><td>1</td></tr></table>	0	0	1			1	<table><tr><td>0</td><td>0</td><td>1</td></tr><tr><td></td><td></td><td>0</td></tr></table>	0	0	1			0	<table><tr><td>0</td><td>1</td><td>1</td></tr><tr><td></td><td></td><td>0</td></tr></table>	0	1	1			0	<table><tr><td>0</td><td>1</td><td>0</td></tr><tr><td></td><td></td><td>0</td></tr></table>	0	1	0			0
0	0	0																																
		1																																
0	0	1																																
		1																																
0	0	1																																
		0																																
0	1	1																																
		0																																
0	1	0																																
		0																																
CS-MLDP1: 0001(0°)	CS_MLDP2: 0011(30°)	CS-MLDP1: 0010(45°)	CS-MLDP2: 0110(60°)	CS-MLDP1: 0100(90°)																														
<table><tr><td>1</td><td>1</td><td>0</td></tr><tr><td></td><td></td><td>0</td></tr></table>	1	1	0			0	<table><tr><td>1</td><td>0</td><td>0</td></tr><tr><td></td><td></td><td>0</td></tr></table>	1	0	0			0	<table><tr><td>1</td><td>0</td><td>0</td></tr><tr><td></td><td></td><td>1</td></tr></table>	1	0	0			1	<table><tr><td>0</td><td>1</td><td>0</td></tr><tr><td></td><td></td><td>1</td></tr></table>	0	1	0			1	<table><tr><td>1</td><td>0</td><td>1</td></tr><tr><td></td><td></td><td>0</td></tr></table>	1	0	1			0
1	1	0																																
		0																																
1	0	0																																
		0																																
1	0	0																																
		1																																
0	1	0																																
		1																																
1	0	1																																
		0																																
CS-MLDP2: 1100(120°)	CS-MLDP1: 1000(135°)	CS-MLDP2: 1001(160°)	CS_MLDP2: 0101(+)	CS-MLDP2: 1010(X)																														

<그림 16> 제안된 4비트 CS-MLDP 코드의 방향성

제안된 CS-MLDP는 고속의 비트연산이 가능하고, 사용된 코드 수의 감축을 통해서 기존의 LDP에 비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5. 얼굴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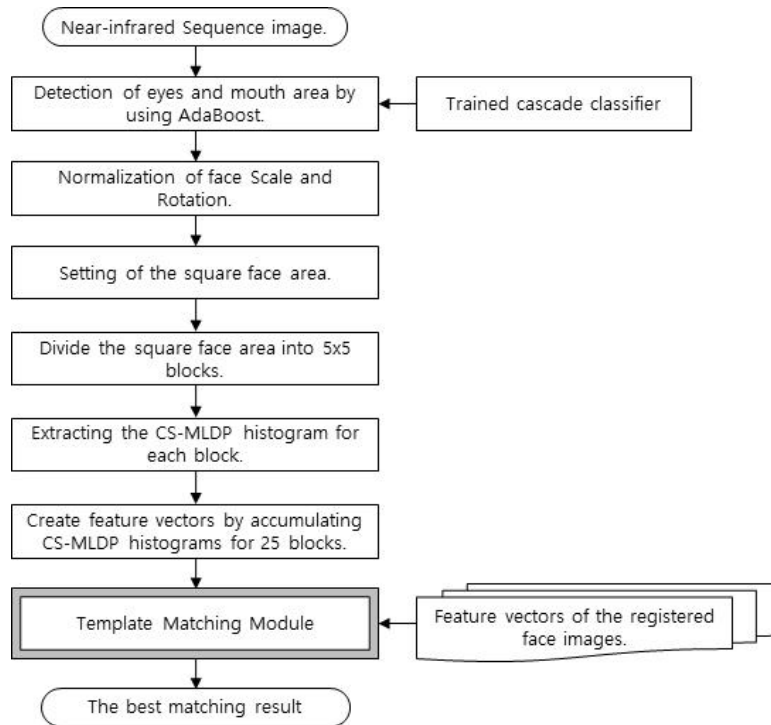
CS-MLDP 히스토그램 축적을 이용한 얼굴 인식을 위해서는 입력영상에서 두 눈의 위치와 입의 위치를 기준으로 설정된 정사각형 형태의 얼굴영역을 절단하여 $N \times N$ 블록으로 분할한다. 분할된 각각의 블록들에서 10가지 CS-MLDP 코드 히스토그램 추출한 후, 좌·상단의 블록 히스토그램에서 우·하단의 순서로 마지막 블록까지 모든 블록의 히스토그램을 결합하여 축적한 뒤 이것을 바탕으로 인식을 수행한다. 이 CS-MLDP 코드 히스토그램 축적은 얼굴의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마이크로 패턴의 합성으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을 <그림 17>에 나타낸다. 예를 들면 얼굴영역을 5×5 블록으로 분할하여 분석하였다면 특징벡터의 차원은 총 $25\text{블록} \times 10\text{패턴} = 250$ 개의 CS-MLDP 히스토그램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림 17> CS-MLDP를 이용한 영상의 히스토그램 축적

본 논문에서는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조명변화에 강인한 근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하여 얼굴영상을 획득한 후 AdaBoos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얼굴의 주요 요소인 양 눈과 입의 위치를 검출한다. 그리고 얼굴의 크기 및 기울기의 정규화를 진행한 후 정사각형 얼굴영역을 설정한다. 설정된 얼굴영역을 25개의 블록으로 분할하여 각각의 블록에 대해 조명변화에 강인한 특성을 갖는 제안된 CS-MLDP 히스토그램 특징 벡터를 축적하여 템플릿을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템플릿 매칭 모듈에서 작성된 템플릿과 미리 준비된 인식대상 얼굴들의 템플릿 사이에 유사도를 비교하여 얼굴 인식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그림 18>에 나타낸다. 실험결과 제안된 방법이 조명변화에 영향받지 않고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조명변화에 강인한 근적외선 영상을 이용한 얼굴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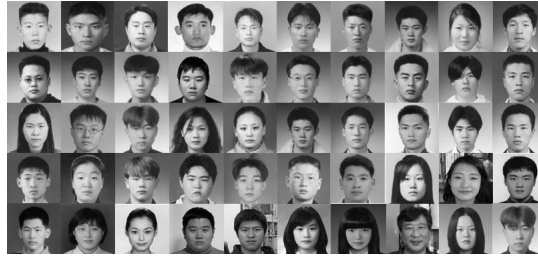


<그림 18> 제안된 얼굴 인식 알고리즘의 흐름도

IV. 실험 및 고찰

제안된 방법의 알고리즘을 실증하기 위해 Windows10 운영체제를 Intel i7-7700 CPU, 메모리 16GB 갖는 환경에서 Visual C++ 언어와, OpenCV(Open Source Computer Vision) 라이브러리, Windows API 함수를 이용하여 구현하고 얼굴인식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얼굴 영상 데이터는 1080×720 해상도의 근적외선 CCTV에 의해 획득되었으며, 50인을 대상으로 각각 가시광선 조명의 세기에 따라 5가지, y축과 z축 방향으로 좌우 15° 회전한 4가지, 카메라와 피사체의 거리에 따라 2가지 경우를 획득하여 1인당 11장 총 550장의 상태가 다른 얼굴 영상을 획득하였다. 여기서 가시광선 조명의 세기에 따른 5가지 상태는 근적외선 카메라가 근적외선만이 아니라 가시광선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y축 15° 회전 영상은 돌출된 코 영역에 가려져 나타나는 캐스트 음영(cast shadow)의 영향을 확인하고 회전된 얼굴영역에서 제안된 얼굴영역 설정법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또한 z축 15° 회전 영상과 피사체와의 거리변화 영상은 전처리 과정의 기울기 정규화와 크기정규화가 올바르게 작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림 19>에 실험에 사용된 50인의 얼굴 영상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그림 19> 실험에 사용한 얼굴 영상 데이터

다양한 조건의 550장의 얼굴영상을 대상으로 한 얼굴인식 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표 1> 얼굴 인식 결과

인식	오인식			
	조명변화	y축 회전	z축 회전	거리변화
524	5	8	13	0
	26			

표 1에서 보이는 것처럼 550장의 얼굴영상에서 524장은 얼굴인식에 성공하였고 26장은 얼굴인식에 실패하여 95.3%의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고 있다.

오인식된 얼굴영상의 결과를 분석해보면 거리변화에 대한 오인식은 나타나지 않아 크기정규화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z축 회전에 의한 오인식은 회전으로 인해 두 눈 중에 어느 하나만을 인식한 경우이고, y축 회전에 의한 오인식은 회전으로 인해 얼굴영역의 설정이 정확하지 않아 발생한 경우이다. 마지막으로 조명변화에 따른 오인식은 실험에 사용된 근적외선 카메라가 가시광선과 근적외선의 적분값에 반응하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시광선 조명을 완전히 차단한 영상에서 오인식을 하는 결과를 보였다.

실험결과를 분석해 보면 전체 오인식 중에 80.8%가 전처리과정에서 나타남을 알 수 있었고 조명 변화에 대한 오인식은 불과 19.2% 밖에 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조명변화에 따른 250장의 실험 영상에 대한 인식율은 98%의 높은 인식율을 나타내어 제안된 알고리즘 조명변화에 아주 강인하게 대응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그러나 축 회전에 의한 전처리 과정의 오인식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생각하면 3D 얼굴모형을 이용한 3차원 정규화를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V. 결론

얼굴인식 기술은 사람들의 생체정보를 이용하여 신원을 인식하는 생체인식 기술 중의 하나로서 사용자에게 특별한 접촉 및 행동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편의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조명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얼굴영상의 인식률 저하는 반드시 극복해야 될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근적외선 영상과 CS-MLDP를 이용하여 조명변화에 강인한 얼굴특징을 추출하였으

며,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얼굴인식을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얼굴인식 방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얼굴영상의 정규화를 통한 블록분할 특징추출 방법에서 얼굴요소가 항상 비슷한 블록 위치에 존재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것은 인식을 향상을 가져오는 주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둘째, 얼굴영역의 설정에서 얼굴요소의 위치에 대한 사전 지식을 기반으로 배경 부분을 제외하고 얼굴요소가 항상 일정한 위치에 충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얼굴영역을 설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셋째, 얼굴특징 추출과정은 본 논문에서 제안된 CS-MLDP 히스토그램 피쳐를 추출하였으며, 이는 기존 LDP의 단점을 보완함으로써 계산량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었다.

제안된 방법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축적된 CS-MLDP 히스토그램으로 템플릿을 추출하고 템플릿 매칭 모듈에서 템플릿 사이의 유사도를 비교하여 얼굴 인식결과를 도출하였다. 실험결과 제안된 방법이 조명변화에 영향 받지 않고 우수한 성능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축 회전에 의한 전처리 과정의 오인식을 제거하기 위하여 3D 얼굴모형을 이용한 3차원 정규화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 참고문헌

- [1] 김형근, 박철하, "얼굴의 구조적 정보를 이용한 얼굴영상의 복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NOU JOURNAL, Vol.65, pp.101-118, 2018.
- [2] A. U. Batur and M. H. III. Hayes, "Linear subspaces for illumination robust face recognition," Proceedings of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Computer Vision and Pattern Recognition, Vol.2, pp.296-301, 2001.
- [3] S. Du and R. Ward, "Wavelet-based illumination normalization for face recognition," Proceedings of IEEE International Conference Image Processing, Vol.2, pp.954-957, 2005.
- [4] V. Blanz and T. Vetter, "Face recognition based on fitting a 3d morphable model," IEEE Transactions on Pattern Analysis and Machine Intelligence, Vol.25, No.9, pp.1063-1073, 2003.
- [5] B. Horn, "Robot Vision," MIT Press, 1986.
- [6] 김형근, 박철하, "얼굴방향과 시선추적에 기반한 운전자 상태분석", 한국방송통신대학교, KNOU JOURNAL Vol.59. pp.63-80, 2015.
- [7] 홍은혜, 고병철, 변혜란, "PCA와 LDA를 이용한 실시간 얼굴 검출 및 검증 기법", 정보과학회 논문지:소프트웨어 및 응용, Vol.31, No.2, pp.213-223, 2004
- [8] R. Gross and V. Brajovic, "An image preprocessing algorithm for illumination invariant face recognition," Audio-and Video-Based Biometric Person Authentication, Springer Berlin Heidelberg, pp.10-18. 2003.
- [9] Ojala, T., Pietikäinen, M. and Harwood, D., "A Comparative Study of Texture Measures with Classification Based on Feature Distributions", Pattern Recognition Vol.29 No.1 pp.51-59, 1996.
- [10] 김동주, 손명규, 이상헌, "조명 변화 환경에서 이진패턴 영상을 이용한 얼굴인식 방법에 관한 연구", 전자공학회논문지-CI, Vol.49, No.2, pp.61-74, 2012.
- [11] Marko Heikkilä, M. Pietikäinen, C. Schmid, "Description of interest regions with local binary patterns", Computer Science, Pattern Recognit, ICVGIP, 2006
- [12] Kil-Taek Lim, Chulho Won, "Face Image Analysis using Adaboost Learning and Non-Square Differential LBP", Journal of Korea Multimedia Society Vol.19, No.6, pp.1014-1023, 2016.
- [13] 이상헌, "개선된 CS-LBP와 2차원 PCA의 차분성분을 이용한 조명변화에 강인한 안면 인식",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2.
- [14] Sung-Woo Choi, Oh-Seol Kwon, "Face Recognition using High-order Local Pattern Descriptor and DCT-based Illuminant Compensation", The Korean Institute of Broadcast and Media Engineers, Journal of Broadcast Engineering, Vol.21, No.1, pp.51-59, 2016.
- [15] T. Jabid, M.H. Kabir, and O. Chae, " Robust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based on Local Directional Pattern", ETRI J., Vol.32, No.5, pp.784-794, 2010.
- [16] Shan, C., Gong, S., and McOwan, P. W.,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based on Local Binary Patterns: A comprehensive study", Image and Vision Computing, Vol. 27, pp. 803-816, 2009.
- [17] Woong-Kyung Jung, Young-Tak Cho, Yong-Hak Ahn, Ok-Sam Chae, "A Study on Local Micro Pattern for Facial Expression Recognition", Korea Convergence Security Association, Vol.14, No.5, pp.17-24, 2014.

*** ABSTRACT ***

Face recognition technology is one of biometric technologies that recognize identity using people's biometric information, and has an advantage in terms of convenience because it does not require special contact and action from the user. However, the decrease in the recognition rate of facial images due to changes in lighting is a problem that must be overcome.

In this paper, we proposed a method for extracting features that are robust to lighting changes using near-infrared images and CS-MLDP (Center Symmetric-Modified Local Directional Pattern).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proposed method, the templates were extracted from the accumulated CS-MLDP histogram, and the similarity between the templates was compared in the template matching module to derive the facial recognition result.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method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without being affected by lighting changes.

예비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시민성 연구*

김 영 인**

A Study on Digital Citizenship of Prospective Youth Leaders

Kim, Young-In

◁ 목차 ▷

- | | |
|-------------|--------------|
| I. 문제 제기 | IV. 분석결과와 논의 |
| II. 디지털 시민성 | V. 맺음말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I. 문제 제기

컴퓨터, 인터넷의 보급으로 디지털 공간에서의 삶이 일상화 되었다. 대부분의 사람이 가상공간으로 불리는 디지털 공간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일상적인 활동을 하게 된 것이다. 특히 오늘날 휴대폰 사용의 보편화로 디지털 연결망 속에 일상적으로 위치하게 되면서 정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영역에서 획기적인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의 오프라인과 아날로그를 중심으로 한 민주주의 작동방식과 시민 생활에도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디지털 민주주의, e-민주주의, 디지털 시민, 네티즌 등의 새로운 개념의 등장이 단적으로 이를 나타낸다.

오프라인과 아날로그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민주주의 방식과 시민 생활은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지 않을 수 없어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크게 받으며, 시민 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생성과 유통, 소비도 일방향이적이다.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아 책임성이 제고되는 점이 있긴 하지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하여 공적 영역에 관여하고 참여하는 데 따른 비용이 많이 들어 이런 자원이 넉넉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의 공적 영역 참여가 쉽지 않다.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으로서 합리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한데 이런 정보는 대중매체를 장악한 집단에 의해 생산되어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전달되고 시민들은 이런 정보에 포획되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연구년제 학술연구비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교수

기 쉽다. 이런 구조와 토대 위에서 시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주의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시민성이 요구되어왔고, 이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민주주의와 시민 생활 방식이 보편화됨에 따라 기존의 오프라인과 아날로그 중심의 시민성 연구와 교육으로는 충분하지 않게 되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민주주의 작동방식과 시민 생활은 익명성, 참여의 용이성, 정보의 생산과 소비의 융합, 다차원적인 상호작용, 공간적 제약을 넘어선 글로벌화 등을 특징으로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삶은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참여와 협업, 디지털 기술 활용능력과 효능감 등을 필요로 한다. 이는 이전의 아날로그 중심의 오프라인 민주주의와 시민 생활 방식과는 전혀 다른 것이어서 질적으로 다른 시민성을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디지털 공간에서 시민으로서 삶에 필요한 새로운 시민성을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이라 한다.

디지털 시민성은 디지털 시대에 사는 모든 시민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이 중에서도 특히 청소년에게 필요하다. 청소년은 어떤 세대보다 디지털 공간에서 많이 활동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활동 모습을 청하여 네티즌, 사이버시민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런 모습을 잘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은 악플, 사이버불링, 사이버 중독, 인터넷 괴롭힘, 불법 복제, 인터넷 매매춘과 성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인터넷 도박 등 다양한 비시민적이고 반사회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사회문제화 되거나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장준오, 2003; 배상률, 박남수, 백강희, 2017). 이에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 중 하나는 디지털화에 필요한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함양이나 준비 없이 급격하게 디지털 공간에 진입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청소년에게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게 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하지만, 그들이 미래세대라는 점에서 미래사회를 위해서도 중요하다.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 중 중요한 요인 하나가 청소년지도자이다. 2018년 기준 서울 28개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한 청소년이 총 9,311,015명이다(서울특별시, 2019). 2018년 기준 전국 청소년수련시설이 800개라는 점을 감안하면(여성가족부, 2018), 청소년시설에서 청소년지도자를 만나 교육적 영향을 받는 청소년은 매우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수련시설뿐만 아니라 학교의 방과후교실, 여러 청소년 관련 사회단체 등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의 성장을 돕는다.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접촉은 통계수치에 드러난 것보다 많을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청소년은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당연히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특히 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시민성이 어떠하냐에 따라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에는 청소년지도자뿐만 아니라 예비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시민성도 중요하다. 예비청소년지도자는 장차 청소년지도자가 되기 위해 배움 등을 통해 준비하는 사람이고 시간의 장·단은 있겠지만 청소년을 지도할 지위를 확보할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비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시민성에 관해 알아보는 것은 이 결과를 활용하여 청소년지도자에 필요한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사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기에 유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3월 기준 국회전자도서관에서 청소년지도자(또는 예비청소년지도자)와 디지털 시민성을 검색어로 연구자료를 검색한 결과 청소년지도자 또는 예비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연구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2021년 2월 시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예비청소년지도자의 영향요인별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설명력과 영향 정도를 알아보려 한다.

II. 디지털 시민성

1. 디지털 시민성의 의미

오프라인과 온라인,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민과 디지털 시민, 시민성과 디지털 시민성은 짝을 이루는 개념이다. 지금까지 시민성 논의는 오프라인과 아날로그를 중심으로 한 시민이 지녀야 하는 시민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오늘날 디지털 기술과 공간의 발달에 따라 새로운 모습의 시민 유형이 나타난 바 이를 일반적으로 디지털 시민(digital citizens), 네티즌(netizen) 등으로 부른다. 디지털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시민으로서 권리 행사와 책무 이행, 경제적 이득의 확보 등을 위해 인터넷 또는 디지털 기술과 공간을 규칙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Mossberger, Tolbert & McNeal, 2008). 시민에게 시민성이 요구되는 것처럼 디지털 시민에게도 디지털 시민성이 요구된다. 디지털 시민성이 있어야 디지털 기술과 공간을 활용하여 개인의 권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함과 동시에 공동체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민성의 개념은 기존의 시민성 개념보다 익명성, 상호작용성, 자기실현성, 네트워크의 특징이 강하게 나타나는 디지털 기술과 가상공간 환경에서 등장한 것이기에(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3), 온라인세계에 참여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Mossberger, Tolbert & McNeal, 2008). 그렇지만 오늘날 시민성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는 좋은 시민성(good citizenship)의 관점에 입각하는 경향이 크다. 이때 좋은 시민성은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공공선 증진과 이를 위한 시민 관여(civic engagement), 정치참여, 시민적 덕성 등을 핵심 요소로 한다(Jones & Mitchell, 2016; Mossberger, Tolbert & McNeal, 2008; Sherrod, Flanagan & Youniss, 2002). 본 연구에서는 좋은 시민성 관점에 입각한 Gleason & Gillern(2018), Jones & Mitchell(2016),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2013) 등의 디지털 시민성 개념 정의를 참고하여, 디지털 시민성을 디지털 기술과 공간에 대한 이해와 활용능력을 토대로 디지털 기술환경에서 개인의 권익뿐 아니라 공공선 증진을 위하여 사회적 쟁점에 대해 비판적 관점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참여하며 책임지는 시민자질로 정의한다.

2.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요인

시민성이 그런 것처럼 디지털 시민성도 다차원적이고 복합적인 구성요인을 지닌다.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요인으로 Choi, Glassman & Cristol(2017)은 ICT 기술, 지역 및 지구 차원의 자각, 네트워킹 능력, 온라인 정치행동, 비판적 관점을, Jones & Mitchell(2016)은 온라인에서 타인존중행위, 온라인 시민 관여를 들고 있다. Ribble(2012)은 디지털 액세스, 디지털 소비, 디지털 의사소통,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에티켓, 디지털 준법, 디지털 권리·책임, 디지털 웰빙, 디지털 안전을, 황용석, 이현주, 박남수(2014)는 정보생산능력, 온라인 협업과 정보공유의 네트워킹 능력, 공동체 다양성 수용능력을 제시하였다.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2013)는 참여성, 관용성, 공공성을, 임영식, 정경은(2019)은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안전, 디지털 에티켓, 디지털 책임과 권리를, Kim & Choi(2018)는 인지적 요인(의사소통능력, 자율적판단능력, 합리적의사결정능력, 비판적사고능력), 정서적 요인(인간존중, 관용, 공동체의식, 책임, 배려), 행동적 요인(능동적 참여, 자율적 규제, 준법)을 들고 있다. 아울러 최문선, 박형준(2019)은 기술적 인터넷 활용능력, 지역사회 및 글로벌 쟁점 민감도,

온라인상 의사소통과 협업, 비판적 관점, 온라인 정치참여의 다섯 요인을 들고 이들은 위계적 수준을 이루어 뒤로 갈수록 높은 차원의 디지털 시민성 요인이 된다고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와 디지털 시민성 개념 정의를 참고하여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시민성 요인을 디지털 매체·기술 활용능력, 디지털 협업능력, 디지털 비판능력, 디지털 관용성, 디지털 정치참여로 본다. 디지털 매체·기술 활용능력은 디지털 시민성의 가장 기초를 이루는 것으로 디지털 기술과 매체에 대한 지식과 이해, 활용기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도구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협업능력은 디지털 공간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과 네트워킹을 바탕으로 협력하여 과업을 성취하는 역량을 의미하고, 디지털 비판능력은 디지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사안들을 합리성과 공공선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대안을 창출하는 역량이다. 디지털 관용성은 디지털 공간에서 나와 타인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수용하여 존중하면서 허용할 수 있는 역량이며, 디지털 정치참여는 디지털 기술과 공간을 활용하여 사회적 쟁점이나 의제에 능동적으로 관여하고 행동하는 역량이다.

3. 디지털 시민성의 영향요인

디지털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Choi, Glassman & Cristol(2017)은 인구학적 요인(성별과 연령), 인터넷 효능감, 인터넷 불안을, 최문선, 박형준(2019)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과 연령 등), 시민성교육, 인터넷 사용, 인터넷 효능감, 인터넷 불안을 들고 있다. 또 다른 연구에서 최문선, 박형준(2016)은 인구사회적 변인(성별과 연령 등), 인터넷 이용, 인터넷 효능감, 인터넷 불안을 영향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안정임, 서운경, 김성미(2013)은 인구사회학적 변인(성별과 연령 등), 미디어 교육경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들고 있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하면 디지털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인터넷 이용을 포함한 SNS 활용경험, 인터넷 자기효능감, 미디어교육, 시민성교육의 핵심인 주권자교육, 성별과 연령을 도출할 수 있다. 여기에 디지털 시민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디지털 격차를 추가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디지털 격차가 디지털 매체와 기술에의 접근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고 이 접근성에 따라 디지털 매체와 기술 활용능력의 격차가 발생하고 디지털 정치참여에서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Krueger, 2002; Sheerder, van Deursen & van Dijk, 2017; Emejula & McGregor, 2019). 구체적으로 장창기, 성욱준(2020)은 디지털 기기에서의 격차가 온라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연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시민성의 영향요인(독립변인)으로 SNS 활용경험, 인터넷 자기효능감, 디지털 격차, 미디어교육, 주권자교육을 설정하고 영향요인인 성별과 연령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한다.

SNS 이용경험은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한 경험 정도를 의미한다. 인터넷과 휴대폰이 일상화되면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현대인은 SNS를 자연스럽게 활용하고 있다. SNS 이용경험이 디지털 공간에서 의사소통과 협업, 온라인 정치참여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결과(최문선, 박형준, 2019)를 참조하면 SNS 이용경험이 여타의 디지털 시민성 요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 또는 자신감이다(박웅기, 박운정, 2009; Kahraman & Yilmaz, 2018). 인터넷 자기효능감은 지금까지 축적한 능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이 능력이나 기술을 미래에 활용할 수 있다는 자기 믿음이자 판단이다. 실제의 인터넷 관련 능력이나 기술과는 별개로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디지털 공간에

서의 활동 동기와 성과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문선, 박형준(2019)은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디지털 공간에서의 의사소통과 협업, 비판적 관점, 정치참여 등과 같은 디지털 시민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 미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Choi, Cristol, & Gimbert(2018)의 연구에서도 인터넷 자기효능감은 기술적 인터넷 활용능력, 지역사회및글로벌쟁점에 대한 민감도, 온라인상 의사소통 및 협업, 비판적 관점, 인터넷 정치참여와 같은 디지털 시민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제시되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인터넷 자기효능감은 디지털 시민성의 영향요인일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격차는 일반적으로 외적인 디지털 자원과 내적인 디지털 역량과 같은 디지털 자본의 불평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보격차라고도 하며 사회적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디지털 격차의 개념은 제1차 디지털 격차, 제2차 디지털 격차, 제3차 디지털 격차로 발전되어 왔다(Ragnedda, Ruiu & Addeo, 2020). 디지털 격차는 가장 먼저 인터넷 등과 같은 디지털 기기와 기술수단에 대한 접근(access) 여부에 따른 단순한 구분으로 시작되었고, 이를 제1차 디지털 격차라 한다. 물리적인 디지털 기기와 기술수단을 가진 자(집단)와 그렇지 못한 자(집단)의 구분은 사회경제적·문화적 불평등에 토대를 둔 것이다. 디지털 기기와 기술 수단의 보편화에 따라 제1차 격차보다는 이를 활용할 수 있는 기술과 지식과 같은 역량의 차이가 중요해지게 되면서 이를 개념화한 제2차 디지털 격차가 등장하였다. 오늘날에는 디지털 기기와 기술의 보유, 그리고 이들의 활용으로부터 얻는 성과와 이익의 차이가 불평등에서 중요해지게 되었다. 이 차이를 제3차 디지털 격차로 개념화하고 있다. 제1차, 제2차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자본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제3차 디지털 격차는 디지털 자본을 활용한 성과 개념이어서 간접적으로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2차 디지털 격차에 해당하는 디지털 역량은 디지털 시민성의 하위요소인 디지털 기술과 매체 활용능력과 유사한 개념이어서 제외하고, 제1차, 제3차 디지털 격차를 아울러 디지털 격차로 본다. 이와 같은 디지털 격차는 오늘날과 같은 디지털 사회에서 중요한 불평등 요소로서 디지털 기술과 매체의 활용능력, 디지털 비판능력, 디지털 정치참여 등과 같은 디지털 시민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미디어교육은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해독하며 미디어를 창의적으로 활용(소비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이다(박진우 외, 2012). 미디어 시대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미디어가 생활에서 활용되고 이를 통해 정보를 접하며 의사소통을 하는 현대인에게 필수적인 교육이다. 현대사회에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미디어를 선택하고 해석하며 활용할 줄 아는 주체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다양한 선거에서 드러나는 미디어의 영향력을 감안하면, 미디어와 관련된 시민성 함양의 필요성은 쉽게 수긍된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미디어교육은 시민성 함양을 위한 시민교육의 한 영역으로 실행되고 있다(박진우외, 2012). 미디어교육은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2013)의 연구 결과에서처럼 디지털 시민성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주권자교육은 정치활동을 포함한 공적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참여와 관련된 주권자로서 권리와 책임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와 자세 등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이다(이정희, 2017). 구체적으로 주권자로서 역할과 책임, 헌법 체계와 내용, 민주주의와 선거, 정치과정 등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주권자교육은 대표적인 시민교육의 영역으로 시민의 주권자 역량을 강화한다.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시민들의 정치참여가 아날로그 시대보다 용이해지면서 시민의 주권자 역량이 강조되고 있다. 아직 실증연구는 찾아보기 어렵지만, 시민들의 주권자 역량을 강화하는 주권자교육은 디지털 시민성 형성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서 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책임 수행은 아날로그 공간에서뿐 아니라 디지털 공간에서도 중요하고 이에

관한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포함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별과 연령은 인구학적 변인으로 다른 많은 연구에서처럼 디지털 시민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구에서 활용되는 성별 변인은 일반적으로 생물학적인 요인(sex)이라기보다는 사회문화적인 요인(gender)으로 볼 수 있다. 인류사가 형성된 이후로 성별에 따른 사회문화적인 역할, 교육, 인식 등에 차이 또는 차별이 있었고, 이것이 사회적인 능력이나 시민성의 형성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연령 또한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변인이다. 연령의 많고 적음은 사회적인 경험의 많고 적음을 의미한다. 경험학습 이론에 따르면 경험은 시민성을 비롯한 인간의 자질과 능력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연령은 기술이 급속하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는 것과도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젊은 세대일수록 변화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 새롭게 등장하는 디지털 지식과 기술의 습득과 활용에 익숙하다.

III. 연구방법

1. 측정도구

1) 디지털 시민성의 측정도구

디지털 시민성을 측정하는 도구는 25문항의 설문지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매체·기술 활용능력의 측정도구는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된 4문항으로 Choi, Glassman & Cristol(2017)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고 측정도구의 신뢰도 Cronbach's 알파는 .930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협업능력의 측정도구는 Choi, Glassman & Cristol(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문항을 바탕으로 리커트 5점 척도의 5문항을 구안하였고 Cronbach's 알파는 .791로 양호하였다. 디지털 비판능력의 측정도구로 Choi, Glassman & Cristol(2017)의 연구에서 사용한 7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하여 활용하였고 Cronbach's 알파는 .823으로 높게 나타났다. 디지털 관용성의 측정도구로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2013)에서 사용한 리커트 5점 척도의 3문항을 활용하였고 문항의 Cronbach's 알파는 .697였다. Cronbach's 알파 .697은 다른 영역에 비해 낮지만,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60 이상이면 수용할 수 있는 신뢰도 수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노경섭, 2019) 디지털 관용성 측정 문항은 활용할 수 있는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였다. 디지털 정치참여의 측정도구는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2013),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Choi, Glassman & Cristol(2017)을 참고하여 리커트 5점 척도의 6문항을 구안하여 사용하였고 Cronbach's 알파는 .856으로 높게 나왔다. 이상의 디지털 시민성의 측정도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디지털 시민성 측정도구

하위 요인	문항 내용	출처	문항수	Cronbach's α
디지털 매체·기술 활용능력	정보획득 인터넷 활용	Choi, Glassman & Cristol(2017)	4	.930
	앱 다운로드 인터넷 활용			
	목적 위해 기기와 기술 활용			
	수시로 인터넷 접속 가능			
디지털 협업능력	온라인 갈등 해결	Choi, Glassman & Cristol(2017)	5	.791
	온라인 의사소통			
	온라인 협동작업			
	온라인 공동작업 역할 수행			
	온라인 상 어려운 타인 도움			
디지털 비판능력	온라인 통해 공정성 실현	Choi, Glassman & Cristol(2017)	7	.823
	인터넷 사용 시 성찰			
	사회적 이슈에 대한 온라인 효과성 신뢰			
	온라인이 오프라인 참여 촉진			
	인터넷 통해 권력구조 성찰			
	온라인의 사회적인 관심 제고			
	사회저항에 온라인 활용			
디지털 관용성	온라인 의견 제시할 때 타인 이해 고려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2013)	3	.697
	의사결정 시 온라인 상의 타인 의견 고려			
	온라인 상의 반대이견 존중			
디지털 정치참여	온라인에 공공이슈에 대해 의견 제시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2013),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Choi, Glassman & Cristol(2017)	6	.856
	온라인 투표와 서명 등에 참여			
	문제 개선 위해 온라인 활용			
	온라인에 정책제안·건의·평가 등 참여			
	온라인 통해 지역사회 토론회 등 참여			
	공공이슈 관련 온라인 모임 참여			

2) 영향요인의 측정도구

디지털 시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측정도구는 29문항의 설문지이다. SNS 이용경험의 측정도구는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6)에서 활용한 리커트 5점 척도의 4문항으로 Cronbach's α 는 .789로 양호하였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의 측정 도구는 Eastin & LaRose(2000)가 사용한 5점 척도의 8문항이고 Cronbach's α 는 .929로 높게 나왔다. 디지털 격차의 측정 도구로 Ragnedda, Ruii, & Addeo(2020)를 참고하여 5점 척도의 6문항을 구안하여 사용하였고 Cronbach's α 는 .747로 양호하였다. 미디어교육의 측정 도구는 안정임(2013)의 3문항에 2문항을 구안하여 5점 척도의 5문항으로 하였고 Cronbach's α 는 .899로 높았다. 주권자교육의 측정 도구는 개념 정의를 바탕으로 5점 척도의 4문항을 구안하여 활용하였고 Cronbach's α 는 .956으로 높게 나왔다. 통제변인으로 설정한 성별은 남성과 여성으로, 연령은 30세 미만, 30~40세 미만, 40~50세 미만, 50~60세 미만, 60세 이상의 5등급으로 측정하였다. 이상의 영향요인 측정도구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영향요인 측정도구

구분		문항 내용	출처	문항수	Cronbach's α
독립 변인	SNS 이용경험	페이스북 등 이용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 원(2016)	4	.789
		카카오톡 등 이용			
		블로그 등 이용			
		카페 등 이용			
	인터넷 자기효능감	하드웨어 용어 이해에 자신	Eastin & LaRose(2000)	8	.929
		소프트웨어 용어 이해에 자신			
		하드웨어 기능 설명에 자신			
		인터넷 상 문제해결 자신			
		인터넷 작업 곤란 이유 설명			
		자료수집에 인터넷 활용 자신			
		인터넷 통해 학습 자신			
	디지털 격차	도움 필요시 인터넷 활용 자신	Ragnedda, Ruiu, & Addeo(2020)	6	.747
		디지털 기기 소유			
		인터넷 활용 기간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디지털 기술 가진 친구			
	미디어교육	디지털 기기 활용 이익 획득	안정임(2013)	5	.899
		디지털 기술 활용 성과			
		네티켓 등 교육			
		미디어 비판교육			
	주권자교육	미디어 제작교육	-	4	.956
		미디어 활용 참여교육			
		헌법교육			
		민주주의 교육			
통제 변인	성별	남, 여	-	1	-
		연령	-	1	-
		5등급의 연령대	-	1	-

2. 조사 참여자와 방법

자료수집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2021학년도 2월 졸업생 2,150명을 대상으로 2021년 2월 23일에서 3월 14일까지 모아폼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였다. 이 중 자료수집에 참여한 자는 265명이었다. 조사 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은 성별은 남 36명(13.5%), 여 229명(85.8%)이고, 연령대는 30세 미만 16명(6.0%), 30~40세 미만 27명(10.2%), 40~50세 미만 129명(48.7%), 50~60세 미만 74명(27.9%), 60세 이상 19명(7.2%)으로 나타났다.

3. 분석방법과 모델

디지털 시민성의 영향변인(독립변인, 통제변인) 영역별로 디지털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알아보기 위해 SPSS 26.0를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독립변인 영역별로 디지털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인구학적 배경, SNS 이용경험, 인터넷 자기효능감, 디지털격차, 미디어교육, 주권자교육을 각각 블록으로 설정하여 모델을 설정하였다. 구체적

으로 6개의 모델을 설정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변인 중 성별은 명목변수여서 더미변인으로 처리하여(여=1, 남=0) 분석하였다.

모델 1 : $y_1 = a + b_1$ 인구학적배경(성별, 연령)

모델 2 : $y_2 = a + b_1$ 인구학적배경(성별, 연령) + b_2 SNS 이용경험

모델 3 : $y_3 = a + b_1$ 인구학적배경(성별, 연령) + b_2 SNS 이용경험 + b_3 인터넷 자기효능감

모델 4 : $y_4 = a + b_1$ 인구학적배경(성별, 연령) + b_2 SNS 이용경험 + b_3 인터넷 자기효능감 + b_4 디지털 격차

모델 5 : $y_5 = a + b_1$ 인구학적배경(성별, 연령) + b_2 SNS 이용경험 + b_3 인터넷 자기효능감 + b_4 디지털 격차 + b_5 미디어교육

모델 6 : $y_6 = a + b_1$ 인구학적배경(성별, 연령) + b_2 SNS 이용경험 + b_3 인터넷 자기효능감 + b_4 디지털 격차 + b_5 미디어교육 + b_6 주권자교육

IV. 분석결과와 논의

독립변인 별 디지털 시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전에 먼저 회귀분석에 투입된 전체 독립변인 간 다중공선성을 검토한 결과 전체적인 분산팽창인자(VIF)의 범위는 1.014~2.033로 일반적인 기준치인 10(노경섭, 2019)보다 작고, 전체적인 공차한계(Tolerance)의 범위는 .492~.938로 일반적인 기준치인 .10(노경섭, 2019)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 디지털 매체·기술 활용능력에 대한 분석과 논의

디지털 매체·기술 활용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고 모델 1은 $p < .01$ 수준에서 유의하고 나머지 모델은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3> 디지털 매체 · 기술 활용능력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결과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통제 변인	성별 (여=1, 남=0)	-.043	-.048	-.004	-.021	-.024	-.023
	연령대	-.195**	-.145*	-.095	-.086	-.081	-.082
독립 변인	SNS이용경험		.339***	.192**	.172**	.175**	.178*
	인터넷 자기효능감			.322***	.242**	.252**	.245**
	디지털격차				.144*	.167*	.164*
	미디어교육					-.055	-.076
	주권자교육						.054
R^2		.038	.150	.227	.239	.241	.243
ΔR^2			.112	.077	.012	.002	.002
Model F ($df1$, $df2$)		5.156** (2, 262)	15.369*** (3, 261)	19.063*** (4, 260)	16.228*** (5, 259)	13.622*** (6, 258)	11.770*** (7, 257)

주: N=265, 회귀계수는 표준화계수(B)

* $p < .05$, ** $p < .01$, *** $p < .001$

<표 3>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인구학적 변인으로 구성된 모델 1은 디지털 매체·기술 활용능력 변량의 3.8%를 설명하였고, 모델 1에 SNS 이용경험을 투입한 모델 2의 변량 설명력은 15.0%로 모델 1에 비해 11.2%의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SNS 이용경험이 디지털 시민성의 하위요인인 디지털 매체·기술 활용능력의 변량을 11.2% 설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델 3의 변량 설명력은 22.7%로 모델 2에 비해 7.7%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모델 3에 새로 추가된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디지털 매체·기술 활용능력의 변량을 7.7%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4는 디지털 매체·기술 활용능력의 변량을 23.9% 설명하였다. 모델 3에 비해 설명력은 1.2% 증가하였는데 이는 모델 4에 새로 투입된 디지털 격차가 변량의 1.2%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5의 변량 설명력은 24.1%로 모델 4에 비해 0.2% 증가하여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모델 5에 새로 투입된 미디어교육의 변량 설명력이 0.2%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디어교육이 디지털 매체·기술 활용능력의 변량을 거의 설명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모델 6의 변량 설명력은 24.3%로 모델 5에 비해 0.2% 증가하였다. 모델 6과 모델 5의 설명력은 거의 같다고 할 정도로 그 차이는 미미하다. 이는 모델 6에 새로 투입된 주권자교육의 변량 설명력이 0.2%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디어교육처럼 주권자교육도 디지털 매체·기술 활용능력의 변량을 거의 설명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블록별 변량에 대한 설명력을 기준으로 하면 SNS 이용경험, 인터넷 자기효능감, 인구학적변인, 디지털 격차 순서로 크고 미디어교육과 주권자교육은 가장 작고 미미하다 할 수 있다. SNS 이용경험이 디지털 매체·기술 활용능력의 변량을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그리고 11.2%라는 상당히 큰 수준으로 설명하는 것은 행함으로써 배운다(learning by doing)는 경험학습이론이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숙달된다는 행동주의 학습이론에 기반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독립변인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터넷 자기효능감($\beta=.245, p<.001$), SNS 이용경험($\beta=.178, p<.01$), 디지털 격차($\beta=.164, p<.05$)의 순서로 나타났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SNS 이용경험이 높을수록, 디지털자신이 많을수록 디지털 매체·기술 활용능력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디지털 매체·기술 활용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결과는 기존의 최문선, 박형준(2019), Choi, Cristol & Gimbert(2018), Aesaert, Van Nijlen, Vanderlinde, & van Braak(2014)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 중 최문선, 박형준(2019)의 연구와 Choi, Cristol & Gimbert(2018)의 연구는 각각 한국의 교사와 미국의 교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교사는 청소년지도자와 유사한 역할과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어서 곧 청소년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예비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 본 연구결과와 일치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이자 곧 청소년지도자가 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예비청소년지도자들의 디지털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자기효능감을 제고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입각할 때, 디지털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SNS 이용경험을 늘리고 디지털 격차($\beta=.164, p<.05$)도 좁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겠다. 분석결과 중 주목할 점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 미디어교육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미디어교육의 중심적인 내용이 미디어에 대한 정보와 지식 습득, 미디어 콘텐츠 제작, 미디어 비판적 읽기인 점(김기태, 2010)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기대와는 상치되는 결과이어서 추후 연구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2. 디지털 협업능력에 대한 분석과 논의

디지털 협업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델 1은 유의하지 않았고 나머지 모델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4> 디지털 협업능력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결과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통제 변인	성별 (여=1, 남=0)	-.018	-.024	.046	.036	.037	.036
	연령대	-.050	.004	.084	.090	.089	.089
독립 변인	SNS이용경험		.372***	.137*	.124*	.123*	.122*
	인터넷 자기효능감			.517***	.468***	.465***	.469***
	디지털격차				.089	.083	.084
	미디어교육					.014	.024
	주권자교육						-.024
R^2		.003	.138	.336	.340	.340	.341
ΔR^2			.135	.198	.004	-	.001
Model F ($df1$, $df2$)		0.352 (2, 262)	13.942*** (3, 261)	32.875*** (4, 260)	26.727*** (5, 259)	22.200*** (6, 258)	18.993*** (7, 257)

주: N=265, 회귀계수는 표준화계수(β)

* $p<.05$, ** $p<.01$, *** $p<.001$

<표 4>의 결과를 보면, 모델 1에 SNS 이용경험을 투입한 모델 2의 변량 설명력은 13.8%로 모델 1에 비해 13.5%의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SNS 이용경험이 디지털 협업능력 변량의 13.5%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3의 변량 설명력은 33.6%로 모델 2에 비해 19.8%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모델 3에 새로 추가된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디지털 협업능력의 변량 중 19.8%를 설명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델 4는 디지털 협업능력의 변량을 34.0% 설명하였다. 모델 3에 비해 설명력은 0.4% 증가하여 설명력의 증가분이 매우 적었고 디지털 격차가 디지털 협업능력을 0.4% 설명하였다. 모델 5의 변량 설명력은 34.0%로 모델 4와 같았고 새로 투입된 미디어교육이 디지털 협업능력의 변량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모델 6의 변량 설명력은 34.1%로 모델 5에 비해 0.1% 증가하였다. 이는 모델 6에 새로 투입된 주권자교육의 변량 설명력이 0.1%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주권자교육도 디지털 협업능력의 변량을 거의 설명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블록별 변량에 대한 설명력을 기준으로 하면 인터넷 자기효능감, SNS 이용경험, 디지털 격차, 주권자교육 순서로 크게 나타났으나 디지털 격차와 주권자교육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하다.

독립변인 중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터넷 자기효능감($\beta=.469$, $p<.001$), SNS 이용경험($\beta=.122$, $p<.05$) 순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높고 SNS 이용경험이 많을수록 디지털 협업능력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디지털 협업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온라인상의 협업능력이 높아진다는 최문선, 박형준(2019)의 연구결과나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온라인상 의사소통 및 협업능력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Choi, Cristol & Gimbert(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커질수록 디지털 공간에서의 협업능력이라는 디지털 시민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최문선, 박형준(2016) 연구에서는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온라인상 협업능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서 단정 짓기에는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상치되는 연구결과가 있다는 점은 추후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SNS 이용경험이 많을수록 디지털 협업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SNS 포스팅 횟수가 온라인상 의사소통 및 협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최문선, 박형준(201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SNS 이용경험이 많다는 것은 SNS를 통해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을 많이 한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마찰과 갈등이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을 극복하고 결과적으로는 협업의 필요성을 자각하고 그 능력이 커졌다는 의미일 수 있다. 협업 능력은 오늘날 전문화되고 익명화되어 가는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능력으로 이를 증진하기 위해서 인터넷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SNS 이용경험을 많이 갖게 할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비판능력에 대한 분석과 논의

디지털 비판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모델 1은 유의하지 않고 나머지 모델은 모두 $p<.00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표 5> 디지털 비판능력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결과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통제 변인	성별 (여=1, 남=0)	-.008	-.012	.042	.032	.027	.028
	연령대	-.083	-.044	.018	.023	.030	.030
독립 변인	SNS이용경험		.267***	.085	.074	.080	.082
	인터넷 자기효능감			.400***	.355***	.373***	.367***
	디지털격차				.080	.118	.116
	미디어교육					-.092	-.109
	주권자교육						.044
R^2		.07	.077	.195	.198	.204	.206
ΔR^2			.007	.118	.003	.006	.002
Model F ($df1$, $df2$)		.906 (2, 262)	7.234*** (3, 261)	15.735*** (4, 260)	12.828*** (5, 259)	11.030*** (6, 258)	9.501*** (7, 257)

주: N=265, 회귀계수는 표준화계수(B)

* $p<.05$, ** $p<.01$, *** $p<.001$

<표 5>에 나타난 결과를 보면, 모델 1에 SNS 이용경험을 투입한 모델 2는 변량을 7.7% 설명하였으며 모델 1에 비해 0.7%의 미미한 설명력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SNS 이용경험이 디지털 비판능력의 변량을 0.7% 설명하는 것으로 그 정도는 매우 적다고 할 수 있다. 모델 3의 변량 설명력은 19.5%로 모델 2에 비해 11.8%의 증가를 보였다. 이는 모델 3에 새로 추가된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디지털 비판능력의 변량을 11.8%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4는 디지털 비판능력의 변량을 19.8% 설명하였다. 모델 3에 비해 설명력은 0.3% 증가한 것에 그쳤다. 모델 5의 변량 설명력은 20.4%로 모델 4에 비해 0.6% 증가하여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모델 5에 새로 투입된 미디어교육의 변량 설명력이 0.6%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미디어교육이 디지털 비판능력의 변량을 거

의 설명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미디어교육에는 미디어에 대한 비판적 사고를 포함하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모델 6의 변량 설명력은 20.6%로 모델 5에 비해 0.2% 증가하였다. 모델 6과 모델 5의 설명력은 거의 같다고 할 정도로 그 차이는 미미하다. 이는 모델 6에 새로 투입된 주권자교육의 변량 설명력이 0.2%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미디어교육처럼 주권자교육도 디지털 비판능력의 변량을 거의 설명하지 못함을 나타낸다. 블록별 변량에 대한 설명력을 기준으로 하면 인터넷효능감이 가장 크고 나머지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독립변인 중 디지털 비판능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터넷 자기효능감($\beta=.367$, $p<.001$)이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디지털 비판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최문선, 박형준(2019)과 Choi, Cristol & Gimbert(2018)의 기존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정보의 홍수라고 불릴 정도로 디지털 공간에 쏟아져 나오는 정보에서 옥석을 가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비판능력은 필수적인 시민성 요인이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연구결과나 다른 연구결과에 입각하면 인터넷 자기효능감을 제고하는 방안을 활용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분석결과 중 주목할 점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지만 미디어교육이 디지털 비판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이다. 최근의 미디어교육이 미디어 비판적 읽기에 중점을 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과 미디어 교육경험이 청소년의 비판적 사고 형성이나 비판적 사회의식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이원섭, 2014; 한상현, 오세섭, 2020)와 대비해서도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결과나 일반적인 기대와는 상치되는 결과이어서 추후 연구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4. 디지털 관용성에 대한 분석과 논의

디지털 관용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을 보면 모델 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모델2 ~ 6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표 6> 디지털 관용성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결과

변인 \ 모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통제 변인	성별 (여=1, 남=0)	.136*	.131*	.176**	.162**	.159**	.159**
	연령대	-.048	.002	.053	.061	.066	.066
독립 변인	SNS이용경험		.335***	.184**	.166**	.170**	.170**
	인터넷 자기효능감			.334***	.267***	.278***	.278***
	디지털격차				.120	.069	.146
	미디어교육					.040	-.060
	주권자교육						-.002
R^2		.022	.132	.214	.223	.225	.225
ΔR^2			.110	.082	.009	.002	-
Model F (df1, df2)		2.989 (2, 262)	13.246*** (3, 261)	17.744*** (4, 260)	14.831*** (5, 259)	12.488*** (6, 258)	10.663*** (7, 257)

주: N=265, 회귀계수는 표준화계수(β)

* $p<.05$, ** $p<.01$, *** $p<.001$

디지털 관용성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델 2는 변량의 13.2%를 설명하였다. 이는 모델 1에 비해 11.0%의 증가한 설명력으로 SNS 이용경험이 디지털 관용성 변량의 11.0%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3의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21.4%이고 모델 2에 비해 8.2% 증가하였다. 이는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변량의 8.2%를 설명하는 것을 의미한다. 모델 4의 설명력은 22.3%이고 모델 3에 비해 0.9% 증가하였다. 모델 4의 설명력 증가는 매우 미미하였으며 새롭게 추가된 디지털 격차가 디지털 관용성 변량을 거의 설명하지 못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모델 5의 설명력은 22.5%로 모델 4에 비해 설명력의 증가는 0.2%에 그쳤다. 설명력의 증가가 매우 미미한 것으로 새롭게 추가된 미디어교육이 디지털 격차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관용성 변량을 거의 설명하지 못함을 나타낸 것이다. 모델 6의 설명력은 22.5%로 모델 5와 같았다. 이는 새롭게 추가된 블록인 주권자교육의 변량 설명력이 없음을 나타낸 것이다. 블록별 디지털 관용성 변량에 대한 설명력을 기준으로 하면 SNS 이용경험, 인터넷 자기효능감, 디지털 격차, 미디어교육 순으로 나타났으나 디지털 격차와 미디어교육의 설명력은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하였다.

독립변인 중 디지털 관용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터넷 자기효능감($\beta=.278, p<.001$), SNS 이용경험($\beta=.170, p<.01$)이다. 이 결과는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커질수록, SNS 이용경험이 많아질수록 디지털 관용성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은 인터넷을 활용하여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자신감이 있을수록 나와 다른 타인의 차이에 대한 포용성이 높아질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그리고 SNS를 많이 이용할수록 나와 다른 차이에 대한 포용성이 커짐을 결과는 시사하는데 SNS를 통해 다양한 차이를 많이 접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차이에 대한 배척보다는 이해와 인정 능력이 커졌음을 추론할 수 있다. 분석결과를 보면 미디어교육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데 이는 청소년들에 대한 미디어교육이 디지털 시민성의 하위요인으로 설정한 관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안정임, 서운경, 김성미(2013)의 연구결과와 대비된다. 일반적으로 미디어교육은 규범적 성격을 가지고 디지털 공간에서의 차이에 대한 인정과 포용 능력을 기르고자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의외의 결과라 할 수 있고 추후 연구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5. 디지털 정치참여에 대한 분석과 논의

디지털 정치참여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결과는 <표 7>과 같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모델 1을 제외한 모델 2~6은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표 7> 디지털 정치참여에 대한 다중회귀 분석결과

변인		모델 1	모델 2	모델 3	모델 4	모델 5	모델 6
통제 변인	성별 (여=1, 남=0)	-.012	-.020	.026	.009	.022	.022
	연령대	.059	.130*	.182**	.191***	.172**	.172**
독립 변인	SNS 이용경험		.482***	.329***	.309***	.294***	.293***
	인터넷 자기효능감			.336***	.256***	.211**	.211**
	디지털격차				.142*	.038	.039
	미디어교육					.248***	.250***
	주권자교육						-.006

R^2	.004	.231	.314	.326	.367	.367
ΔR^2		.227	.083	.012	.041	-
Model F ($df1$, $df2$)	.496 (2, 262)	26.123*** (3, 261)	29.790*** (4, 260)	25.031*** (5, 259)	24.898*** (6, 258)	21.261*** (7, 257)

주: N=265, 회귀계수는 표준화계수(β)

* $p<.05$, ** $p<.01$, *** $p<.001$

<표 7>에 나타난 디지털 정치참여에 대한 분석결과를 보면, 모델 2는 변량에 대해 모델 1에 비해 22.7% 증가된 23.1%의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모델 2에 새롭게 투입된 SNS 이용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모델 3은 디지털 정치참여 변량에 대해 모델 2에 비해 8.3% 증가한 31.4%를 설명하고 있다. 이 증가된 설명력은 모델 3에 투입된 인터넷 자기효능감에 의한 것이다. 모델 4는 변량에 대해 32.6%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델 3에 비해 1.2% 증가한 것이다. 이 증가분은 모델 4에 새롭게 투입된 디지털 격차에 의한 것이다. 모델 5는 변량에 대해 36.7%를 설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델 4에 비해 4.1% 증가한 것이다. 이 증가분은 모델 5에 새롭게 투입된 미디어교육에 의한 것이다. 모델 6은 변량의 36.7%를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모델 5와 같은 수치여서 변화가 없는 것이다. 이 결과는 모델 6에 새롭게 투입된 주권자교육이 변량을 설명하는 영향력이 없음을 의미한다. 주권자교육은 주권자로서 참여에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와 가치 등을 함양하는 것이 핵심인데, 이런 교육이 디지털 정치참여 변량을 전혀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이다. 주권자교육을 측정하는 지표가 주권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 내용인 헌법, 민주주의, 주권자로서 역할, 선거권 행사에 관한 것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정치참여 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없다는 결과는 매우 예상 밖이어서 이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독립변인 중 디지털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SNS 이용경험($\beta=.293$, $p<.001$), 미디어교육($\beta=.250$, $p<.001$), 인터넷 자기효능감($\beta=.211$, $p<.001$) 순으로 나타났다. SNS 이용경험이 디지털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SNS를 통해서 정보를 획득할 때 인터넷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최문선, 박형준(2019)의 연구결과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활용경험이 온라인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모상현, 이창호(2012)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SNS 이용경험은 디지털 공간에서 정치참여에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게 하고 참여에 대한 동기를 촉진할 수 있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추론된다. 미디어교육이 디지털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는 미디어 리터러시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교육이 학교 청소년의 정치관심과 정치참여의식의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한상헌, 오세섭(202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고, 미디어 교육경험이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의 구성요인인 참여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2013)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오늘날은 미디어가 정보와 지식획득의 주요수단이자 의사소통의 주요 통로이기 때문에 미디어교육을 통한 미디어 역량이 커질수록 정치참여에 대한 관심과 행위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결과는 이런 점을 확인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디지털 정치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한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최문선, 박형준(2019)의 연구결과와 미국 교사를 대상으로 한 Choi, Cristol & Gimbert(2018)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인터넷 상의 자기 믿음과 자신감이 높을수록 디지털 공간에서의 정치참여 의지와 행위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렇지만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문선, 박형준(2016) 연구에서는 인터넷 효능감이 인터넷 정치참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연구결과도 있기에 이런 의미를 단정짓기는 무리라 조심스럽게 연구결과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분석결과 중 예상과 다른 점은 주권자교육이 디지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다. 주권자교육은 주권자로서 정치참여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미디어교육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각 교육이 추구하는 합목적성의 관점이나 합리적 추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와 유사한 연구결과가 대학 시절의 시민성교육 수강이 교사의 인터넷 정치참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최문선, 박형준, 2019)가 있긴 하지만, 본 연구결과처럼 미디어교육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에 반해, 주권자교육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른 것이어서 선행연구 결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이에 대한 추후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논의할 것은, 디지털 격차가 디지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이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시대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격차보다는 디지털 격차가 정치참여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 즉 디지털 격차가 디지털 정치참여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어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아도 디지털 자본(디지털 기기의 소유와 운용) 수준이 낮으면 디지털 정치참여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이것의 역도 성립한다고 한다(Krueger, 2002). 또한 19세 이상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장창기, 성옥준, 2020)에서 디지털 기기의 보유와 운용기술, 활용동기에서 격차는 온라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연구 결과를 보더라도 디지털 격차가 디지털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의외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추후 연구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V. 맺음말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변량에 대한 설명력과 종속변인에 대한 영향을 유의미한 것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디지털 시민성에 대한 위계적 다중회귀 분석결과 요약

영향요인		디지털매체·기술활용능력	디지털협업능력	디지털비판능력	디지털관용성	디지털정치참여
설명력	SNS이용경험	.112	.135	.007	.110	.227
	인터넷자기효능감	.077	.198	.118	.082	.083
	디지털격차	.012	.004	.003	.009	.012
	미디어교육	.002	-	.006	.002	.041
	주권자교육	.002	.001	.002	-	-
영향	SNS 이용경험	.178	.122	-	.170	.293
	인터넷효능감	.245	.469	.367	.278	.211
	디지털격차	.164	-	-	-	-
	미디어교육	-	-	-	-	.250
	주권자교육	-	-	-	-	-

<표 8>을 보면 디지털매체·기술활용능력의 변량 설명력에 있어서는 SNS 이용경험이 11.2%로 가장 컸고 그 다음이 인터넷 자기효능감 7.7%, 디지털 격차 1.2% 순이었다. 나머지 미디어교육과 주권자교육도 유의하긴 했지만, 그 정도는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미미했다. 디지털매체·기술활용

능력에 대해 미치는 영향요인의 효과를 보면 인터넷 자기효능감(.245), SNS 이용경험(.178), 디지털 격차(.164) 순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요인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디지털 시민성의 하위요인인 디지털매체·기술활용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자기효능감, SNS 이용경험, 디지털 격차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 인터넷 자기효능감과 SNS 이용경험을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과 조건을 만들고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자산을 더 많이 갖도록 할 수 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협업능력의 변량에 대해서는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19.8%를 설명하였고 그 뒤를 이어 SNS 이용경험이 13.5%를 설명하였다. 디지털 격차와 주권자교육도 유의한 변량 설명력을 보였지만 그 정도는 매우 작아 고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고, 미디어교육은 유의하지 않았다. 디지털 협업능력에 대해 영향요인이 미치는 효과를 보면 인터넷 자기효능감(.469), SNS 이용경험(.122)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종합하면 인터넷 협업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자기효능감을 제고하고 SNS 이용경험 기회를 증진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디지털 비판능력의 변량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영향요인 모두 유의미하였지만, 의미 있는 크기의 설명력을 지닌 것은 인터넷 자기효능감(11.8%)이라고 할 수 있다. 영향요인 중 디지털 비판능력에 미치는 효과 중 유의한 것 역시 인터넷 자기효능감(.367)이었다. 이 결과는 인터넷 비판능력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인터넷 자기효능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디지털 관용성의 변량에 대해서 SNS 이용경험, 인터넷 자기효능감, 디지털 격차, 미디어교육이 유의한 설명력을 보였지만 이 중 의미 있는 크기를 지닌 것은 SNS 이용경험(11.0%), 인터넷 자기효능감(8.2%)이라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관용성에 대해 영향요인이 미치는 효과를 보면 인터넷 자기효능감(.278), SNS 이용경험(.170)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에서 디지털 관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인터넷 자기효능감을 높이고 SNS 이용경험을 많이 주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디지털 정치참여의 변량에 대해서는 SNS 이용경험이 22.7%를 설명하여 가장 높았고, 인터넷 자기효능감 8.3%, 미디어교육 4.1%, 디지털 격차 1.2% 순으로 설명하였다. 영향요인이 디지털 정치참여에 미치는 효과는 SNS 이용경험(.293), 미디어교육(.250), 인터넷 자기효능감(.211) 순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디지털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SNS 이용경험, 미디어교육, 인터넷 자기효능감이라는 요인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SNS 이용경험을 많이 제공하여 디지털 정치참여 시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표 8>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디지털 시민성 제고를 위해서는 인터넷 자기효능감과 SNS 이용경험에 주목하고 이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구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디지털 시민성 다섯 가지 하위요인들을 제고시키는 데 인터넷 자기효능감과 SNS 이용경험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이런 결과는 디지털 시민성 하위요인을 기술적 인터넷 활용능력, 지역사회 및 글로벌 쟁점에 대한 민감도, 온라인상 의사소통 및 협업, 비판적 관점, 인터넷 정치참여의 다섯 가지로 분류한 최문선, 박형준(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특히 인터넷 자기효능감이 디지털 시민성 제고에 전반적으로 가장 효과가 있는 요인임을 확인한 것은 Choi, Cristol & Gimbert(2018)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따라서 (예비) 청소년지도자의 디지털 시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할 필요가 있으며, 많은 SNS 이용경험을 가지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SNS 이용경험이 디지털 비판능력에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관성적이고 기계적인 SNS 이용으로부터 기인되었을 가능성이 크지만, 단정 짓기는 어렵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디지털 정치참여와 관련해서 미디어교육은 영향을 미치지지만 주권자교육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하기 어렵다. 주권자교육의 핵심은 민주주의 공동체의 주인으로서 시민의 정치참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도 디지털 시민성 관련 연구에서 향후 추가로 분석되고 탐구되어야 할 영역으로 생각한다.

■ 참고문헌

- 김기태(2010). 한국 미디어교육연구 실태 및 경향 분석연구. 인문사회과학연구 29, 170~204.
- 노경섭(2019). 논문통계분석. 서울 : 한빛아카데미.
- 모상현, 이창호(2012). 청소년의 온/오프라인 정치참여/비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인 탐색. 시민청소년학연구, 3(1), 41~64.
- 미래창조과학부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6디지털정보격차시대조사 측정도구.
- 박웅기, 박윤정(2009). 인터넷 자기효능감과 인터넷 정보격차의 관계에 관한 연구 : 부모와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3(2), 395~435.
- 박진우, 황치성, 김기태, 설규주, 이영주(2012).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과 쟁점, 한국언론진흥재단, 연구서 2012-07.
- 배상률, 박남수, 백강희(2017). 청소년 사이버일탈 유형별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 17-R06.
- 서울특별시(2019.7.24). 2018년 4분기 청소년이용실적.
<https://opengov.seoul.go.kr/public/view/?nid=18310691>
- 안정임(2013), “연령집단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수준 비교 연구”, 학습과학연구, 제 7권, 제1호, pp.1-21.
- 안정임, 서윤경, 김성미, (201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에 관한 연구: 미디어 리터러시와 교육경험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5권 2호, 161~191.
- 여성가족부(2018). 2018 청소년백서.
- 이정희(2017). 일본에서의 주권자 교육: 부교재 ‘우리가 이끌어가는 일본의 미래’ 분석을 중심으로-. 글로벌교육연구, 제 9집 4호, 83~104.
- 임영식, 정정은(2019). 청소년디지털시민성척도개발. 청소년학연구, 26(9), 495~522.
- 장준오(2003). 사이버상의 청소년 일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3~2036.
- 최문선, 박형준(2019). 교사의 디지털 시민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 : 시민교육에의 함의. 시민교육연구, 제51권 1호, 275~310.
- 최문선, 박형준(2016). 대학생의 디지털 시민성에 영향을 주는 변인. 시민교육연구, 48(3), 273~297.
- 황용석, 이현주, 박남수(2014). 디지털시민성의 위계적 조건이 온·오프라인 시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디지털 시민능력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25(2), 493~520.
- 한상현, 오세섭(2020), 미디어교육이 사회의식에 미치는 효과 연구,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10(3), 1~20.
- 이원섭(2014). 미디어교육경험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비판적 사고성향에 미치는 영향 : 중고등학생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4(10), 795~809.
- 장창기, 성욱준(2020), 온라인 정치참여에서 디지털 정보격차의 영향: 디지털 기기 이용자의 기기운용기술격차를 중심으로. 정보화정책, 27(1), 36~54.
- Aesaert, K., van Nijlen, D., Vanderlinde, R., & van Braak, J. (2014). Direct measures of digital information process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n primary education: Using item response theory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CT competencescale. Computers & Education, 76, 168~181.

- Choi, M., Cristol, D., & Gimbert, B. (2018). Teachers as digital citizens: The influence of individual backgrounds, internet use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n teachers' levels of digital citizenship. *Computers & Education*, 121, 143~161.
- Choi, M., Glassman, M. & Cristol, D. (2017). What it means to be a citizen in the internet age: Development of a reliable and valid digital citizenship scale. *Computer & Education*, 107, 100~112.
- Eastin, M., & LaRose, R. (2000). Internet Self-Efficacy and the Psychology of the Digital Divide.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6(1).
<https://doi.org/10.1111/j.1083-6101.2000.tb00110.x>
- Emejulu, A., & McGregor, C.(2019). Towards a Radical Digital Citizenship in Digital Education. *Critical Studies in Education*, 60(1), 131~147.
- Gleason, B., & von Gillern, S. (2018). Digital Citizenship with Social Media: Participatory Practices of Teaching and Learning in Secondary Education.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21 (1), 200~212.
- Jones, L.M. & Mitchell, K.J. (2016). Defining and measuring youth digital citizenship. *New media & society*, 18(9), 2063~2079.
- Kahraman, S. & Yilmaz, Z. A. (2018). In-Service Teachers' Internet Self-Efficacy: A Re-Examination of Gender Difference. *TOJDE*, 19(2), 72~85.
- Kim, M. & Choi, D. (2018). Development of Youth Digital Citizenship Scale and Implication for Educational Setting.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 Society*, 21(1), 155~171.
- Krueger, B. (2002). Assessing the Potential of Internet Political Participation in the United States:A Resource Approach. *American Politics Research* 30(5), 476~498.
- Mossberger, K., Tolbert, C. J., & McNeal, R. S. (2008). Digital Citizenship. *The Internet, Society and Participation*. Massachusetts : The MIT Press.
- Ragnedda, M., Ruiu, M. L., & Addeo, F. (2020). Measuring Digital Capital : An Empirical Investigation. *New Media & Society*, 22(5), 793~816.
- Ribble, Mike (2012) Digital Citizenship for Educational Change, *Kappa Delta Pi*.
- Sheerder, A., van Deursen, A., & van Dijl, J.(2017). Determinants of Internet Skills, Uses and Outcomes. A Systematic Review of the Second- and Third-Level Digital Divide. *Telematics and Informatics*, 1~18.
- Sherrod, L. R., Flanagan, C., & Youniss, J. (2002). Dimensions of Citizenship and Opportunities for Youth Development: The What, Why, When, Where, and Who of Citizenship Development. *Applied Developmental Science*, 6(4), 264~272.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amine the variable explanatory power and degree of influence of the factors that affect the digital citizenship of prospective youth leaders. Sub-factors of digital citizenship were classified into digital media and technology utilization ability, digital collaboration ability, digital critique ability, digital tolerance, and digital political participation. Influencing factors were classified into experience of using SNS, internet self-efficacy, digital divide, media education, and sovereign education. Gender and age were set as control variables. Based on the questionnaire,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graduates of KNOU's Youth Education Department in February 2020.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terms of the ability to use digital media and technology, the variable explanatory power was the greatest in the experience of using SNS, and the effect was found to be in the order of internet self-efficacy, experience of using SNS, and digital divide. In terms of digital collaboration ability, the internet self-efficacy had the greatest effect on the variable explanatory power, and the effect was found in the order of internet self-efficacy and experience of using SNS. In terms of digital critique ability, internet self-efficacy had the greatest effect on variance explanatory power, and only internet self-efficacy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In terms of digital tolerance, the variable explanatory power of experience of using SNS was the greatest, and the effect was found to be in the order of internet self-efficacy and experience of using SNS. In terms of digital political participation, the explanatory power of variance was the largest in experience of using SNS, and the influential effect was experience of using SNS, media education, and internet self-efficacy in that order. Combining the analysis results, the factors that have the strongest influence on digital citizenship are internet self-efficacy and experience of using SNS.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digital citizenship of prospective youth leader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internet self-efficacy and experience of using SNS.

Key Words : digital citizenship, experience of using SNS, internet self-efficacy, digital divide, media education, sovereign education, prospective youth leaders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청소년지도자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 비교를 중심으로*

주경필**

Analysis of Research Trend on Youth Workers Using Keyword Network Analysis:
 Focusing on Comparing Research on between Youth Leaders and Youth Counselors

Kyoung-phil Joo

◁ 목차 ▷

I. 서론	V. 결론 및 논의
II. 선행연구 고찰	참고문헌
III. 연구방법	논문초록
IV. 연구결과	

I. 서론

하나의 전문적인 실천분야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이 필요한데, 그 중 중요하게 다뤄지는 자원이 바로 인적 자원이다. 교육에서는 교사가, 사회복지실천에서는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으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듯, 청소년사업(youth work) 분야에서는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가 실천직(職)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사업의 효과와 성패를 가르는 핵심적인 기제이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로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책무를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 법률에서 청소년을 위한 실천 사업의 핵심 영역으로 명시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의 청소년사업 영역에서 전문적인 역량과 윤리를 바탕으로 효과적으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청소년지도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청소년사업의 주체인 청소년지도자를 주제로 한 연구는 다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져 왔다. 청소년지도자를 탐구한 연구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종합하면, 그 과정과 결과로서 청소년사업이라

* 이 논문은 2020학년도 4분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부교수.

는 연구 및 실천 분야에 대한 다방면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특히 1991년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서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제화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와 달리 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인 인정이 미흡하다는 점에서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연구물의 통합적인 분석을 통해서 향후 한국 사회에서 전문직으로의 확립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논의하는 작업은 중요한 과제이다.

청소년지도자 관련 연구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최근 청소년 연구분야에서 청소년지도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인식되어 온 핵심어가 무엇이며, 핵심어를 기초로 다른 어떤 연구들이 연구되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실천 분야 전반에서 청소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소양, 윤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고, 청소년지도자들이 직면한 직업적 현실을 탐색함으로써 개선과제에 관한 논의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정의) 제7호에서 청소년지도자는 가) 청소년지도사, 나)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다)목은 포괄적으로 인정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정의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문직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자를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로 정의하고, 크게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에 관한 연구물을 검색하여 청소년지도자 연구동향 분석을 시도하였다.

요컨대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폭넓고 다양한 연구물들을 종합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연구주체의 추이 분석, 연구결과의 통합, 그에 대한 성찰과 향후 연구방향 제시 등을 위한 연구동향 분석은 중요한 작업이다. 이때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특정 사업이나 청소년실천 분야에 집중한 연구동향을 분석하거나 연구자가 논문의 내용 영역, 연도, 방법 등에 관한 범주를 정하여 빈도를 중심으로 한 수량적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연구주체들 간의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keyword network analysis)의 활용은 핵심어 간의 관계성을 중심으로 연구동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용하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인공지능, 기술경영 등 신기술 영역과 의료, 조직, 문헌 등에 관한 정보학(information studies)에서 주로 활용되다가 최근에는 교육학(박선훈, 박은혜, 2014; 박신희, 2015), 유아교육(정혜영, 정혜영, 손유진, 2015) 등의 영역에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청소년 연구 분야에서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이 확산되어 활용되었는데, 대표적으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연구동향 분석(홍세희 외, 2019), 탈북 청소년 적응 관련 논문 분석(박인하, 2020), 학교폭력예방 관련 연구동향 분석(김미숙, 박미경, 고광숙, 김성길, 2021), 청소년지도자 관련 연구동향 분석(정미나, 문호영, 2019) 등이 있다.

청소년지도자를 주제로 한 연구는 1987년 「청소년 육성법」 제정 직후인 1988년에 발간된 류태영(1988)의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자 활동실태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청소년 육성법」 확대 계승한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된 1991년에 발간된 유경재(1991)의 '청소년지도자의 실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2년에 발간된 이상태(1992)의 '청소년사회화와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이 초기 연구물이다. 당시 현재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인 한국청소년연구원(1991, 1992)에서 청소년지도자 양성방안과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연구, 연수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분야에서 발간된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연구물들의 논문 키워드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동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지도자의 법률적 정의 중 전문직으로서 전문자격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관한 연구

동향 비교를 통해서 청소년사업 전문가로서의 두 전문자격이 지니는 특징을 상대적으로 분석하여 청소년사업 전문직으로서 공통의 특성과 각 전문자격의 특유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도출하여 논의하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이를 통해 청소년지도자 관련 연구의 동향에 나타난 특징에 관해 논의하고 향후 청소년사업 실천분야에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포함한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방향 및 제도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미래사회의 주역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청소년 연구분야의 발전 방향에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II. 선행연구 고찰

1. 청소년사업의 실천적 특성

청소년사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개념정의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Emslie, 2013). 청소년사업이라는 실천 영역에서 수행되는 일, 근간이 되는 관점, 직무 및 조직의 환경 등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청소년사업은 그 자체가 다양성을 내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Wood, Westwood, & Thompson, 2015). 주경필(2014)은 미국 청소년사업의 실천적 특징을 다양한 지자체 사업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공공성과 다양성이라고 도출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사업은 느슨하고 때로는 모호한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지만, 하나의 전문적 실천활동으로 공공성과 다양성을 고유한 특성으로 갖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시대와 청소년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수행되어 왔고, 청소년사업이 작동하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맥락에 막대한 영향을 받아 왔다(Ord, 2007).

Wood, Westwood와 Thompson(2015)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서비스 분야와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서 청소년사업은 다음과 같은 실천적 특징을 지닌다고 강조한다. 첫째, 청소년사업은 교육적 실천이다. 청소년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의 무형식학습이 발생하도록 적절한 방법과 활동이 이루어진다. 이처럼 무형식학습이 강조되어 청소년사업은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조력하는 무형식교육의 성격을 본질적으로 갖는다. 무형식교육에 대한 접근은 사전에 결정되어 고정된 학습목표를 갖고 수행되는 형식교육과는 대조적으로, 청소년의 삶 그 자체에서부터 시작하여 청소년들이 다양한 성장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청소년사업은 사회적 실천이다. 청소년기의 특성 상 또래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청소년사업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치, 태도, 행동을 타인과 함께 공존하는 맥락에서 상호작용하도록 하는 일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셋째, 청소년사업은 사회정의의 추구를 한다. Banks(2010)는 청소년사업을 규정하는 핵심 윤리강령 중 하나로 청소년과 사회 전체를 위한 사회정의 구현을 꼽았다. 청소년사업은 개인적·문화적·구조적 제약에 의해 배제되거나 소외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청소년들이 공정한 성장기회를 갖는 것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사회구조적인 차별과 억압에 반대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활동이 수행된다. 넷째, 청소년사업은 자발적 실천이다. 학교교육이 제도적으로 규정된 의무인 반면, 청소년사업은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로 수행된다. 때로는 이러한 자발적 참여 원리가 청소년의 동기부여 부족과 같은 문제를 발생시키나(Ord, 2007),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청소년은 청소년사업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 달성이 어렵다. 다섯째, 청소년사업은 복지적 실천이다. 특히 사회복지에서 추구하는 인권과 평등을 지향하여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는 것을 제약하는

개인적·사회적 행동과 환경에 대처하는 일들이 수행된다.

이러한 청소년사업은 매우 다양한 실천활동을 수반한다. 또한 활동의 다양성뿐 아니라 다양한 환경이나 맥락에서 청소년사업이 수행되고, 그 형태는 무형식적인 것과 형식적인 것을 모두 포괄한다. 청소년사업 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청소년 또한 매우 다양하다. 연령 측면에서는 10세 전후에서부터 20대 초중반까지를 포함하며, 청소년들의 사회적 배경과 성격적 특성까지 표준화된 청소년사업을 적용하는 것은 기대했던 실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실천의 포괄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청소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청소년사업실천직이 하나의 전문직으로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데 표준화된 역량을 규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청소년사업의 전문화에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한다(Cossee et al., 2009). 서구에서는 이러한 점 때문에 청소년사업이 정체성 위기를 경험했다는 논의가 폭넓게 이루어져 왔다.

정체성 위기에 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앞세워 청소년사업은 서구의 다양한 나라에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 특히 공공성이라는 본질적 특성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공공적 시민단체 중심으로 청소년사업의 전문화가 이루어졌다(주경필, 2014). 예컨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청소년사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훈련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유럽의회(European Council)에서 청소년분야의 파트너십을 논의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하고 청소년사업 전문화를 핵심 아젠더로 상정하였다(Emslie, 2013). 이에 발맞춰 잉글랜드의 유럽커뮤니티회, 스코틀랜드의 CDL기준의회, 우에일즈의 Llywodraeth-Cymru Welsh 정부, 북아일랜드의 청소년의회가 통합적으로 청소년사업에 대한 전문적 국가직업표준을 제정하였다(National Youth Agency, 1997). 또한 프랑스는 청소년부에서 청소년사업의 전문화를 공표하였고, 캐나다는 아동청소년관리협회를 중심으로 한 직업 규정을 정부가 공식화하였으며, 미국은 다양한 주 정부 및 지자체, 전문가 단체 등을 통해서 청소년사업의 전문화가 진행되었다(Krueger, 2005). 이처럼 서구사회에서 청소년사업은 전문화를 통해서 전문직으로서 확립되었고 사회적으로 하나의 중요한 사회서비스 분야로 인식되었다.

한국사회에서 청소년사업이 하나의 전문직 영역으로서 형성된 시점은 이 실천분야에 대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시작한 1990년 전후로 볼 수 있다. 1991년 제정된 「청소년 기본법」에서 법률의 제정목적을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육성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과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공공 영역에서 청소년사업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필요하고, 이를 동 법률에서는 '청소년지도자'로 명명하여 이들의 역할을 '수련시설, 청소년단체, 기타 청소년관련기관등에서 청소년육성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고 규정하였다. Greenwood(1957)는 '전문직의 속성(attributes of profession)'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전문직과 비전문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해당 직업을 규정하는 총체적 지식의 유무와 그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역량을 소유한 전문가 그룹이 구성되었는지를 꼽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대학에서 청소년 관련 학과가 만들어지면서 총체적 지식이 형성되어 왔고 제도적으로 전문가를 양성하는 체계를 일찍이 갖추어진 점으로 비추어보아 청소년사업의 전문화가 근래 30년 동안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주경필, 2014).

2.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자는 급변하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청소년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효과적

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지도기법 및 자질을 갖춘 전문가이다(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서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그리고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때, ‘청소년육성’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요컨대,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청소년활동 등의 영역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사람이라고 하겠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자를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전문직으로 청소년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 특정하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두 개의 자격 외에도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 종사자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자격은 검정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는 「청소년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자격체계를 명시하여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국가전문자격으로서의 위상을 보유하고 있다. 청소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는 2020년까지 총 58,019명(1급 청소년지도사 1,972명, 2급 청소년지도사 41,684명, 3급 청소년지도사 14,363명)이 배출되었고,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소지자도 26,364명이 배출되었다(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의 양성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1993년부터 국가공인 청소년지도사가 양성되어 왔다. 청소년지도사는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청소년관련 분야의 경력이나 기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소정의 연수를 마친 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정부의 청소년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이 실시된다. 그리고 자격검정에 합격하면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연수를 수료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부여된다. 청소년시설과 단체에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에 의해 청소년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지도사가 지속적인 역량강화 및 자질향상을 하도록 2013년부터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수교육은 청소년정책 및 권리교육, 성평등교육, 아동학대신고 의무자 교육, 청소년활동과 안전, 기타 청소년 현장에서 요구되는 자질과 덕목 등에 관한 과목으로 운영된다(여성가족부, 2020).

한편 청소년상담사도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에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상담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하는 자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상담사는 정부산하 기관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의 학생상담센터,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기타 청소년의 범죄나 비행을 다루는 경찰청이나 법무부 산하 기관 등에서 청소년상담 업무에 종사한다. 청소년상담사도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1, 2, 3급으로 구분되며 상담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상담실무 경력이나 기타 자격을 갖춘 자로서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10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자에게 부여된다. 청소년상담사의 양성은 여성가족부의 주관으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하여 자격검정이 실시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0). 청소년지도사와 마찬가지로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배치대상 청소년시설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청소년상담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는 역량강화와 자질향상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청소년지도자가 청소년사업이라는 전문직에 종사하는 전문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Roberts(2009)는 전문직 윤리를 강조하였다.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가는 자신들의 실천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관한 윤리적 철학과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 청소년과 함께 실천해 나가며 그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무형식학습을 촉진해야 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복잡하고 모호한 상황적 맥락에 철하기 쉽기 때문에(Roberts, 2009), 실천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정의에 반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하는 등 전문직으로서 가치와 윤리를 명확히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지도자는 자신의 업무가 발생하는 직무스트레스를 적절히 관리하여 소진을 방지하고 청소년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기개발이 필요하다(Bowie, 2008).

Ⅲ. 연구방법

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네트워크는 사물이나 인간의 상호연결로(이수상, 2013), 사회적 존재인 인간이 다른 인간이나 사물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가치를 네트워크로 모델링하고 분석하는 것이 네트워크 과학이다. 사회과학에서 네트워크과학은 상호작용과 상호연계성을 연구하는데, 언어로 표현된 지식 간 또는 특정한 지식 안의 상호작용과 상호연계성을 분석하는 것을 지식 네트워크라 한다. 지식네트워크는 단어와 단어의 결합을 통한 의미를 분석하는 것으로 선행연구 안의 다양한 정보들(저자 및 기관정보, 참고문헌 인용관계, 서지정보 등)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지식 네트워크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박치성, 정지원(2013)은 지식 네트워크의 형태로서 텍스트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것은 텍스트 안에 존재하는 단어들이 과학적 엄격성의 기준에 의해 연관성이 분석되는 과학계량학에 속하는 작업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는 지식 네트워크의 분석대상을 학술논문의 텍스트 안에 명시된 키워드로 삼았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들은 수많은 상호작용을 통한 의미를 창출하게 되는데(박치성, 정지원, 2013), 이 연구에서 분석대상으로 사용되는 키워드도 역시 일종의 언어이다. 키워드는 연구자가 독자와 공유하고자 하는 의미의 산물이기 때문에, 분석자가 임의적으로 키워드를 부여하는 행위와 달리 연구자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바를 훼손하지 않고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키워드들이 연결되고 구조화되어 일정한 군집(cluster)을 형성하게 되면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은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의 일종인데,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이란 언어와 언어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언어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텍스트에서 도출된 언어들 사이의 연결과 개념들의 연결망을 추출하는 방법론이다(Diesnet & Carley, 200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개별 연구물에서 보이지 않았던 상대적 영향력의 크기가 파악되어 종합적인 우선사항을 파악할 수 있고, 주요한 개념들 간의 관계 속에서 각 개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구조적 분석도 할 수 있다(박치성, 장지원, 2013).

키워드 간의 네트워크의 특성을 밝히기 위해서 밀도(density), 집중도(centralization), 중심성(centrality), 키 플레이어(key-player) 분석 등이 활용된다(Freeman, 2008). 우선 밀도는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노드들의 연결성을 의미하는데(손동원, 2002), 밀도 값이 높을수록 네트워크 내 노드의 연결성은 유기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집중도(centralization)는 네트워크 안의 노드 중 특정한 노드에 집중되는가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전반적인 노드 간의 유기성을 의미하는 밀도와 상반된 특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손동원, 2002). 집중도는 연결정도 집중도(degree centralization), 매개 집중도(betweenness centralization), 근접 집중도(closeness centralization) 등으로 측정된다(손동원, 2002). 중심성은 특정한 노드가 전체 네트워크에 중심에 위치하는지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이 역시 근접 중심성(closeness centrality), 매개 중심성(betweenness centrality), 연결 중심성(degree centrality) 등으로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먼저 전체 학술논문에 있어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살펴보고, 소시오그램을 활용한 네트워크 지도 및 연결중심성 값을 도출하여 키워드 간 관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절차는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에서 이수상(2013)이 제시한 동시단어 분석 과정을 참고하여 대상문헌의 선정→주제어 정제→키워드 행렬 작성 →해석 및 활용→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의 단계로 실시하였다.

2. 분석범위와 대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지도자(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관련 국내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에서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System)' 사이트를 활용하여, 검색엔진을 통해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로 검색되는 연구물 목록을 수집하였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학술연구논문과 연구보고서를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수집 결과를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내보내기' 기능을 사용해 논문 제목, 저자, 학술지명, 발행연도, 주제어, 국문초록이 포함된 정보를 엑셀(Microsoft Excel) 형태로 저장하였다.

RISS 검색엔진으로 '청소년지도자'로 검색한 결과, 국내학술논문 610건이 검색되었다. 한편 '청소년지도사'로 검색한 결과 국내학술논문 196건이 검색되었고, '청소년상담사'로 검색한 결과 국내학술논문 110건이 검색되었다. 검색된 연구물들 가운데, 중복 검색되거나 연구의 목적 및 대상으로 볼 때 청소년지도자 관련 연구로 인정되지 않는 연구물을 제외하고 총 87편의 국내학술논문을 본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제외되는 논문은 제목과 초록, 주제어 상으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와 관련이 없거나 관련성이 현저히 부족한 것들이었다. 일부 제목과 초록, 주제어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경우 본문을 확인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킬지를 최종 결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분석대상 및 범위를 선정한 이유는 RISS에서 다방면의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를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상황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된 결과물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박지순, 2017).

연구물 중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명기하여 수행한 논문은 문제가 없었으나, 일부 연구물은 청소년지도자라고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실제로는 청소년지도사를 다룬 경우도 있었고,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를 모두 연구대상으로 포함한 경우도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이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의 연구동향을 비교하는 것이므로 둘 모두를 하나의 연구에 포함시킨 연구물은 분석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제목과 키워드로 청소년지도자라고 표기하였으나 실제 청소년지도사를 다룬 연구는 청소년지도사 연구물에 포함시켜 분석을 실시하였다.

3. 분석도구 및 자료분석

청소년지도자 관련 연구의 주제어들에 대한 키워드 빈도 분석과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아이젠벡터중심성, 매개중심성 등 다양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장 널리 활용되는 텍스트 분석 프로그램인 UNICET(UCI64)을 활용하였다. 네트워크 구조 분석을 위해서 키워드를 관계형 데이터로 변환하고 이를 UNICET으로 계량화 및 시각화하였다. 이때 전체적 관점에서 각각 청소년지도사 연구물과 청소년상담사 연구물의 밀도 분석을 실시하여 키워드들 간 결속성(유기성)과 연계성을 파악하였고, 집중도 분석을 통해 네트워크의 쏠림 현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연결중심성 분석을 실시하여 네트워크 내 보다 큰 연결성을 지닌 키워드를 파악하고, 근접중심성 분석을 통해 핵심이 되는 키워드와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네트워크를 도출하였으며, 매개중심성 분석을 통해 전체 네트워크 형성에서 매개성의 역할을 하는 네트워크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사 연구동향과 청소년상담사 연구동향을 구성하는 각각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키 플레이어를 발견하여 전체 담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을 파악하였다. 각각의 연구물에 대한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위해서는 UNICET의 NetDraw 기능을 활용하였다.

자료분석 시 코딩은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관련 키워드의 의미와 표현 상 유사한 것들을 개념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통합하는 1차 주제어 정제작업을 거쳤다. 예를 들어, 직무표준, 표준직무, 국가직무표준 등은 직무표준으로, 전문성 개발, 전문성 강화, 전문성 향상 등은 전문성으로, 직무환경 스트레스, 업무 스트레스 등은 직무스트레스로, 심리적 소진, 소진, 직무소진, 상담자소진 등은 직무소진으로, 학교상담사, 학교청소년상담사 등은 학교상담사로 통합하였다. 또한 특정한 연구방법을 키워드에 포함시킨 경우에는 분석대상 노드에서 제외하였고, '청소년'과 같이 지나치게 추상적인 키워드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도사, 상담사 등은 본 연구의 주제인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로 통합하여 적용하였다.

IV. 연구결과

연구결과에서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연구물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를 차례로 제시할 것이다. 우선 네트워크의 속성을 제시할 것이다. 양적 연구에서 인구통계학적 분석결과를 먼저 제시하여 전반적인 통계의 속성을 제공하듯이, 네트워크 분석에서 네트워크의 속성은 네트워크의 구성요인과 특성을 나타낸다. 이후 종합적인 네트워크 도식과 중심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네트워크의 특징과 분석 결과의 해석을 시도하였다.

1. 청소년지도사 연구물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청소년지도사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네트워크의 속성은 <표1>과 같다.

<표 1> '청소년지도사' 관련 연구물 키워드 네트워크의 속성

노드 수	연결 수	평균 연결성	밀도	중심도
79	504	5.538	0.062	0.959

다음으로 청소년지도사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청소년지도사를 포함하여 총 79개의 키워드 간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으며, 특히 키워드들 간 군집에서 드러나는 관계와 연결의 중심이 되는 특정 키워드를 발견할 수 있다. 그리고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과 나머지 키워드들 간의 위치를 파악함으로써 다수의 연구물에서 다룬 주요한 개념들이 어떻게 상호연계 되는가에 대한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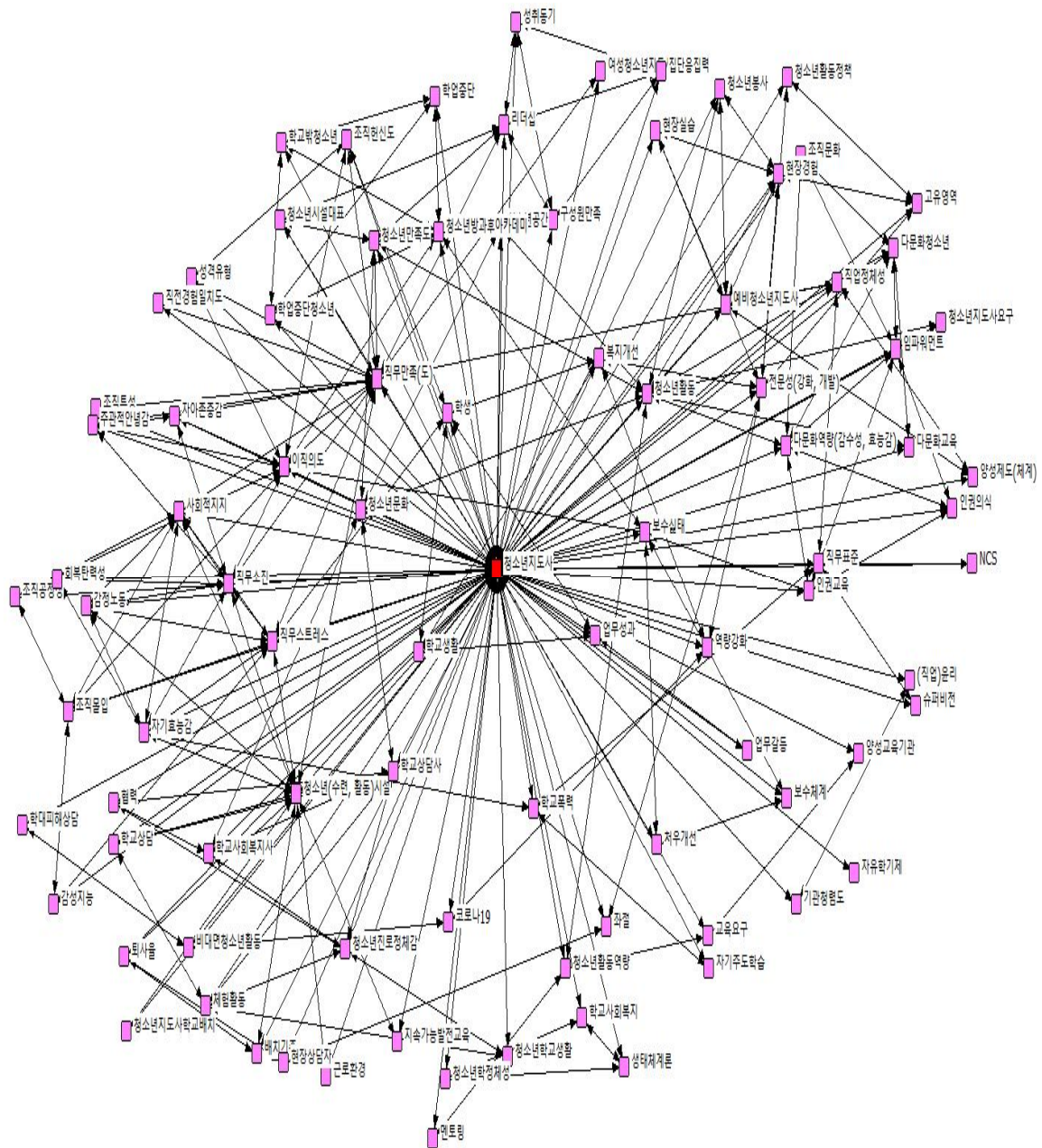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을 직접 상대하면서도 다양한 직무역량이 요구되는 전문직으로서의 특성을 지닌다는 점에서 직무수행 상의 어려움과 경험 요소(직무소진, 직무스트레스, 감정노동, 조직몰입 등)와 개인의 심리적 요소 간의 관계성, 학교밖청소년이나 방과후아카데미사업과 같은 청소년복지사업 연계활동과 연관된 주제어들의 관계성, 양성제도 및 청소년 현장의 업무와 제도적 환경 요소의 관계성, 청소년지도사라는 직업군의 처우 등 근로복지 요소들의 관계성 등이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중심성 분석은 청소년지도사의 연구동향과 타 학술분야와의 연계가능성 등을 탐색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메인 컴포넌트의 중심성을 분석하였을 때,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키워드는 직무만족(도),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이직의도, 직무소진, 직무스트레스, 전문성, 학교상담사, 예비청소년지도사, 리더십, 청소년만족도, 사회적지지, 자기효능감, 현장경험 등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중심성에 따라 우선순위가 높은 키워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직무만족(도) > 청소년시설 > 청소년활동 > 전문성 = 직무소진 > 이직의도 > 예비청소년지도사 = 직무스트레스 > 사회적지지 > 자기효능감 = 학교상담사 순이다(<표2> 참조). 일반적으로 키워드들 간의 조합은 연구주제가 되는데,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와 함께 조합되어 활용도가 높은 키워드이기 때문에 이들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청소년지도사 관련 연구물에서 많이 다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사업 관련 연구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은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연구물을 검색하면 최신의 연구동향을 파악할 수 있고, 최근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를 바탕으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지식의 수요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실제 연구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청소년사업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사들의 실천 관련 요소와 직무 상 경험 요소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청소년지도사’ 관련 연구물 키워드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 상위 키워드

	키워드	연결중심성
1	직무만족(도)	29
2	청소년시설	18
3	청소년활동	18
4	전문성	16
5	직무소진	16
6	이직의도	15
7	예비청소년지도사	12
8	직무스트레스	12
9	사회적지지	11
10	자기효능감	10
11	학교상담사	10



<그림 1> 청소년지도사 관련 연구물 키워드 네트워크

다음으로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자유학기제, (직업)윤리, 슈퍼비전, 양성교육기관, NCS, 교육요구, 근로환경, 기관청렴도, 멘토링, 업무갈등, 여성청소년지도사, 자기주도학습, 조직특성, 지속가능발전교육, 직전경험일치도, 청소년지도사 학교배치, 청소년지도사요구, 청소년만족도가 동물로 파악되었다(〈표3〉참조). 이러한 키워드들은 다양한 연구주제 간을 연결하는 키워드들로서, 연구에서 목적으로 삼는 주제를 다른 주제와 조합하려고 할 때 쉽게 활용이 가능한 키워드들이다.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와는 대조적으로 청소년사업의 특정한 환경이나 타 분야와의 연계 관련 주제어들이 많이 도출되었다. 예를 들면, 자유학기제는 학교교육과 연관된 주제이며, 정부의 NCS는 직무역량표준화 사업, 기관청렴도와 업무갈등, 그리고 근무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청소년지도자 연구동향 분석

경과 교육요구는 경영학의 HR 분야와 맞닿아 있는 키워드들이다.

<표 3> '청소년지도사' 관련 연구물 키워드 네트워크의 근접중심성 상위 키워드

	키워드	근접중심성
1	자유학기제	179
2	(직업)윤리	178
3	슈퍼비전	178
4	양성교육기관	178
5	NCS	178
6	교육요구	178
7	근로환경	178
8	기관청렴도	178
9	멘토링	178
10	업무갈등	178
11	여성청소년지도사	178
12	자기주도학습	178
13	조직특성	178
14	지속가능발전교육	178
15	직전경험일치도	178
16	청소년지도사학교배치	178
17	청소년지도사요구	178
18	학대피해상담	178

근접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직무만족(도) > 청소년시설 > 청소년활동 > 이직의도 > 직무소진 > 직무스트레스 > 전문성 > 학교상담사 > 예비청소년지도사 > 리더십 = 청소년만족도 순이다(<표 4>참조). 이들 키워드는 다른 키워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인 키워드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으로 이들 키워드로 청소년지도사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면 다양한 다른 키워드와의 조합을 통해서 독창적인 연구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키워드를 통해서 청소년지도사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은 연구동향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현장의 새로운 현상을 민감성을 갖고 관찰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는 연구주제를 도출할 수 있다.

<표 4> 청소년지도사 관련 연구물 키워드 네트워크의 매개중심성 상위 키워드

	키워드	매개중심성
1	직무만족(도)	96.233
2	청소년시설	61.8
3	청소년활동	46.667
4	이직의도	26.333

	키워드	매개중심성
5	직무소진	19.033
6	직무스트레스	17.133
7	전문성	16.333
8	학교상담사	12
9	예비청소년지도사	9.333
10	리더십	9
11	청소년만족도	9

2. 청소년상담사 연구물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네트워크의 속성은 <표5>와 같다.

<표 5>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 키워드 네트워크의 속성

노드 수	연결 수	평균 연결성	밀도	중심도
91	444	4.879	0.054	0.9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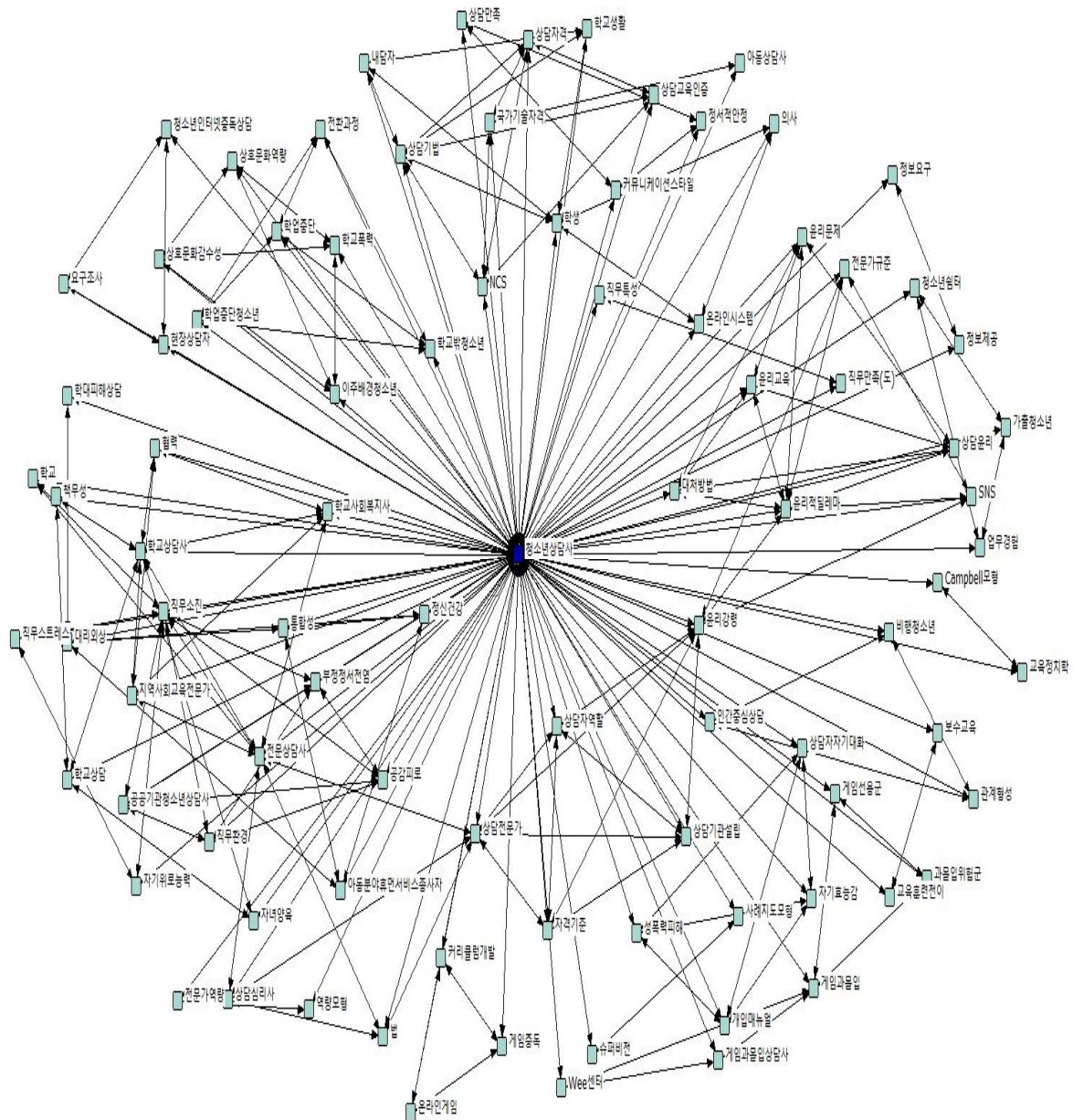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결과 키워드들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2>와 같다. 청소년상담사를 포함하여 총 91개의 키워드 간의 관계분석 결과가 총체적으로 제시되었다. 청소년상담사도 청소년을 직접 상대하는 것은 청소년지도사와 동일하지만, 실천직의 특성이 활동적이기 보다는 상담이라는 전문직 특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무상 요구되는 기술과 역량에서 청소년지도사와 차이를 보인다.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도 이러한 직무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전문상담을 위한 상담자격과 상담기법과 연관된 다양한 키워드 간의 관계성이 확인되고, 전문직으로서 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요소로서 윤리교육, 윤리적 딜레마 등도 주요한 군집을 형성한다. 아울러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이나 학업중단 등과 관련된 청소년문제와 청소년상담의 관계, 상담실천에서의 직무경험 관련 요소들 간의 관계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사의 연구동향과 타 학술분야와의 연계가능성 등을 탐색하기 위해 메인 컴포넌트의 중심성을 분석하였을 때, 연결중심성, 근접중심성, 매개중심성이 공통적으로 높은 키워드는 전문상담사, 직무소진, 학교상담사, 윤리강령, 윤리적딜레마, 상담전문가, 상담기법, 학생, 게임과몰입, 대리외상, 상담자격 등으로 나타났다.

우선, 연결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직무소진 > 전문상담사 = 학교상담사 > 상담전문가 > 윤리강령 > 윤리적딜레마 순이다(<표6>참조). 이들과 관련된 연구주제가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에서 폭넓게 연구되었음을 의미한다. 청소년사업 관련 연구분야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들은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도출된 연결중심이 높은 키워드를 검색하면, 최근 연구자들의 주된 관심사를 파악할 수 있고 현장에서 청소년상담 관련 필요로 하는 지식의 범위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 연구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청소년사업 현장에서 청소년지도사들의 실천 관련 요소와 직무 상 경험 요소들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청소년지도자 연구동향 분석



<그림 2>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 키워드 네트워크

<표 6>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 키워드 네트워크의 연결중심성 상위 키워드

	키워드	연결중심성
1	직무소진	11
2	전문상담사	10
3	학교상담사	10
4	상담전문가	9
5	윤리강령	8
6	윤리적딜레마	8

다음으로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로 Campbell모형, 교육정치학, 교육훈련전이, 보수교육, 사

레지도모형, 슈퍼비전, 아동상담사, 역량모형, 전문가모형, 정보요구, 정보제공, 직무만족(도), 직무특성, 학대피해상담이 동물로 파악되었다(<표7>참조). 이러한 키워드들은 다양한 연구주제 간을 연결하는 키워드들로서 연구자가 핵심으로 삼는 연구주제와 조합하려고 할 때 용이하게 활용이 가능한 키워드들이다. 청소년상담사 연구물 키워드 네트워크에서 매개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들은 상담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나 슈퍼비전이 중요한 매개요인이 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상담실천에서 요구되는 정보와 역량도 중요한 매개요소가 될 수 있다.

<표 7>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 키워드 네트워크의 근접중심성 상위 키워드

	키워드	근접중심성
1	Campbell모형	178
2	교육정치학	178
3	교육훈련전이	178
4	보수교육	178
5	사례지도모형	178
6	슈퍼비전	178
7	아동상담사	178
8	역량모형	178
9	전문가역량	178
10	정보요구	178
11	정보제공	178
12	직무만족(도)	178
13	직무특성	178
14	학대피해상담	178

마지막으로 근접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는 전문상담사 > 직무소진 > 학교상담사 > 상담전문가 = 윤리강령 = 윤리적딜레마 > 상담기법 > 학생 > 게임과몰입 > 대리외상 > 국가기술자격 > NCS = 상담자격 > 학교상담 > 지역사회전문가 = 학교사회복지사 순이다(<표8>참조). 이 키워드들은 다른 키워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종합적인 키워드 네트워크의 중심에 위치하는 것으로 향후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를 수행한다면 다양한 다른 주제와의 조합을 통해서 유의미하면서도 창의적인 연구주제 형성에 도움이 되는 키워드들이다.

<표 8>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 키워드 네트워크의 매개중심성 상위 키워드

	키워드	매개중심성
1	전문상담사	10.5
2	직무소진	10
3	학교상담사	6.583
4	상담전문가	6
5	윤리강령	6
6	윤리적딜레마	6

	키워드	매개중심성
7	상담기법	4.5
8	학생	3
9	게임과몰입	2
10	대리외상	1.5
11	국가기술자격	1
12	NCS	0.667
13	상담자격	0.667
14	학교상담	0.333
15	지역사회교육전문가	0.25
16	학교사회복지사	0.25

V. 결론 및 논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청소년지도사는 직무만족(도),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이직의도, 직무소진, 직무스트레스, 전문성 등이 중심적인 키워드인 한편, 청소년상담사는 전문상담사, 직무소진, 학교상담사, 윤리강령, 윤리적딜레마, 상담전문가, 상담기법 등이 중심적인 키워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청소년지도자 관련 연구는 이러한 각각의 키워드들을 바탕으로 신규 생성된 키워드들이 상호 연계되어 실천현장의 문제에 대한 탐색이나 검증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연구주제를 형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새로운 연구주제를 만들거나 주요한 선행연구를 고찰할 때 중심성이 높은 키워드를 바탕으로 연구동향을 파악하고, 이 키워드들이 다른 어떤 키워드와 관계성을 갖는지를 살펴본다면 각 전문직 관련 연구의 담론을 보다 초점 있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사업이라는 공통의 기반 위에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연구물들은 직무만족, 직무소진, 직무스트레스, 직무환경 등 직무특성 관련 주제와 슈퍼비전, 업무경험 등 직무수행 관련 주제를 공동의 연구 주제로 다루어 왔다. 이는 청소년사업이 전문직으로 갖는 특성이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라는 국가자격의 독자성 위에서 포괄적인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다. 즉, 청소년활동 영역에서 주로 실천을 수행하는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복지나 청소년보호 영역에서 주로 실천을 수행하는 청소년상담사가 청소년사업의 궁극적 목적인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과 본질적 특성인 교육적·사회적·복지적 실천요소를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두 전문직의 연구물에서 직무소진과 연관된 주제가 폭넓게 다루어져 왔음에도, 근로실태는 충실히 개선되지 못해 왔다는 반성이 필요하다. 아직 타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자격에 비해서 처우가 부족하거나 지역이나 단체별로 매우 불균형한 점은 향후 국가 차원의 자격으로서 보다 형성평 있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연구물들은 각각의 전문직 특성에 따라 연구주제의 초점에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 청소년지도사 연구물의 키워드 네트워크에서는 학

교교육과의 연계, 청소년활동사업 관련 주제들의 연구가 두드러진 반면, 청소년상담사 연구물에서는 청소년문제, 상담직의 윤리 등이 청소년상담사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한 연구주제로 파악되었다.

청소년사업의 실천적 특성은 공공성과 다양성이다(주경필, 2014).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이러한 실천직의 특성이 그간 연구주제로 잘 다루어져 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성과 관련해서는 법률이나 양성 및 자격 제도 관련 연구물이 폭넓게 수행되어 온 점과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공히 국가자격으로서 그 처우와 복지 실태를 문제의식으로 직무소진, 근로환경 등이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온 점에서 이를 재차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다양성은 앞서 논의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연구동향의 차이에서도 확인되고, 각각의 네트워크 내 포함된 노드 수(각각 79개와 91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로 청소년지도자 연구는 다양한 주제로 시의적절한 주제들을 다루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와 디지털전환 등 급속한 청소년사업의 환경변화를 반영한 주제는 일부에 그쳤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향후에는 변화된 청소년사업 전문직의 역량과 기술, 실천현장의 지형변화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 등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지도자 관련 연구의 다원화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김미숙, 박미경, 고광숙, 김성길(2021).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국내 학교폭력예방 관련 연구동향 분석. *미래교육연구*, 11(2), 21-64.
- 류태영(1988). *청소년단체의 청소년지도자 활동실태와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 새마을연구 논문집(제7권). 서울: 건국대학교.
- 박선훈, 박은혜(2014). 국가수준 유치원 교육과정에 나타난 ‘놀이’의 텍스트 연결망 분석. *육아정책연구*, 8(1), 180-210.
- 박신영(2015). *유아교육 공교육화 정책네트워크 분석: 1993년부터 2013년까지*.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인하(2020). 탈북 청소년 적응 관련 논문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한국사회복지교육*, 50, 53-73.
- 박지순(2017).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장애인 교육 관련 연구 동향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56(2), 107-126.
- 박치성·정지원. (2013).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사회적 인식 네트워크(socio-cognitive network) 분석을 통한 정책이해관계자 간 공유된 의미파악 사례.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손동원(2002). *사회 네트워크 분석*. 서울: 경문사.
- 여성가족부(2020). *청소년백서*. 서울: 여성가족부.
- 우상태(1992). *청소년의 사회화와 청소년지도자의 역할*. 대구보전논문집(인문·사회과학) 제13호. 대구: 대구보전전문대.
- 유경재(1991). *청소년지도자의 실태 및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충청북도 청소년지도교사를 중심으로*. 청주대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상. (2013). *네트워크 분석 방법론*. 부산: 논형
- 정미나, 문호영(2019). 청소년지도자 관련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문화포럼*, 57, 100-122.
- 정혜영, 정혜영, 손유진(2015).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유아교사 연구동향 분석. *생태유아교육연구*, 14(2), 283-308.
- 주경필(2014). 서구사회 청소년업의 전문화에 관한 고찰: 미국 지방자치단체 청소년업종사자 핵심 역량모델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문화포럼*, 38, 125-148.
- 한국청소년연구원(1991). *청소년지도자 양성방안과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한국청소년연구원(1992). *청소년지도자 양성방안과 교육과정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연구원.
- 홍세희, 조기현, 이현정, 손수경, 김효진, 윤미리, 강윤경(2019).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연구동향. *한국청소년연구*, 30(2), 2073-301.
- Banks, S. (2010). *Ethical issues in youth work* (2nd Ed.). Oxon: Routledge.
- Borgatti,S.P. (2006).Identifying sets of key player sin social network. *Computer Math Organ Theory*, 12, 21-34.
- Bowie, V. (2008). Youth workers and stress. *Youth Studies Australia*, 27(2), 36-44.
- Coussée, F., Williamson, H., van de Walle, & Verschelden, G. (2009). *The history ofyouth work in Europe: Relevance for today's youth work policy* (vol. 3). Paris:Council of Europe Publishing.

- Diesnet, J., & Carley, K.M. (2005). Revealing social structure from texts: Meta-matrix text analysis as a novel method for network text analysis. In V. K. Narayanan & D. J. Armstrong (Eds.), *Causal mapping for information systems and technology research: approaches, advances, and illustrations*(Ch. 4, pp.81-108). Harrisburg, PA: Idea Group Publishing.
- Emslie, M. (2013). Toward a youth work profession. *Child & Youth Services*, 34(2),125-133.
- Freeman,L.C. (2008). *Social Network Analysis*, London: Sage..
- Greenwood, E. (1957). Attributes of a profession. *Social Work*, 2(3), 45-55
- Krueger, M. (2005). Four themes in youth work practice.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33(1), 21-29.
- National Youth Agency (1997). *Professional endorsement of qualifying training in youth and community work. Leicester*. UK: National Youth Agen
- Ord, J. (2007). *Youth work process, product and practice*. Lyme Regis: Russell
- Wood, J., Westwood, S., & Thompson, G. (2015). *Youth work: Preparation for practice*. Oxon: Routledge.

* 논문초록 *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사업(youth work)을 수행하는 전문직 실천가로서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양성되는 국가 전문자격증을 갖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를 의미한다. 그간 청소년을 주제로 한 학문영역에서 청소년지도자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한 연구가 폭넓게 수행되어 왔으나, 청소년지도자에 관한 연구물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밝히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은 미흡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분야에서 발간된 주요 학술지에 게재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관한 연구물들의 논문 키워드를 바탕으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연구동향을 조사한 것이다. 연구결과,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 관련 연구물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 청소년지도사는 직무만족(도), 청소년시설, 청소년활동, 이직의도, 직무소진, 직무스트레스, 전문성 등이 중심적인 키워드인 한편, 청소년상담사는 전문상담사, 직무소진, 학교상담사, 윤리강령, 윤리적 딜레마, 상담전문가, 상담기법 등이 중심적인 키워드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 관한 연구물은 청소년사업의 본질적 특성인 공공성과 다양성을 포괄하는 문제와 현상을 주제로 다룬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청소년지도자가 공공영역의 전문가로서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미래사회의 전문인력으로 효과적으로 확립하기 위해서는 디지털전환 등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실천적 환경을 반영한 연구주제를 다룬 연구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논의하였다.

주제어 :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연구동향,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 편 집 위 원 •

위 원 장	김 태 성
위 원	임 재 홍
	정 시 영
	윤 태 범
	박 주 숙
	정 현 재
	이 기 화
간 사	김 영 빈
	김 다 윤
	이 선 영

KNOU 논문 <第73輯>

2022年 2月 28日 印刷
2022年 2月 28日 發行

編輯人	韓國放送通信大學校 論文集編輯委員會
發行人	金 聖 秀
發行處	韓國放送通信大學校
印刷處	社會文化社(☎2263-0523)
